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1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 지침 개요	5
II. 2025학년도 교육재정운용 여건	5
III. 2025학년도 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	6
IV. 학교회계 운용의 일반사항	7
V. 학교회계 예산·결산 절차	10
VI. 학교회계 과목별 예산편성 및 운용 기준	27
VII. 학교 교육재정 공개 및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운영	41
VIII. 신설학교 및 통폐합 대상학교 업무 처리	45
IX. 교육(지원)청 부서 협조사항	47

제2장 2025학년도 학교운영비 예산지원

I.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구성	51
II.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방향	51
III.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	52
IV. 학교운영비 편성 사업[목록]	56
V. 학교기본운영비 포함·권장 사업 설명서	63
VI. 통합사업운영비 설명서	95
VII. 총액배분인건비 설명서	151

제3장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I. 학교회계 세입예산과목(성질별)	173
II.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성질별)	181
III.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사업별)	186
IV.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표준안	193

제4장 예산편성 기준단가

I.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311
II. 예산편성 기준 및 단위 단가	312

제5장 서식 및 참고자료

I. 2025학년도 세입·세출예산서(예시)	335
II. 2025학년도 세입·세출결산서(예시)	337
III. 시설적립금 관련 서식	340
IV. 업무활용 서식(참고용)	343
V.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안내	347
VI.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349
VII. 회계 관련 용어정리	350

주요 변경사항(2025.6.)

구분	페이지	변경	기존											
일괄 수정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홈페이지 → 누리집												
학교 회계 일반 지침	7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의 예외 ●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단,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3월 20일)에 폐쇄한다. 〈내용 신설〉											
	21	7. 예산의 이월 가. 예산의 이월 종류 <table><tr><th>구분</th><th>명시이월</th><th>사고이월</th></tr><tr><td>예시</td><td>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25년 12월 학교 옥상방수 공사 및 대금지급이 당초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공 중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회계연도 내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td></tr></table>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시	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5년 12월 학교 옥상방수 공사 및 대금지급이 당초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공 중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회계연도 내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7. 예산의 이월 가. 예산의 이월 종류 <table><tr><th>구분</th><th>명시이월</th><th>사고이월</th></tr><tr><td>예시</td><td>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출납폐쇄기간(26.3.20)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25년 12월 학교 옥상방수 공사 및 대금지급이 당초 출납폐쇄기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공 중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출납폐쇄기간(26.3.20)까지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td></tr></table>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시	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출납폐쇄기간(26.3.20)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시	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5년 12월 학교 옥상방수 공사 및 대금지급이 당초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공 중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회계연도 내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시	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출납폐쇄기간(26.3.20)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5년 12월 학교 옥상방수 공사 및 대금지급이 당초 출납폐쇄기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공 중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출납폐쇄기간(26.3.20)까지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분	페이지	변경	기존																		
학교회계 일반지침	22	나. 예산의 이월 업무처리 절차(명시, 사고, 계속비) <table><tr><th>순</th><th>과정</th><th>주체</th><th>주요 내용</th></tr><tr><td rowspan="2">5</td><td rowspan="2">이월 확정</td><td rowspan="2">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td><td>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 기한 후의 예외기간 종료 후부터 10일 이내</td></tr><tr><td>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td></tr></table>	순	과정	주체	주요 내용	5	이월 확정	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 기한 후의 예외기간 종료 후부터 10일 이내	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	나. 예산의 이월 업무처리 절차(명시, 사고, 계속비) <table><tr><th>순</th><th>과정</th><th>주체</th><th>주요 내용</th></tr><tr><td rowspan="2">5</td><td rowspan="2">이월 확정</td><td rowspan="2">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td><td>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 기한 후부터 10일 이내</td></tr><tr><td>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td></tr></table>	순	과정	주체	주요 내용	5	이월 확정	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 기한 후부터 10일 이내	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
	순	과정	주체	주요 내용																	
	5	이월 확정	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 기한 후의 예외기간 종료 후부터 10일 이내																	
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																					
순	과정	주체	주요 내용																		
5	이월 확정	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 기한 후부터 10일 이내																		
			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																		
24	9. 결산 결산 절차 <table><tr><td>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td><td>매년 2월 말일</td><td> • 학교회계 출납폐쇄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td></tr><tr><td>출납 폐쇄의 예외기간 종료 (공립학교회 계 규칙 제4조)</td><td>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td><td>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td></tr></table>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매년 2월 말일	• 학교회계 출납폐쇄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출납 폐쇄의 예외기간 종료 (공립학교회 계 규칙 제4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9. 결산 결산 절차 <table><tr><td>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td><td>매년 2월 말일</td><td>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td></tr><tr><td>전년도예산 출납 폐쇄 (공립학교회 계 규칙 제4조)</td><td>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td><td>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td></tr></table>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매년 2월 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전년도예산 출납 폐쇄 (공립학교회 계 규칙 제4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매년 2월 말일	• 학교회계 출납폐쇄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출납 폐쇄의 예외기간 종료 (공립학교회 계 규칙 제4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매년 2월 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전년도예산 출납 폐쇄 (공립학교회 계 규칙 제4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25	● 회계연도 종료(출납 폐쇄)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를 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 ▶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단,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 20일)까지)	● 회계연도 종료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를 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 ● 전년도예산 출납 폐쇄 ▶ 회계연도가 종료 후 20일까지 해당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구분	페이지	변경	기존																						
학교회계 일반 지침	33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의 구분 <table><tr><th>구분</th><th colspan="2">내 용</th></tr><tr><td rowspan="2">재산 수입</td><td>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 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td></tr><tr><td>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 천장형 냉난방기 등 포함)</td></tr><tr><td rowspan="2">기타</td><td rowspan="2">불용 물품 매각대</td><td>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천정형 냉난방기, cctv, 물탱크, 강당기계기구(이동식조명), 각종 펌프 등</td></tr><tr><td>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td></tr></table>	구분	내 용		재산 수입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 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	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 천장형 냉난방기 등 포함)	기타	불용 물품 매각대	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천정형 냉난방기, cctv, 물탱크, 강당기계기구(이동식조명), 각종 펌프 등	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의 구분 <table><tr><th>구분</th><th colspan="2">내 용</th></tr><tr><td rowspan="2">재산 수입</td><td colspan="2">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 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td></tr><tr><td colspan="2">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 천장형 냉난방기 등 포함)</td></tr><tr><td rowspan="2">기타</td><td rowspan="2">불용 물품 매각대</td><td>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등</td></tr><tr><td>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td></tr></table>	구분	내 용		재산 수입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 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		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 천장형 냉난방기 등 포함)		기타	불용 물품 매각대	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등	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
	구분	내 용																							
	재산 수입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 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																							
		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 천장형 냉난방기 등 포함)																							
기타	불용 물품 매각대	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천정형 냉난방기, cctv, 물탱크, 강당기계기구(이동식조명), 각종 펌프 등																							
		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																							
구분	내 용																								
재산 수입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 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																								
	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 천장형 냉난방기 등 포함)																								
기타	불용 물품 매각대	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등																							
		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																							
34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의 관리 ➤ 2025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계획 알림(노사협력과-3762, 2025. 6. 2.)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의 관리 〈신설〉																							
37	☉ 통합사업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및 가능 사업(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외 추가 계상 가능) <table><tr><th>순</th><th>사업명</th></tr><tr><td>19</td><td>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중등교육과-31027, 2024.12.23.)</td></tr></table>	순	사업명	19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중등교육과-31027, 2024.12.23.)	☉ 통합사업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및 가능 사업(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외 추가 계상 가능) 〈추가〉																			
순	사업명																								
19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중등교육과-31027, 2024.12.23.)																								
41	1. 학교 교육재정 공개 <table><tr><th>공개 항목</th><th>근 거</th></tr><tr><td>학교회계 예·결산서</td><td>■ 2025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2749, 2025. 2. 25.)</td></tr></table>	공개 항목	근 거	학교회계 예·결산서	■ 2025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2749, 2025. 2. 25.)	2. 학교 교육재정 공개 <table><tr><th>공개 항목</th><th>근 거</th></tr><tr><td>학교회계 예·결산서</td><td>■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3192, 2024. 3. 12.)</td></tr></table>	공개 항목	근 거	학교회계 예·결산서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3192, 2024. 3. 12.)															
공개 항목	근 거																								
학교회계 예·결산서	■ 2025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2749, 2025. 2. 25.)																								
공개 항목	근 거																								
학교회계 예·결산서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3192, 2024. 3. 12.)																								
서식 및 참고 자료	342	[서식4] 시설적립금 현황 ※ 작성요령 7. [서식4]는 결산서의 적립금현황 서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기간까지 의 적립금 잔액증명서 첨부하여 보고	[서식4] 시설적립금 현황 ※ 작성요령 7. [서식4]는 결산서의 적립금현황 서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의 적립금 잔액증명서 첨부하여 보고																						
	345	4. 학교회계 월별 출납검사 실시 ※ 매월 10일 이내 처리(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0조 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	4. 학교회계 월별 출납검사 실시 ※ 매월 10일 이내 처리(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0조 2항에 따라 필요한 장부는 출력 보관)																						

제1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 지침 개요

1 목 적

- 이 지침은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이하“학교회계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기타 계약 관련 법령 등

3 적용대상

- 이 지침은 경상남도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인건비 및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II 2025학년도 교육재정운용 여건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둔화, 「지방교육교부금법」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24) 등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증가
- 교직원 처우개선,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지출도 증가 전망

Ⅲ 2025학년도 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

1 학교회계 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 목적사업비 감축과 기본운영비 통합 교부 확대로 학교회계 운용 자율성 확대
 - ▶ 학교장 교육철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교육계획과 연계된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편성
- 단위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무성 강화
 - ▶ 편성한 예산의 책임 집행으로 이·불용액 최소화
 - ▶ 주기적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예산 재편성
 - ▶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 결과, 이·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학교는 학교기본 운영비를 감액 교부

2 학교회계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확보
 -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배분
 - ▶ 전년도 사업 분석 및 학교구성원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체제 구현, 문화예술교육 확대, 경남형 사회적 돌봄 등 교육복지, 생태전환교육, 교육활동 보호 우선 편성
-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예산 우선 편성 및 적기 집행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와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으로 편성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요금 우선 편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적정 편성

3 학교 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집행 시 교직원 간 소통·협업·이해 등을 통한 민주적인 회계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수렴된 의견 검토하여 예산 반영
- 예·결산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Ⅳ 학교회계 운용의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단위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조, 제7조, 제8조)

- 학교회계는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각 학교별로 설치한다.
- 분교장의 경우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단일회계로 설치·운영한다.
-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한다.
 - ▶ 단, 학교 실정에 따라 분리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 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의 예외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

-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단,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
 -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이용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 학교장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부실 우려가 없는 우량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회계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는 다음 각 호의 계좌에 한하여 개설·관리하도록 한다. 단, 국고보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수익자부담경비(스쿨뱅킹 등의 이체계좌로 학교회계 계좌와 금융기관이 다를 때 한함), 기타지원금(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퇴직적립금(퇴직연금) 및 시설적립금, 채권압류금은 필요한 경우 별도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그 외는 개설할 수 없다

〈출납원이 관리하는 계좌〉

▶ 학교회계 계좌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 신용카드 결제 계좌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한 후 반환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함

● 퇴직적립금 계좌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한다.(조회만 가능)

● 계좌(통장) 인감 등록

▶ 대상 계좌: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퇴직적립금 등 포함), 신용카드결제계좌

▶ 계좌 인감: 출납원 직인 + 출납원 사인(私印)

▶ 행정실장 1인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계좌, 퇴직적립금 계좌의 인감 : 출납원 직인 + 학교장 사인(私印)

● 학교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우량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유휴자금 예치 시 학교회계시스템『자금운용-자금운용관리-자금운용내역관리』,『지출관리-기준정보-학교계좌관리』에 등록·관리하고, 해지 시‘해지내역’등록 및 계좌‘사용안함’처리

● 학교회계 대표계좌를 제외한 세입금 계좌, 장기간 묵돈을 보관하는 정기예탁금[시설적립금, 퇴직적립금(퇴직연금제외), 유휴자금]계좌,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하여 “문자알림서비스(신규, 해지, 인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알림서비스 수신자는 출납원으로 지정하되 행정실장 혼자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으로 지정 가능

4 학교회계의 범위

세 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세 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및 지원금	1) 인적자원 운용
2) 국가 일반회계 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3) 기본적 교육활동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4) 선택적 교육활동
5) 사용료 및 수수료	5) 교육활동 지원
6) 물품매각대금	6) 학교 일반운영
7) 기타수입(기타행정활동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7) 학교시설 확충
8) 이월금	8) 학교 재무활동

5 클린재정 활용

- 회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학교회계시스템 「클린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정기적인 자체 점검 활성화

6 학교회계 재정분석

- 학교회계 운용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매년 학교회계 재정분석 실시
- 학교 재정운용 실태를 타 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수 사례 확대 및 개선
- 신뢰성 있는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별 예산 구조와 과목을 체계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고 이·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 노력
- 2024년도 학교회계 재정 분석 지표

영역	분석지표	지표 성격
I. 일반현황	1. 학교현황	
	1-1. 학교 일반현황	
	1-2. 통합운영학교 현황	
	1-3. 학교발전기금회계 현황	
	2. 세입·세출 결산 현황	
	2-1. 세입·세출 총괄	
	2-2. 세입 결산 현황(자원별)	
	2-3. 세출 결산 현황(정책사업별/성질별)	
II. 자율성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중 목적사업비 비율	
	1-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중 목적사업비 현황	하향지표
	1-2. 목적사업비 월별 전입 현황	-
III. 효율성	1. 학교회계 분기별 집행 비율	상향지표
	2. 이월률	하향지표
	2-1. 이월 현황	하향지표
	2-2. 정책사업별 이월 현황	
	2-3. 성질별 이월 현황	
	2-4. 원인별 이월 현황	
	3. 불용률	하향지표
	3-1. 불용 현황	하향지표
	3-2. 정책사업별 불용 현황	
	3-3. 성질별 불용 현황	
	3-4.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IV. 책무성	1. 공립학교 학부모부담 비율	하향지표
	2. 교육활동비 비율	상향지표
사례분석	1. 학교회계 운영 및 개선 우수사례	정성지표

※ 학교회계 분석 종합 보고서 공개 경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https://eduinfo.go.kr>)자료실/재정보고서

V 학교회계 예산·결산 절차

1 본예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성립된 때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함

본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일 정	주 체	주 요 내 용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학교회계 규칙 제10조)	2024. 11월말 까지	교육청 ~	•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통보 • 관할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제시 • 예산과목 및 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단위학교 준비사항	2024. 12월초	학교	• 세입·세출예산 편성자료 사전 조사 • 연도별·월별 자금 집행상황 파악 • 단위학교 자체세입 재원의 정확한 규모 파악
교직원 자체교육 및 예산요구서 제출 (학교회계 규칙 제12조)	2024. 12월 중순	학교	•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 교육 실시 •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활성화
예산요구서 취합 및 조정	2024. 12월 중순 ~ 하순	학교	•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제출한 예산요구서 취합 • 세입규모 대비 예산요구액이 많은 경우 예산조정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 계획 통보 (학교회계 규칙 제11조)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2025. 1. 9까지)	교육청	• 학교회계로 연간 전출할 총 규모 및 월별,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운영비, 총액배분인건비 대상)
예산요구서 추가 제출 및 조정, 예산안 확정	2025. 1월 중순 ~ 하순	학교	• 단위학교는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액을 통보받은 후 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전 교직원 간에 구체적인 예산조정
예산안 제출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2025. 1. 29.까지	학교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

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통보

- 교육감은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장에게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통보
- 교육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보한 후 학교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통보된 지침을 변경·통보할 수 있음

나 단위학교 준비사항

- 학교의 방학이 12월 중·하순경에 시작되므로 교직원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통보된 후 즉시 예산편성 작업 준비
- 세입·세출 편성자료 사전 조사, 연도별·월별 자금 집행상황 및 자체세입 재원 규모 파악 등

다 교직원 자체교육 및 예산요구서 제출

- 학교장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통보되면 교직원에게 대하여 학교 교육시책, 학교 운영의 기본방향 및 가용재원 규모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
- 학교장은 교직원 등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학급운영 소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제출받아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
- 학생·학부모가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제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 학교회계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Ⅶ. 학교 교육재정 공개 및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 참고

라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 계획 통보

- 관할청은 단위학교의 계획적·자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학교 별로 연간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월·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확정·통보

마 예산요구서 추가 제출 및 조정, 예산안 확정

-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전출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한 후 예산안 확정

바 예산안 제출

-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구분	일정	주체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및 예산안 통지 (학교회계 규칙 제14조)	2025. 2. 15. 까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예산안 통지
▼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학교회계 규칙 제14조)	필요시	운영위원회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안 통지 전·후 또는 필요 시 구성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2025. 2. 23. 까지	운영위원회 및 학교	•학교 교육시책,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및 내용에 대해 학교장 (행정실장) 제안 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육구성원(학생·교직원) 의견 청취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심의 후 학교장에게 송부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예산 확정
▼			
예산공개 (학교회계 규칙 제52조)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	•학교 누리집 탑재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

사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및 예산안 통지

- 운영위원장은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 운영위원이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성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아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자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예산안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교장(행정실장)은 학교 운영 방향, 연간 재정규모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제안 설명 시 예산편성 각 항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예산의 타당성을 평가
- 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학교장은 예산 확정

차 예산 공개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서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누리집 첫 화면에 의무적으로 공개(학교 누리집 초기화면 『학교회계현황』 배너 운영)하여 적극 홍보
-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안 심의의 한계

- ☞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학교장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존중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합치에 의한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예산편성이나 편성된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위와 같이 새로운 사업의 예산편성이나 증액은 불가능하지만 예산안 심의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금액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편성 준수 사항

산출기초 작성 방법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함. 또한, 산출기초식에 의한 결과 값이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 산출기초 순서: 원 × 명(종) × 월(일)(시간) × 회

예시1 25,000원 × 2명 × 12월 = 600천원

예시2 20,000원 × 20종 × 2회 = 800천원

▶ 예산을 증감하는 경우(추경 및 성립전예산 편성 시)

예시1 증: 경정800,000원 - 기정600,000원 = 200천원

예시2 감: 경정2,500,000원 - 기정2,700,000원 = -200천원

▶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추경 편성 시)

예시 기정예산: 컴퓨터 구입 1,230,000원 × 2대 = 2,460천원

추경예산: 컴퓨터 구입 -2,460,000원 = -2,460천원

▶ 산출기초의 금액 단위는 '원', 산출내역별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함

▶ 산출내역별 금액단위 계산 시 천원단위 미만은 세입예산에서는 절사(버림)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절상(올림)

▶ 다만, 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정산재원의 경우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절상"으로 조정하여 편성

건물유지비 편성 및 적절한 시설예산 확보

▶ 학교기본운영비에 건물 구조 및 면적, 경과연수에 따라 건물유지비가 차등 배분되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일시에 막대한 시설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

▶ 소규모 수선비(소규모 관사 보수비 포함)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등으로 별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학교시설유지비로 교부한 건물유지비 이상으로 예산 편성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구 분	내 용
편성요건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때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전년도 이월액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유의사항	•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 발생,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편성 •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목간 조정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증·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편성 • 학교운영비에 통합사업운영비 및 총액배분인건비가 포함되어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빠짐없이 편성(맞은 추경예산 편성 자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적기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가능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 발생	• 예기치 못했던 사안 발생 및 변경이 필요한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학교회계 규칙 제15조)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운영위원회 심의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예산 공개 (학교회계 규칙 제52조)	•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 심의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공개

3

간주처리예산

- 회계연도 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심의 생략)으로 간주 처리하여 학교장의 예산확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함

구 분	내 용
편성요건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함 ※ 수익자부담경비는 대상에서 제외 • 회계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연도 학교회계 예산총칙(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간주 처리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편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만 가능하므로, 2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확정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 간주 처리를 통한 일반(자체)재원의 예산조정은 불가 •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간주처리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교부	• 회계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성립전예산 (필요 시)	•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성립전예산 신청
예산편성 및 예산안 확정	•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간주 처리 예산안 확정 ※ 간주처리예산은 이전(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예산의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성함
예산 확정	• 세입·세출예산 확정 및 공개
운영위원회 보고	• 다음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4

준예산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 ▶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사이월비, 계속비 등)

5

성립전예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집행 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지원금 포함 •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 (이하 수익자부담 경비)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여야 함
집행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수익자부담경비라도 사전에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성립전예산 집행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될 경비로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 •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집행 • 산출내역의 원가통계비목 설정 시 세부사업 내 목별로 예산이 통제됨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성립전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등 교부	• 목적사업비 등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 수익자부담경비 변경 사안 발생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 지원금 포함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학교회계 규칙 제15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부합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성립전예산 확정 및 집행	• 성립전예산 확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집행
차기 추경예산 반영	•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6 예산의 이·전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 세출예산의 집행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음
-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가 예산의 이용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7조)

-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등 집행잔액 반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란?

-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심의받는 것을 말함
 - ※ 이용의 범위: 보결(대강) 수업수당,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각종공과금, 시설비

나 예산의 전용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8조)

-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음

※ “목”: 세출 예산 과목 중 A10 인건비, B10 학교운영비, B20 업무추진비, C10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D10 예비비및기타를 말함

● 예산의 이·전용 차이점

구 분	이 용	전 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운영위원회 심의여부	필요	불필요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사용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의 사업검토 • 사업 · 예산담당자 이·전용 사업 협의
이·전용 신청 (학교회계 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이·전용 신청
이·전용 확정	• 이·전용 신청 시 예산담당자가 해당 이·전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이·전용 확정 • 이·전용 확정된 사업의 예산현액 확인
집 행	• 이·전용 승인완료 후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결 산	• 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첨부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은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단,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용 및 전용은 가능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전용할 수 없다.
- 이·전용되는 과목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이·전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다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변경할 수 없음

라 예산 이·전용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7 예산의 이월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20조)

-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예산의 이월 종류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내 용	원인행위(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 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	원인행위 이후(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한 사업)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회계연도 내 지출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 심의 받은 예산
절 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학교장 결정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결정시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시점	회계연도 말 시점	예산 성립 시점
집행기간	2년 (단, 사고이월 시 3년)	2년	5년 (단, 사고이월 시 6년)
재 이 월	지출원인행위액은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불가	명시이월 불가 최종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이월금액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부대경비 포함)	사용잔액
이월예산 관리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예산집행 시 예산현액(예산액+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로 관리하며, 이월사업비로 결정되면 어느 때라도 집행 가능		
예시	25년 10월 ○○○ 리모델링 구축 비용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계약, 공사, 대금지급의 기간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5년 12월 학교 옥상 방수 공사 및 대금지급이 당초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공 중 폭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건조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회계연도 내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학교 개교시 1학년 학급배정, 다음연도 2학년 학급배정과 같이 학생수 증가 및 학교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개교경비를 그에 맞게 연도별로 운영하는 경우

나 예산의 이월 업무처리 절차 (명시, 사고, 계속비)

순	과정	주체	주요 내용
1	예산 이월 사안 발생	사업부서/행정실	사업 및 예산담당자의 예산검토
2	예산 이월 신청	사업부서 (업무관리 결재)	사업부서의 이월 신청(내부결재) ※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전 신청 당해 사업추진의 근거 제시
3	이월 신청 입력	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결재)	예산의 이월 요건 확인 집행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이월 신청 입력【예산관리→예산운영→명시이월 신청관리, 계속비사업관리】 [명시이월 사업예산 조서, 계속비 사업예산 조서] 제출
4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심의 시 명시이월비, 계속비 심의 ※ 사고이월비는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학교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5	이월 확정	행정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이월확정(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 ※ 이월결정액 입력 * 명시이월비: 출납폐쇄기한 전 가능 * 사고이월비, 계속비: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기간 종료 후부터 10일 이내 사고이월비는 업무관리 내부결재로 학교장 결정 처리
6	이월 예산 집행	사업부서	사업부서의 이월 예산 집행
7	결산	행정실	운영위원회 결산서 제출 시 이월확정액으로 [명시(사고)이월 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 제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구 분	주 요 내 용
사용요건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 • 재해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와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보다 초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편성기준	• 예산총액의 100분의 0.1 이상 100분의 1 이하
사용제한	•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없음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지출할 수 없음 •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예비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의(결산)를 받는 관계로 자칫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 • 예비비 사용 결정 후 해당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 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예비비는 사용 결정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므로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첨부해야 함

예비비 사용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예산담당자의 예비비 사용 검토
예비비 신청	• 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예비비 신청
예비비 사용 승인	• 해당 예비비 사업의 지출요건 및 집행요구 내역의 타당성 확인 후 사용 승인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결 산	•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첨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

결산 절차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매년 2월 말일	• 학교회계 출납폐쇄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출납 폐쇄의 예외기간 종료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결산서 작성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결산서 제출 전	• K-에듀파인시스템에서 결산 처리 (월마감-명시·계속비·사고이월확정-이월마감-불용액처리-잉여금(반환금)처리)
결산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4월 말까지)	• 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
예결산소위원회 심사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	필요 시	• 예결산소위원회에 결산 회부 • 결산에 대한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결산 심의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	-	• 예결산소위원회의 결산 심사결과 보고 •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 의문사항은 관련 교직원, 학생대표 등 의견 청취
결산 심의 결과 통보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월 말까지)	• 운영위원회 결산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K-에듀파인시스템 결산 확정처리 (관할청으로 결산서 자동제출)
결산 공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2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결산서 공개

● 회계연도 종료(출납 폐쇄)

-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를 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
- ▶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단,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 20일) 까지)
- ※ 세입세출외현금은 출납폐쇄기한 없음

세입 결산

●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로 수납한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 채무면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여 징수해야 할 금액

세출 결산

-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내역, 사고이월·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내역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이 월 액	해당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다음년도 이월액-보조금 반환 확정액

운영위원회 심의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결산서	1.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 시설적립금 현황(잔액증명서 첨부) 3. 예비비 사용명세서,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명시·사고이월액 조서, 계속비이월 명세서(해당 있는 경우만 제출) 4. 그 밖의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 K-에듀파인 학교회계 양식 활용

VI 학교회계 과목별 예산편성 및 운용 기준

1 예산편성 과목 구조

-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3조
- 목적
 - ▶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
 - ▶ 학교재정의 운용 상황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구조의 개요

〈 예산 구조 〉

- **세입예산**: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구조[교육부]
- **세출예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교육부]-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 구조

구 분	정책사업 (전략목표)	단위사업 (성과목표)	세부사업 (지표관리)	세부항목	목·세목	원가통계 비목
내용	●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 ● 국가교육목표 반영	●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 국가수준의 교육 활동 사업비 분류로 유·초·중등 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산출을 위한 사업 분류	● 예산서 체계 및 예산, 사업관리의 최소 단위 ● 학교교육활동의 핵심 활동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 계획의 구체적 활동	● 세부사업에 연결되어 세부사업에 대한 정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무 구분 ● 세부사업 안에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 있는 업무항목	● 중앙 정부와 동일한 목	● 목을 세부적으로 관리
관리	☐ 학교급별, 설립별, 조직별, 기능별 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 투입, 과정 및 산출지표가 표시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화					

※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에 명시된 체제에 의하여 편성

※ **예산통제(목별)**: 예산 집행 시 제한을 두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1개의 세부사업에 여러 개의 원가통계비목이 있을 경우 목별 예산현액을 초과 집행할 수 없음

“목”: A10 인건비, B10 학교운영비, B20 업무추진비, C10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D10 예비비및기타

가 이전수입 (A0000)

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급식,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운영·개발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
-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

2)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A3000)

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0)

학교운영비전입금 (A310101)

- ㉠ 학교기본운영비
 -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배분기준에 따라 교부되는 경비
- ㉠ 통합사업운영비
 -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 추진하는 운영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총액배분하고, 사업 목적 달성 후 집행잔액을 학교 현안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
- ㉠ 총액배분인건비
 - 학교로 반복·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 제2장 『2025학년도 학교운영비 예산지원』의 ‘Ⅳ. 학교운영비 편성 사업[목록]’ 참조

목적사업비전입금 (A310102)

- ㉠ 학교의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
- ㉠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전입금은 소요자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 교부된 목적사업비 집행·정산 결과 10만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조치

3) 기타이전수입

가)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0)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01)

- ㉔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 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201)

- ㉔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기타 학교 간 사무위탁의 처리를 위한 경비 등)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20301)

- ㉔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 내 타회계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나)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0)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 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다) 민간이전수입 (A4400)

기부금 (A440101)

- ㉔ 유치원 등 발전기금회계가 없는 학교의 기부금
※ 발전기금회계가 있는 학교는 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

나 자체수입 (B0000)

1) 학부모부담수입(B1000)

가) 수익자부담수입 (B1200)

- ㉔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 늘봄학교 운영비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함
- ㉔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사업의 경우 사전에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㉔ 수익자부담경비는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함
- ㉔ 수익자부담경비는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자부담경비에 이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동일 사업에 편성함
- ㉔ 정산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서를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㉔ 징수결정 할 때 개인부담자, 지원자, 감면자를 구분 징수하여 별도 내역으로 관리

2) 행정활동수입 (B3000)

가) 사용료및수수료 (B3100)

사용료 (B310101)

- ㉔ 학교체육시설(체육관·수영장·운동장 등), 교실, 강당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
 - ㉔ 매점, 급식소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 ㉔ 학교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 ※ 사용자가 납부한 모든 사용료(사용료 성격의 청소비, 냉·난방비 등 포함)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 처리

수수료 (B310102)

- ㉔ 입시전형료, 행정정보 공개 등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나) 자산수입 (B3200)

자산매각대 (B320101)

- ㉔ 불용물품 등의 매각대금(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다) 적립금처분수입 (B3300)

- ㉔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시설보수를 위해 매년 적립한 시설적립금 처분 수입
- ㉔ 시설적립금 처분 시 이자수입은 학교회계 이자수입(B350201) 처리

라) 보증금회수 (B3400)

- ㉔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마)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0)

지난년도수입 (B350101)

- ㉔ 지난년도에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 계상)

이자수입 (B350201)

- ㉔ 정기예금 및 학교에서 개설한 계좌의 예금 이자수입(단, 학교발전기금 계좌 및 세입
세출외현금 퇴직금 관련 계좌의 이자는 제외)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301)

- ㉔ 상기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실습수입, 변상금,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자원순환 수익, 위약금, 신용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단,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직접 지출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

다) 기타수입 (C0000)

1) 전년도이월금 (C1000)

가) 순세계잉여금 (C1100)

- ㉔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여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결산상 잉여금)
 -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보조금반환확정액)

나)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0)

- ㉔ 전년도 목적사업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공공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다) 이월금 (C1300)

- 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의 구분

구 분	내 용	회계구분		학교회계 세입과목
		학교 회계	교특 회계	
재산수입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수입 (토지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 수입으로 원가통계비목구분)	○		사용료
	재산매각수입(입목죽, 전화가입권등 포함)		○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학금과 수업료		○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 수입: 행정재산의 토지사용허가 수입	○		사용료
	시설물사용료 수입: 행정재산의 교육시설 사용 허가수입(교실, 식당, 매점, 급식소, 운동장, 체육관 등)			
	자판기, 공중전화 사용료			
수수료수입	정보공개 수수료		○	
	입학전형료(단,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회계로 편입)		○	수수료
	기타 수수료	○		
실습수입	생산물매각대(채소, 버섯, 달걀, 우유, 과일 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동·식물매각대(화훼, 분재, 애완조류, 축산 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예금이자 수입	정기예금이자(환매체, CD 등의 이자)	○		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공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		이자수입
자원순환 수익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대체에너지 판매 관련 수익금	○		기타행정활동수입
변 상 금	법령 또는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받는 수입 (물품 손·망실 변상금 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무단점유 및 재산관련 변상금		○	
위 약 금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지연배상금, 하자보증금 등)	○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	불용물품 매 각 대	사무기기, 도서, 개별 냉난방기, 천정형 냉난방기, cctv, 물탱크, 강당기계기구 (이동식조명), 각종 펌프 등	○	자산매각대
		통학버스, 어린이놀이시설		
	수도광열비	○		기타행정활동수입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		기타행정활동수입
	매점운영수익금	○		기타행정활동수입
	감사지적 회수금(단,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직접 지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 세입금 중 교특회계 세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수납한 후 반환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조치함

가 인건비 (A00)

1) 공무원보수 (A10-02)

공무직인건비 (A100202)

- ㉔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 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
 - 호봉제공무직, 월급제공무직 등

2)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3)

기간제교원인건비 (A100302)

- 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기간제근로자인건비 (A100303)

- 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8조, 제11조)

- ▶ 학교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 퇴직급여제도

종류		설명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개인형(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운용 가능, 제도 운용은 DC와 유사

● 퇴직급여의 관리

-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 퇴직적립금 추가 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회계연도 내 발생 이자 포함)
-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체신 관서에 위탁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
- ▶ 퇴직적립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퇴직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 2021.3.1.자 교육공무직원 전보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안내(노사협력과-1307, 2021. 2. 18.)
- ▶ 2025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 통합운영 계획 알림(노사협력과-3762, 2025. 6. 2.)

3) 기타수당 (A10-04)

기타수당 (A100401)

- ㉔ 각종 법령(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 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 ㉔ 법령과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수당은 예산편성 불가
 - ▶ 법령, 지침, 사업부서 지시 등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예) 소풍교외지도수당, 급식지도수당, 교통지도수당, 시험출제수당, 방학캠프수당 등
 - ▶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내 각종 경시대회 및 체육대회와 관련된 수당도 편성할 수 없음
- ㉔ 각종 행사 시 참여단체(개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경비(협찬비 등)는 일반업무추진비 지급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할 것

나 운영비 (B00)

1) 학교운영비 (B10)

운영수당 (B100102)

- ㉔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나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기타 실비지급 경비(강사수당, 외부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여비 (B100108)

- 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생여비
- 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조례 기준상의 국내여비 단가에 의하여 책정 계상
- ㉔ 관련 또는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을 지양하고, 출장기간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계상
- ㉔ 비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회의 참석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㉔ 관외 출장여비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출장여비 부당 청구·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빈틈없이 할 것

교직원복지비 (B100112)

- ㉔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피복비, 특근매식비, 직무관련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경비 등 교직원 복지비
- ㉔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업무복* 등)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교직원(시설관리·조리·운전·기타직렬 등)에게 구매·지급하는 경비
 - 피복은 본래 용도에 맞게 구입해야 하며, 개인 목적의 의복 구입 금지
 - ※ 작업복·위생복·운전복·기타피복을 업무복으로 명칭만 변경(통일)하며, 업무복으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피복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 ㉔ 특근매식비는 전년도 초과근무 현황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편성
- ㉔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등 지급경비
 - 대상: 생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포함 (단,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로 6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
 - ※ 학교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 적용 가능

2) 업무추진비 (B20)

일반업무추진비 (B200101)

- ㉔ 교직원 협의회, 학부모 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소속 학생에 대한 격려, 경조사비 및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 ㉔ 각 사업 및 행정실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행사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 ㉔ 학교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

(단위: 천원, 연액)

구 분	교(원)당 (분교당)	급당	교직원당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3,000 (1,500)	110	90

- 주) ① 학급수는 특수학급, 다문화특별학급, 병설유치원 및 방송통신중·고 학급을 포함
 ② 교직원수는 해당학교 현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단, 주15시간 이상이며, 6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
 ※ 교직원수는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되, 학급수 조정 등으로 교직원수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변경된 교직원수로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월할계산(1월 미만 일수는 절사)하여 조정 가능

㉔ 통합사업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및 가능 사업(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외 추가 계상 가능)

- 기준: 총 교부액(운영비가 별도로 산정된 경우 운영비)의 5% 이내, 최대 2,000천원
- 통합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목록

순	사업명	순	사업명
1	특색교육과정 운영	11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2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지원	12	과학중점학교 운영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13	영농학생축제 운영 지원
4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	14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5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운영	15	상업경진대회 운영
6	자유학기제 운영(진로연계교육 운영교 지원 외)	16	경상남도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7	교과특성화학교	17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8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체육고등학교제외)	18	창원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농수산고 선진화교육 지원	19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중등교육과-31027, 2024.12.23.)
10	농업실습실 운영 지원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

- ▶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전별금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가입한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운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비 및 협의회 경비(유사명칭 포함)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임의단체란 교장단회, 교감단회, 교사회, 행정직협의회 등을 포함하며, 지출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법령에 운영근거가 있는 단체라도 교직원이 사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는 개인이 부담
- ▶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 협의회 및 회의 시 간식, 생수, 커피 등 최소한으로 집행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에 대한 조치사항

-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해야 하므로 협의회 후 남은 잔액으로 추가 집행 금지
- ▶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경조사비, 학생격려금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함
- ▶ 위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따름
-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감사관/감사자료공개방의 감사사례 참고

경조사비 지급 기준

- ▶ 지급 범위
 - 지급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결혼 및 사망
- ▶ 지급 대상자
 - 소속 상근 교직원(학교장 제외)
 - ※ 관련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외주업체직원 등은 제외함
- ▶ 지급 방법
 - 경조사비는 지급대상자(배우자 포함)에게 직접 EFT·e교육금고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전달자를 통해 현금(또는 EFT·e교육금고)으로 지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징구

※ 학생에 대한 경조사비는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사망에 한함 (교직원 경조사비 지급 방법 준용)

직책급업무추진비 (B200102)

- ㉮ 학교(유치원)장의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기 준 액		학 급 가 산 금
	월액	연액	
유치원장,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장	250	3,000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마다 월 4,000원 가산(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다문화특별학급, 방송통신중·고 학급 및 분교장 학급 포함)

※ 단, 통합운영학교는

- 전체학급 10학급 이하: 하위 학교 지급분의 50% 감액 지급
- 전체학급 11학급 이상: 급별 전액 지급

- ㉮ 용도: 직원 격려, 내·외부와의 소통,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직책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

- ▶ 학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공문 등으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직무대리자에게 일할 지급함(일할 지급은 직무대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무대리규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참조)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목적사업업무추진비 (B200103)

-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누리집 참조)

- ㉮ 계상한도 (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외 추가 계상 가능)

▶ 편성한도

- 총 교부액(운영비가 별도로 산정된 경우 운영비)의 5% 이내로, 최대 200만원 까지 편성 가능

구분	목적사업비 교부액(천원)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천원)	비고
	총 교부액	운영비		
(예시1)	10,000	0	500	총 교부액×5%
(예시2)	50,000	0	2,000	최대 2,000천원
(예시3)	20,000	5,000	250	운영비×5%
(예시4)	100,000	50,000	2,000	최대 2,000천원

▶ 편성한도 제외 대상

- 사업부서의 별도 지침(기준)이 있는 경우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이 아닌 기관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 심야(23시~다음날 6시), 토요일·공휴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자산취득비 (C00)

1) 시설적립금 (C30)

- 매년 사용자에게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향후 대규모 시설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시설적립금으로 운영
- 학교가 시설적립금을 운영할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고, 결산 시 교육지원청과 운영위원회에 적립금 현황을 보고하는 등 시설적립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BTL운영학교는 별도 지침에 따름)
 - ▶ 적립금승인 신청: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 교육지원청
 - ▶ 적립금승인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승인후 10일 이내) → 도교육청
 - ▶ 적립금현황 보고: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운영위원회 결산 심의 후 10일 이내) → 교육지원청(6월 20일까지) → 도교육청
-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계좌 별도 개설, 시설적립금 관리대장 작성 비치
 - ▶ 시설적립금 계좌에서 발생된 시설적립금 이자는 학교회계 이자수입으로 처리
- 적립한도액: 해당연도 적립대상 시설물의 사용료 총액
- 최대 적립기한: 4년(연장 가능)
- 시설적립금 운영 관련 각종 서식[제5장 참조]

BTL 운영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사용료

- ▶ BTL 운영학교의 교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수입은 학교회계에 전액 편성하여 「임대형 민자사업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운용 요령」에 따라 운영
- ▶ BTL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료 수입의 일부를 학교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시 별도 관리
 - ※ 세출예산과목(사업별) 사업 해설에 따라 (세부)학교시설장비유지 또는 (세부)시설확충및개선에 편성

라 예비비및기타 (D00)

1) 예비비 (D10-01)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
-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음
- 연도 중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예비비의 편성기준: 예산총액의 100분의 0.1 이상 100분의 1 이하

VII 학교 교육재정 공개 및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운영

1 학교 교육재정 공개

- 학교 누리집 초기(메인)화면에 [정보공개방-학교회계현황]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학교 회계현황』 배너 설치
- 공개항목

공개 항목	근 거	방법 및 시기
학교회계 예·결산서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2조	학교 누리집>학교회계현황 - 예산서 및 결산서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1년 이상)
학교발전 기금	■ 2025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개정 알림 (정책기획관-2749, 2025. 2. 25.)	학교 누리집>학교회계현황 - 조성·운용 및 (변경)계획서: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 - 접수 및 집행내역: 분기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익자 부담경비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	학교 누리집>학교회계현황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품권 구매내역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요령 개정 알림 (재정과-4425, 2021.4.19.)	학교 누리집>상품권구매공개방 - 구매용도 · 수량 · 총구매액 등(월 1회)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학교 누리집>업무추진비공개방 (사용일 다음 달 10일까지)
수의계약 내역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기관별 '계약체결 현황'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교 누리집>학교회계현황 - 바로가기(링크)활용 안내

※ 예·결산서 공개 방법

- K-에듀파인 예결산서 현황 일괄출력 원본파일(PDF) 공개(총칙,부속서류 등 포함)

- 운영기간: 연중(상시)
- 참여대상: 학생·학부모
- 참여단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과정(본예산·추경예산)
- 참여방법: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의견)서 제출
- 제안분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업,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기타 학교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제외 대상]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안내	· 학교 누리집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및 참여 방법 안내 ※ 제출 서식 안내장과 함께 발송 또는 누리집 탑재
의견 수렴 (제안)	· (직접) 학생·학부모가 인편·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 · (간접) 학부모회 또는 학생회를 통하여 제출
담당부서 검토 및 예산요구서 제출	· 취합된 의견을 담당부서로 배정·안내 ·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 반영	· 예산(안)에 반영 및 예산서 운영위원회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예산서 확정
운영(예산편성) 결과 공개	·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의견) 중 반영된 사업 등 운영 결과를 학교 누리집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예산 편성』에 예산확정 후 7일 이내 공개

[예시1]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의견)서

☐ 제안자 인적 사항			
성명	홍길동	구분	☐ 학생 ☐ 학부모 ☐ 학생회 ☐ 학부모회 해당되는 곳에 ✓ 체크
주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교실 외투 보관용 옷걸이 설치		
사업목적 (제안취지)	학생들의 좌석 불편함 해소와 외투 손상 방지		
소요예산	옷걸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100,000원×10학급=1,000,000원 ※ 사업 실행에 소요되는 예산액, 예산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재 생략 가능		
사업내용	☐ (학교 상황) 학생들이 겨울철 외투, 교복 자켓 등을 보관할 곳이 없어 교실 의자에 걸어 둠으로 옷 손상, 학생 교실 활동에 걸림돌이 됨 ☐ (제안내용) - 수혜자: 전교생 - 사업량: 10학급, 급당 1개 - 사업기간: 2025. 5. ~ - 추진방법 · 각 교실에 겨울철 외투, 교복 자켓 보관용 옷걸이 설치 · 교실 여건에 따라 고정식, 이동식 옷걸이 설치 · 스텐 재질이나 인테리어 파이프를 제작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사업기간,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기타의견			
행정사항	☐ 제출: 본교 행정실로 인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문의: 행정실(☎123-4567)		
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운영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등) 2. 수집항목: 신청인명(개인, 단체), 주소,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4.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체크)			

[예시2]

2025학년도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학교

▣ 학생·학부모 제안(의견) 제출 현황

제안 번호	구분	제안자	제안(사업)명	제안내용 요약
1	학생	박○○	교실 옷걸이 설치	·(목적) 학생 외투 손상 방지, 원활한 교실 활동 ·(내용) 각 교실 외투·교복 자켓 보관용 고정식 옷걸이 설치

[작성 요령]

- 구분: 학생, 학부모, 학생회, 학부모회
- 제안(의견제출)자: 학생·학부모 실명은 비공개
- 제안내용 요약: 목적,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 학생·학부모 제안(의견) 심의 및 예산편성 결과

(금액단위: 천원)

제안 번호	제안사업명	검토의견	예산 반영액	반영내역	비고
1	교실 옷걸이 설치	수용	1,000	100,000원×10학급	

[작성 요령]

- 검토의견: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기추진, 업무참고, 비대상으로 기재
- 예산반영액 및 내역: 본예산, 추경예산에 반영금액 및 내역
- 비고: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안내,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 미수용 사유 등

VIII 신설학교 및 통폐합 대상학교 업무처리

1 신설학교 회계업무 처리

● 예산편성

가. 개설사무취급학교

▶ 신설학교 개설사무취급학교에서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비 운영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예시 (정책)교육활동지원, (단위)교육여건개선, (세부사업)교육환경개선, (세부항목)00학교 개교준비경비

나. 신설학교

- 1) 학교회계는 K-에듀파인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2) 개교 시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학교예산은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3 제4항을 준용하여 준예산으로 편성·집행 ⇒ K-에듀파인에서 본예산으로 인식함
- 3)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10일 이내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최초로 확정하는 예산(준예산)을 본예산으로 인식하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후 심의·의결되는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됨]
※ 예산안의 편성, 심의, 확정절차는 제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받은 후 25일 이내에 심의

다. 업무처리 방법

- 1) K-에듀파인에서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

- ① 예산편성·확정(본예산, 3월초 K-에듀파인 예산등록 후 확정) ⇒ [단, 9월 개교시 9월초 K-에듀파인 예산등록 후 확정]
- ② 집행(예산확정 후 ~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전까지) ⇒
- ③ 운영위원회 구성(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④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운영위원회 구성 후 10일 이내) ⇒
- ⑤ 운영위원회 심의(예산안을 받은 후 25일 이내, 본예산까지 심의받음) ⇒
- ⑥ 제1회 추경예산 확정 ⇒ ⑦ 집행

- 2) 유의점

▶ 운영위원회 구성 후 첫 예산요구안이 본예산안이 아닌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본예산은 준예산제도를 준용하므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에 한해 집행
- ※ 운영위원회 구성 전 편성·확정된 예산은 본예산으로 표기됨

● 회계 처리

가. 3월 1일 개교

구 분	회 계 처 리
개설사무 취급학교	신설학교 개설사무취급학교에서는 개교준비경비에 대하여 학교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2월 말이 되면 정산하여 그 경비내역과 함께 집행잔액을 3월초에 신설 학교회계로 전출(반환금) 처리함
신설학교	(목)다른학교회계전입금, (원가통계비목)다른학교회계전입금으로 설정하여 세입처리하고, 해당 세출사업에 배부하여 예산편성 ▷ 신설학교는 전년도 예산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월금으로 징수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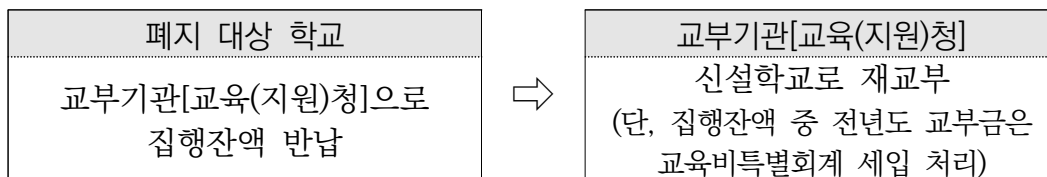
나. 9월 1일 개교

구 분	회 계 처 리
개설사무 취급학교	신설학교 개설사무취급학교에서는 개교준비경비에 대하여 학교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8월 말이 되면 정산하여 그 경비내역과 함께 집행잔액을 9월초에 교육(지원)청로 과오납반환함
신설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재교부시 (목)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원가통계비목)목적사업비 전입금으로 설정하여 세입처리하고, 해당 세출사업에 배부하여 예산편성

2 통폐합 대상학교 회계 처리

● 통폐합 대상학교 업무 처리

가. 집행잔액 처리절차



- 나. 폐지학교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20조에 따라 소관사무를 신설학교로 인계
- 다. 통·폐합(이설 포함) 대상학교는 시급한 학생안전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 외에는 신규 시설공사(시설확충 및 개선 포함) 예산은 편성 불가

사례 우천통로, 보건실 현대화사업, 과학실험실 리모델링, 차광막 설치, 주차장 확장, 학교담장 설치, 화단 조성(조경수 식재·이식 포함),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등

IX 교육(지원)청 부서 협조사항

- 학교운영비(통합사업운영비, 총액배분인건비 포함) 교부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교부하되, 2/4분기(3~5월)분 학교기본운영비는 타 분기에 비해 증액하여 교부
⇒ 1/4분기(1~2월분), 2/4분기(3~5월분), 3/4분기(6~8월분), 4/4분기(9~12월분)
- 통합사업운영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단위학교에 교부 통지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집행잔액을 학교 현안사업비로 사용 가능
- 총액배분인건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단위학교에 교부 통지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나 필요 시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반납 요구 가능
- 예산이 편성·확정된 목적사업비 또는 총액배분인건비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교부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맞게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연도 말에 교부하여 단위학교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예산 운용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월별, 반기별)로 나누어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최초 교부한 보조사업명과 동일하게 교부(보조사업명을 다르게 교부할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하여 세입예산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
- 목적사업비 배분 계획 수립 시 기존 지원 내역 조회(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교육재정/학교목적사업비 교부현황)하여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가 중복·편중 되지 않도록 자체 심의·조정
- 목적사업비 교부 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을 반드시 명시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 동일 사업에 학교별 단위사업이 다를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학교회계 재정분석에 오류를 가져옴
- 학교로 배부한 목적사업비는 집행 수시 점검, 회계연도 종료(2월말) 이전까지 정산·반납 완료, 이월사업에 대하여 현황 파악 및 관리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교육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공문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내용 통보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지침 확정 통보 이후 각급 학교에 안내되는 내용은 도교육청 학교회계업무담당 부서와 협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람

제2장

2025학년도
학교운영비
예산지원

I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구성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text{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text{학교운영비전입금} + \text{목적사업비전입금}$$

▶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액 교부하는 경비
(학교기본운영비+통합사업운영비+총액배분인건비)

※ 학교운영비전입금 구성

항 목	내 용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규모·여건에 따라 산출하는 기준 경비 (포함사업) 학교장이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권장사업)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통합사업운영비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 ※ 교부사업은 반드시 예산편성 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 달성 후 집행잔액은 학교 현안사업비로 사용 가능
총액배분인건비	반복적·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

▶ 목적사업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경비

II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방향

2025년 교당·급당·학생당경비는 2024년 최종예산 대비 2.82% 상승

▶ 교당·급당 경비 변동률 추이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대비 변동률	15%	동결	△7.3%	4.17%	17.06%	6.2%	2.82%

※ 「2019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교당경비와 급당경비 분리

▶ 학생당 경비 변동 추이

(단위: 천원)

년도	유	초	중	고			특수	비고
				일반	특성화 (공업)	특성화 (비공업)		
2020	136	102	231	137	187	141	130	
2021	121	91	223	332	376	335	116	
2022	132	98	235	351	400	355	126	
2023	148	110	264	395	450	399	141	
2024	157	116	280	419	477	423	149	
2025	160	119	295	428	488	432	154	

Ⅲ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

학교기본운영비 구성항목

구성항목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비고
				일반	특성화 (공업)	특성화 (비공업)			
교당·급당·학생당 경비	○	○	○	○	○	○	○	○	병설유치원 교당경비 제외
건물유지비	○	○	○	○	○	○	○	○	병설유치원 제외
동력사용료					○	○	○		
차량운영비	○	○	○	○	○	○	○		직영 차량보유 학교

※ BTL사업 추진 운영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 BTL사업 추진 운영학교 협약 내용(담당부서 별도 통보): 당직관리비, 방재관리비, 청소관리비, 방역 및 위생관리비, 건축물 및 옥외관리비를 해당학교의 BTL사업 운영사에 별도 지급
- BTL사업 추진 운영학교는 교당·급당경비 대비 협약내용 대상사업 소요경비 비율인 초등학교 평균 10.7%, 중학교 평균 15.9%, 고등학교 평균 14.7%, 특수학교 평균 8.5%를 교당·급당경비에서 감액하여 배분

1 교당 경비

(단위: 천원)

학급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일반	특성화 (공업)	특성화 (비공업)	
1	108,008	180,923	82,862	176,936	119,846	240,652	318,388	230,472	259,782
2	108,008	191,924	85,879	217,990	141,658	240,652	329,420	238,335	265,356
3	108,008	205,674	93,533	234,888	144,743	244,335	341,657	247,059	265,590
4	108,008	223,332	102,010	251,784	144,743	248,882	346,860	250,767	267,132
5	108,008	230,868	105,497	261,672	144,743	249,644	350,861	253,619	275,460
6	108,664	237,593	113,759	266,524		249,869	354,930	256,519	283,593
7	110,544	255,003	113,759	269,726		250,124	357,270	258,188	286,876
8	113,082	260,450	113,759	278,936		251,566	359,727	259,939	291,019
9	115,616	266,533	113,759	280,104		254,277	362,604	261,991	301,607
10	117,147	286,445	113,759	282,182		254,896	365,917	264,351	310,392
11	119,138	296,640		283,236		256,225	368,245	266,012	319,611
12	121,172	317,119		288,085		258,365	371,140	268,075	329,865
13	123,250	337,596		288,943		261,755	373,221	269,557	341,996

학급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일반	특성화 (공업)	특성화 (비공업)	
14	125,375	339,057		290,605		265,087	376,579	271,950	350,475
15	127,548	339,712		291,944		265,773	381,892	275,736	356,774
16	129,765	341,736		292,493		267,018	387,115	279,462	363,959
17	132,034	345,488		294,086		269,926	392,041	282,973	373,659
18	134,352	346,454		303,296		270,364	396,940	286,462	379,797
19	136,719	347,559		304,464		271,923	401,657	289,826	382,545
20	139,141	348,663		306,543		273,466	406,348	293,171	384,752
21		349,884		307,597		274,899	410,852	296,382	385,369
22		350,283		312,448		276,314	415,326	299,569	387,609
23		350,749		313,303		278,686	425,580	306,877	391,535
24		352,327		314,965		279,533	435,327	313,826	393,233
25		353,485		316,307		280,878	443,843	319,896	417,086
26		354,744		317,401		281,681	445,200	320,865	425,148
27		357,149		318,740		282,763	447,032	322,171	433,581
28		358,817		319,290		283,849	448,872	323,482	439,374
29		360,694		320,882		287,611	455,242	328,023	441,266
30		365,836		330,092		291,307	461,500	332,483	443,207
31		368,714		331,261		294,794	467,405	336,692	447,586
32		394,815		333,339		298,260	473,273	340,875	451,640
33		397,154		334,394		301,600	478,929	344,907	460,490
34		397,838		339,244		304,921	484,551	348,916	463,703
35		400,180		340,101		308,109	489,951	352,764	468,249
36		402,607		341,761		313,423	498,949	359,175	476,124
37		405,982		343,101		318,227	507,086	364,977	483,214
38		409,920		355,417		323,062	515,269	370,811	490,348
39		413,773		365,353		328,147	523,881	376,950	497,979
40		416,707		375,291		328,651	524,730	377,555	528,234
41		420,342		375,291		329,196	525,653	378,212	538,594
42		424,049		375,291		332,260	529,520	382,380	549,432
43		424,831		375,291		337,008	538,885	387,644	556,874
44		428,797		375,291		343,421	549,743	395,383	559,307
45		432,675		375,291		348,850	558,936	401,936	561,800
46		435,590				349,662	560,314	402,917	567,253
47		439,447				349,772	560,495	403,047	572,637
48		443,375				350,946	561,632	404,209	584,010
49		444,903				352,785	565,598	406,685	588,137
50		448,796				356,858	572,496	411,602	593,981
51		452,595				360,589	578,814	416,107	596,470

학급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일반	특성화 (공업)	특성화 (비공업)	
52		457,566				364,591	585,591	420,936	596,470
53		461,071				378,649	609,391	437,901	596,470
54		464,645				381,564	614,328	441,419	596,470
55		467,564				382,193	615,392	442,178	596,470
56		470,481							596,470
57		478,557							596,470
58		488,197							596,470
59		492,438							596,470
60		497,918							596,470
61		513,619							596,470
62		531,037							596,470
63		534,452							596,470
64		538,883							596,470
65		543,098							596,470
66		543,098							596,470
67		543,098							596,470
68		543,098							596,470
69		543,098							596,470
70		543,098							596,470

- ※ 이 표에 명기된 학교 급별 최고 학급단가를 초과할 시 최고단가 적용
- ※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급 규모에 따라 교당경비 감액 지급

- 전체학급 10학급 이하: 교당경비 기준액의 90% 지급

- 전체학급 11학급 이상: 교당경비 기준액의 95% 지급

2

급당·학생당 경비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학교	각종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일반	특성화 (공업)	특성화 (비공업)		중	고
급당 경비	16,254	14,605	3,243	3,114	2,967	3,128	4,659	4,785	4,049	4,715	2,967	4,659
학생당 경비	160	160	119	142	295	295	428	488	432	154	295	425

- ※ 학생당경비에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 157,200원, 고등학교 209,520원 포함
- 각종학교(고)는 고등학교 단가를 적용하되 진로체험운영비(3천원) 제외

3

건물유지비

- 건축물: 학교별 건물구조 및 면적,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배분 (제4장 참고)
-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용역: 건축물 연면적 합산 1만㎡ 이상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학교(BTL학교 포함)에 월 1회 이상 점검 용역비 배분

(단위: 천원)

구분	연면적 합산 1.5만㎡ 이상	연면적 합산 1만㎡이상 1.5만㎡ 미만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용역	8,160 (월 680)	6,900 (월 575)

※ 건축물 연면적 합산 1만㎡ 이상의 학교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 대상자(임시자격 및 유자격)가 없는 경우 위탁 용역사를 통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 기계설비 성능점검용역: 개별 건축물 1만㎡ 이상이 있는 학교(BTL학교 포함)로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용역비 배분

(단위: 천원)

구분	개별건축물 1.5만㎡ 이상	개별건축물 1만㎡이상 1.5만㎡ 미만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14,480	11,370

4

동력사용료

- 대상: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학교
- 배분기준: 전전년도 하반기 ~ 전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집행 금액의 100%를 지원하되,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예산 증액분의 50% 차감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5

차량운영비

- 대상: 직영 차량 보유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 배분기준
 - ▶ 유치원 및 초·중학교: 통학편의지원 및 통학차량 운영 지침(학교지원과)의 교육지원청 통합관리 운영비 기준에 따라 배분
 - ▶ 고·특수학교: 최근 3년간 평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배분 (제4장 참조)

IV 학교운영비 편성 사업[목록]

1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1) 학교기본운영비적 성격 사업

급별	학교기본운영비적 성격 사업			
유치원 (단설)	○ 직책급여무추진비 ○ 무인기계장치용역비 ○ 기타공통운영경비 ○ 운동회경비 ○ 건물유지비(소규모 급식 시설·관사 보수비) ○ 유아복지비 ○ 수준별교수학습자료제작비	○ 영역별교구확충비 ○ 자료개발보급비 ○ 체육교구확충비 ○ 먹는물위생관리 ○ 건강검사비 ○ 학습준비물구입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 놀이터 모래 등 검사비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 특수분야연수경비 ○ 임시대체강사수당 및 보결(대강)수업수당 ○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비 ○ 보건실운영비 ○ 일반학습자료제작비 ○ 교육정보화기기유지보수	
유치원 (병설)	○ 영역별교구확충비 ○ 도서구입비 ○ 유아복지비 ○ 수준별교수자료제작비 ○ 교수학습자료구입보수비 ○ 환경정리용품구입비 ○ 교육정보화기기유지보수	○ 정보화용품구입·수리비 ○ 운동회경비 ○ 유아교육행사비 ○ 체육교구확충비 ○ 체험학습비 ○ 건강검사비	○ 특수분야연수경비 ○ 임시대체강사수당 및 보결(대강)수업수당 ○ 학교안전공제회비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비	
초등학교	○ 직책급여무추진비 ○ 무인기계장치용역비 ○ 건물유지비(소규모 급식 시설·관사 보수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포함) ○ 운동회경비 ○ 정보화실운영비 ○ 체육교구확충비 ○ 일반학습자료제작비 ○ 과학교구확충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비 ○ 학생복지비	○ 실험실습비 ○ 재량활동및인정도서구입 ○ 기초학력책임지도 ○ 특수분야연수경비 ○ 임시대체강사수당 및 보결(대강)수업수당 ○ 학교안전공제회비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 먹는물위생관리 ○ 학생건강검사비 ○ 교사내환경위생유지비	○ 구강검진비 ○ 쇠고기유전자검사 ○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생정신건강서비스 ○ 정서행동특성검사 ○ 보건실운영비 ○ 놀이터 모래 등 검사비 ○ 창의적체험활동 ○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 교육정보화기기유지보수	
중학교	○ 직책급여무추진비 ○ 무인기계장치용역비 ○ 정보화실운영비 ○ 건물유지비(소규모 급식 시설·관사 보수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포함)	○ 학생자치활동지원비 ○ 재량활동및인정도서구입 ○ 기초학력책임지도 ○ 특수분야연수경비 ○ 임시대체강사수당 및 보결(대강)수업수당 ○ 학교안전공제회비	○ 쇠고기유전자검사 ○ 교육기부활용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생정신건강서비스 ○ 정서행동특성검사 ○ 보건실운영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비	

급별	학교기본운영비적 성격 사업		
	○ 체육교구확충비 ○ 과학교구확충비 ○ 창의적체험활동 ○ 학생복지비 ○ 실험실습비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 먹는물위생관리 ○ 학생건강검사비	○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 교육정보화기기유지보수 ○ 교사내환경위생유지비
고등학교	○ 직책급여무추진비 ○ 무인기계장치용역비 ○ 건물유지비(소규모 급식 시설·관사 보수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포함) ○ 정보화실운영비 ○ 학생상담활동 ○ 동력사용료 ○ 과학교구확충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비 ○ 학생자치활동지원비 ○ 학생복지비 ○ 수준별교육과정운영비	○ 진로지도보조비 ○ 차량운영비 ○ 기초학력책임지도 ○ 특수분야연수경비 ○ 임시대체강사수당 및 보결(대강)수업수당 ○ 학교안전공제회비 ○ 창의적체험활동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 먹는물위생관리 ○ 학생건강검사비 ○ 교사내환경위생유지비	○ 쇠고기유전자검사 ○ 교육기부활용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생정신건강서비스 ○ 정서행동특성검사 ○ 보건실운영비 ○ 실험실습비 ○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 교육정보화기기유지보수
특수학교	○ 직책급여무추진비 ○ 무인기계장치용역비 ○ 건물유지비(소규모 급식 시설·관사 보수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포함) ○ 장애인체육대회경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비 ○ 차량운영비 ○ 실험실습비 ○ 학생복지비 ○ 직업교육실기구구입비 ○ 특수학교교구제작비	○ 특수교육운용장비대체 ○ 학습자료구입비 ○ 학습준비물구입비 ○ 특수분야연수경비 ○ 임시대체강사수당 및 보결(대강)수업수당 ○ 학교안전공제회비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 학생건강검사비 ○ 교사내환경위생유지비 ○ 쇠고기유전자검사	○ 교육기부활용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생정신건강서비스 ○ 정서행동특성검사 ○ 보건실운영비 ○ 먹는물위생관리 ○ 직업교육실운영 ○ 운동회경비 ○ 교육정보화기기유지보수 ○ 특수학교실기경진대회

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등 학교공통(기본)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포함하여 계상
2.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장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학생 및 학급 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3. 각종학교는 해당 급별 사업내용을 준용{각종학교(고)는 진로체험 운영비 제외}

2) 학교기본운영비 포함·권장사업

구분	연번	사업명	대상 학교급	페이지
포함 사업	1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65
	2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66
	3	학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유·초·중·고·특수·각종	67
	4	산업안전보건 운영 지원비	유·초·중·고·특수·각종	67
	5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68
	6	청소원 인건비	유·초·중·고·특수·각종	69
	7	당직전담사 인건비	유·초·중·고·특수·각종	70
	8	교직원 안전지원시스템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71
	9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신규]	유·초·중·고·특수·각종	72
	10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유·초·중·고·특수·각종	73
	11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74
	12	새 학년 맞이 「교육과정 함께 세움 주간」 참여 신규임용예정교원 인건비	유·초·중·고·특수·각종	75
	13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76
	14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77
	15	특수교육활동비	유·초·중·고	77
	16	또래조정 및 또래상담 운영	초·중·고·특수·각종	78
	17	학교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	초·중·고·특수·각종	79
	18	단위학교 생태전환교육 운영 [신규]	초·중·고·특수·각종	80
	19	학생 독서동아리 운영	초·중·고	81
	20	학생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82
	21	초3 환경체험 현장학습 운영	초	83
	22	학교주관구매 교복 품질 검사비	중·고·특수·각종	83
	23	진로체험 운영 지원	중·고	84
	24	자유학기제 운영(중학교)	중	85
	25	자유학기제 운영(특수학교)	특수	86

구분	연번	사업명	대상 학교급	페이지
권장 사업	26	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	유·초·중·고·특수·각종	87
	27	새 학년 맞이 교실 청소비	유·초·중·고·특수·각종	87
	28	성인지 교육	유·초·중·고·특수·각종	88
	29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운영	유·초·중·고·특수·각종	89
	30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초·중·고·특수·각종	90
	31	특수교육활동 긴급치료비 지원 [신규]	유·초·중·고·특수·각종	91
	32	학급교육활동비	유·초·중·고·특수·각종	92
	33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93
	34	학생 역사 동아리 운영	초·중·고	93
	3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초	94
	36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준비물 지원	중·고	94

※ 권장사업은 학교 회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인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안내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권장

연번	사업명	대상 학교급	페이지
1	특색교육과정 운영	유초중고·특수각종	97
2	학교급식 운영비	유초중고·특수각종	98
3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운영비	유초중고·각종	99
4	수목관리	유초중고·특수각종	100
5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신규]	유초중고·특수	101
6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지원	유	102
7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초중고	103
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초중고·특수각종	104
9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특수각종	105
10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초중고·특수각종	106
11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특수	107
12	생태환경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신규]	초중고·특수	109
13	수업방해행동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규]	초중고·특수	110
14	학교평등예산제	초중고·각종	111
15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초중고·각종	112
16	자율학교 운영 [신규]	초중고·각종	113
17	순회교사제 운영 [신규]	초·고·특수	114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초·중	115
19	교육복지실 설치	초·중	116
20	안전체험교실 운영	초·중	117
21	수업방해행동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초	118
22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	119
23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	초	120
2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중·고	121
25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운영	중·고	122
26	자유학기제 운영(진로연계교육 운영교 지원 외)	중·고	123

연번	사업명	대상 학교급	페이지
27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고·특수	125
28	교과특성화학교	고·각종	126
29	3·15의거 참여자 기념사업 지원	고	127
30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고	128
31	체험중심의 실용영어교육	고	130
32	농수산고 선진화교육 지원	고	131
33	농업실습실 운영 지원	고	132
34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고	133
35	특성화고 전문교과 임용실기시험 지원	고	134
36	직업계고 학생 실습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고	135
37	실험·실습비 지원	고	136
38	읍면지역 직업계고 학생 급식비 지원	고	137
39	과학중점학교 운영	고	138
40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고	139
41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신규]	고	140
42	영농학생축제 운영 지원 [신규]	고	141
43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신규]	고	142
44	상업경진대회 운영 [신규]	고	143
45	경상남도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신규]	고	144
46	특수학교 통학버스 용역비 지원	특수	145
47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운영 지원 [신규]	특수	146
48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각종	147
49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각종	148
50	창원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각종	149

연번	사업명	대상 학교급	페이지
1	영양사 인건비	유·초·중·고	153
2	조리사 인건비	유·초·중·고·특수·각종	153
3	조리실무사 인건비	유·초·중·고·특수·각종	154
4	교무행정원 인건비	유·초·중·고·특수·각종	154
5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유·초·중·고·특수	155
6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인건비	유·초	156
7	전담사서 인건비	초·중·고·특수	157
8	교육복지사 인건비	초·중·고	158
9	과학실험원 인건비	초·중·고	159
10	방과후학교실무원 인건비	초	160
11	구·학부모회직원 인건비	중·고	161
12	치료사 인건비	특수	162
13	특수학교 기숙사생활지도원 인건비	특수	163
14	특수통학차량운전원 인건비	특수	164
15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 인건비	특수	165

V

학교기본운영비 포함·권장사업 설명서

(포함사업) 학교장이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권장사업)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1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지원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268-1095)

근 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목 적

㉮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선제적인 결핵검사를 통하여 교내 결핵 전파 차단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직원, 그 외 전 직종 종사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 ※ 결핵검진 제외 대상자: 당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급식종사자
 - ※ 잠복결핵검진 제외 대상자: 기타법령에 의한 검진실시자, 과거 잠복결핵 양성자, 결핵 확진자

내용

구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시기	연 1회 실시	재직기간 중 1회 실시
방법	흉부 X-선 또는 객담 결핵균 검사	IGRA(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신규채용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 편성기준: 결핵검진 대상자×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수수료
 - ※ 건강검진실시기준 수수료(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구분	직촬14"X14"	직촬14"X17"	CR or DR	Full PACS
수수료	9,520원	9,840원	8,130원	9,080원

-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 의료보험 수가(54,260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페론 감마 검사/질단검사(4%) 보건기관 단가 기준

근거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

목적

-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실현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 교직원 1인당 교육비(30천원)를 지원하여 개인 혹은 단체 교육 실시
 - 교육시간(이론·실습 각2시간, 총4시간)
 - 강사조건(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 ㉠ 산출기초
 - 응급처치교육비: 000천원×0명=000천원

〈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하는 교직원의 범위 〉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 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3

학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268-1095)

근 거

-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목 적

- ㉠ 학급별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감염병의 확산,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학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손소독제, 소독티슈, 보건용 마스크 등)
- ㉠ 편성기준: 50천원×학급수
- ㉠ 산출기초
 - 감염병예방물품구입: 000천원×0종=000천원

4

산업안전보건 운영 지원비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담당 (☎278-1766)

근 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 202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목 적

-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 ㉠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정기적 관리 지원을 통해 학교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문성 신장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산출기초
 - 산업안전보건디딤돌사업 용역비: 000천원×0월=000천원
 - 산업안전보건운영비: 000천원×0종=000천원
 - 급식종사자폐건강검진: 000천원×0명=000천원

5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학교혁신과 학부모지원담당 (☎278-1762)

근거

- 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㉔ 2025 경남교육 3-3-2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자치 활성화

목적

- ㉔ 학부모회 조례의 안정적 정착과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
- ㉔ 내실 있는 학부모회 운영지원으로 학교자치 기반 구축
- ㉔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사업내용

- ㉔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㉔ 내용: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 ㉔ 산출기초
 - 학부모회 운영: 000천원×0회=000천원
 - 학부모 교육: 000천원×0회=000천원
- ㉔ 예산편성(예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항목	사업내용	비고
학교 일반 운영	학교 운영 협력	학부모 협력	학부모회 운영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지원 - 학부모 상담주간, 교육기부 (교통봉사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도서도우미 등) ○ 학부모회 운영지원 -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체험활동 등 ○ 예산편성 - 학부모 여비, 용품구입, 강사수당, 협의회 등 ○ 학부모 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준용	
			학부모 교육	○ 교육내용 -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2회 이상) 예) 자녀와의 소통, 교육정책 이해, 진로진학교육, 자녀인성교육, 부모 역할, 미래교육 등 ○ 예산편성 - 강사수당, 교재 인쇄, 용품구입, 협의회 등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268-1088)

총무과 총무담당 (☎210-5106)

근 거

- ㉡ 총무과-13305(2018. 8. 13.,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 계획”)
- ㉡ 총무과-8024(2019. 4. 30., “청소원 및 당직전담사 관리(근로)체계 기준 계획 안내”)
- ㉡ 총무과-21201(2021. 11. 24., “당직전담사·청소원 정년 만료 후 촉탁계약 계획”)

목 적

- ㉡ 학교시설 청결을 유지하여 학생·교직원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
- ㉡ 청소용역 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사업내용

- ㉡ 대상: 청소원 운영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BTL학교, 분교장 제외)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명=000,000원
 - 보험료: 000천원×0명=000,000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000원
 - 퇴직금: 000천원×0명=000,000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 거

- ㉡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 총무과-13305(2018. 8. 13.,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 계획”)
- ㉡ 총무과-8024(2019. 4. 30., “청소원 및 당직전담사 관리(근로)체계 기준 계획 안내”)

목 적

- ㉡ 야간 및 휴일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 대처 및 지원
- ㉡ 순찰·숙직을 통한 학교시설관리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

- ㉡ 대상: 당직전담사 운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명=000,000원
- 보험료: 000천원×0명=000,000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000원
- 퇴직금: 000천원×0명=000,000원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8 교직원 안전지원시스템 지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 (☎268-1343)

총무과 총무담당 (☎268-1323)

노사협력과 공무원인사담당 (☎268-1213)

근 거

- ㉮ 2025 경남교육 5-3-1 안전하고 씩이 있는 교육공동체 안전망 강화
- ㉮ 경남혁신 교육 3기 공약백서 5-3-나 교육활동 보호와 전념을 위한 교직원 안전시스템 강화
- ㉮ 교원 안심전화번호서비스 이용 대상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 추진(2024년~)

목 적

- ㉮ 교직원 권익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업무용 “안심전화번호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교직원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통한 교육 활동 지원 보호
- ㉮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한 사생활 및 교육지원 활동 침해 방지
- ㉮ 각종 민원 상담 및 악성 민원에 따른 교육지원 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안전망 확보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중 희망자
- ㉮ 내용: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안심전화번호 가입비 지원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편성 기준	산출기초
악성민원 예방 통화연결음 ARS 서비스	교당 36	3천원×12개월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교직원 1인당 52.8	4.4천원×12개월×인원수
학교전화녹음 서비스	교당 120	10천원×0회선×12개월
학교공용폰 개통	대당 396	33천원×12개월×필요대수

※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가입비 편성 기준은 서비스 이용 요금에 한정하며, 개별 통화료는 포함하지 않음

※ 공용폰의 경우 교당 필요 대수 개별 개통, 통신사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음

※ 학교별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 편성

9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신규]

총무과 인사담당 (☎268-1356)

근거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제3호
- ㉮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 총무과-1901(2024. 1. 23., “[알림]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지원 계획 알림”)

목적

-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학습(교육훈련경비) 지원
- ㉮ 지방공무원 학습기회 확대 부여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기여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1인당 연수비(250천원) 지원
 - ※ 연도 중 재직자(1개월 이상)에 대하여 전액 지원 가능하되, 재직기간 중 사용 내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휴직·퇴직준비교육 파견 기간 등 제외)
- ㉮ 산출기초
 -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250천원×00명=000천원

10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210-5186)

근거

-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및 같은 법 제8조(경비부담 등)

목적

- ☞ 학교 자체 급식 기계기구 교체·확충 계획 수립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급식 기계기구 적기 구입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급식 운영 도모
- ☞ 노후화된 급식 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 지원으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급식 기계기구 교체·확충비 지원(주요 급식 기계기구 품목¹⁾ 제외)
※ 학교급식실 현대화 및 증개축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목적사업비로 지원(기존 동일)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공립유(단설·병설유)		초등학교		중학교(각종)		고등학교(각종)		특수		비고
	학급수	금액	학급수	금액	학급수	금액	학급수	금액	학급수	금액	
1	1~3	500	1~6	1,400	1~4	1,610	1~4	1,610	1~16	1,610	
2	4~5	1,400	7~12	1,540	5~9	1,771	5~11	1,771	17~27	1,771	
3	6~11	1,540	13~16	1,694	10~14	1,948	12~15	1,948	28~	1,948	
4	12~	1,694	17~21	1,863	15~18	2,142	16~20	2,142			
5			22~28	2,049	19~23	2,356	21~26	2,356			
6			29~36	2,253	24~31	2,591	27~30	2,591			
7			37~43	2,478	32~36	2,850	31~33	2,850			
8			44~57	2,725	37~	3,135	34~	3,135			
9			58~	2,997							

㉔ 산출기초

- 기계기구구입: 000천원×0개(대)=000천원

※ ¹⁾ [표] 주요 급식 기계기구 품목(목적사업비로 지원)

구분	품목	비고	구분	품목	비고
1	밥솥	가스,전기	6	식판	
2	국솥(튀김솥, 볶음솥)	가스,전기	7	살균수제조장치	
3	식기세척기류(애벌세척기 등)	가스,전기	8	식탁,의자	
4	오븐	전기	9	음수기	
5	전기레인지, 부침기	전기	10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주요 급식 기계기구 품목은 급식종사자 건강보호 및 노동력 절감, 급식 위생·안전을 위한 현대적 자동화 급식기구 교체·확충 시 추가, 변경 가능

11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210-5276)

㉔ 근 거

- 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㉔ 2025 경남교육 3-2-3 학교폭력 예방 및 맞춤형 지원 강화

㉔ 목 적

- 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내 순찰활동, 등·하교지도, 외부인출입통제 등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㉔ 사업내용

- ㉔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㉔ 편성기준: 교당 8,800천원
- ㉔ 산출기초
 - 봉사자활동비: 000천원×0일=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 ※ 최대한 봉사자활동비로 예산편성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3-4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지원
- ㉮ 2025 경남교육 5-2-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및 교육청 업무 방식 개선

목 적

- ㉮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 모든 교원이 참여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자치역량 강화
- ㉮ 새 학년 맞이 주간에 참여한 신규임용예정교원에게 정당한 보수 지급

사업내용

★새 학년 맞이 교육과정 함께 세움 주간이란?

3월 교육집중을 위해 2월에 실시하는 학교·학년 교육과정 수립 기간을 의미함.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이 주간은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함께 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가 가능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교 교육공동체의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함.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지급대상: 새 학년 맞이 주간에 참여한 3. 1.자 신규임용 예정 교원(기간제포함)
※ 단, 2월 실시한 새 학년 맞이 기간 중 다른 학교 및 기관에 소속이 없는 사람
- ㉮ 편성기준: 110천원×0명×3일

학교급	학급수별 인원			
유치원	8학급 이하	9학급 이상		
	1명	2명		
초등학교	5학급 이하	6~24학급	25~43학급	44학급 이상
	1명	2명	3명	4명
중학교(각종)	3학급 이하	4~12학급	13~24학급	25학급 이상
	2명	3명	4명	5명
고등학교(각종)	3학급 이하	4~24학급	25학급 이상	
	2명	3명	5명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25학급 이상		
	4명	7명		

유아특수교육과 유아장학 · 인사담당 (☎268-1147)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268-1188)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268-1114)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268-1163)

§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1-2 배움 · 성장 · 나눔이 있는 배움중심수업
- ㉡ 2025 경남교육 1-3-4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지원

§ 목 적

- ㉡ 수업혁신 위한 학교 안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교원의 자발적 수업 전문성 강화
- ㉡ 배움 중심의 미래형 수업 실천 및 수업나눔, 연구문화 조성 위해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교원
- ㉡ 내용: 미래형 수업 확산 및 교실수업 개선에 필요한 학교 안 공동연구와 수업나눔을 위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비 지원
- ㉡ 사용항목: 수업혁신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도서구입, 강사료(원고료), 수업나눔 협의회에 따른 식사비 및 간식비 등
- ㉡ 편성기준: 교원 1인당 40천원(2024년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14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정책기획관 학교회계담당 (☎268-1294)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 2020.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목 적

-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졸업앨범비 지원
- ㉮ 산출기초: 졸업앨범제작 000천원 × 0명
※ 위 대상은 의무 편성·지원, 그 외 생계곤란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지원

15 특수교육활동비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268-1186)

근 거

- ㉮ 교육기본법 제1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21조

목 적

-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도모

사업내용

- ㉮ 대상: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 산출기초: 학급당 경비+학생당 경비
 - 학급당 경비: 2,000천원
 - 학생당 경비
 - 유치원: 400천원 × 특수학급 입급 학생수=000천원
 - 초등학교: 300천원 × 특수학급 입급 학생수=000천원
 - 중학교: 300천원 × 특수학급 입급 학생수=000천원
 - 고등학교: 250천원 × 특수학급 입급 학생수=000천원
 - 순회학급, 파견학급: 급당 2,000천원(학생당 경비 미편성)
 - 병원학급: 급당 3,000천원(학생당 경비 미편성)

📖 근거

-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자료(교육부 2013. 7. 23.)

📖 목적

- ㉮ 또래활동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우관계 개선을 통한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선도

📖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편성기준

구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비고
교당	220천원	학교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 ㉮ 산출기초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종=000천원
- 간식구입: 000천원×0명=000천원

근 거

-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제6조 및 제10조

목 적

-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확보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 ㉡ 대상: 학교도서관이 있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 학교기본운영비(교당·급당·학생당 경비)의 4% 이상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하고, 학교 기본운영비(교당·급당·학생당 경비)의 1.5% 이상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편성 권장
 - ※ 단, 자료구입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3%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 전교생 30인 이하 학교는 3% 이상 자료구입비 편성 권장
 - ※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구입(자료구입비의 5%)으로 인문소양교육 지원
 - ※ 중·고등학교 학생당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한 기준 적용
 - ※ 책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도서 활용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지원(학교도서관 운영비의 25%)으로 독서활동 지원
- ㉡ 산출기초
 -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000천원×0권=000천원
 - (도서관운영) 마크용역비 000천원×0권=000천원
 - (도서관운영) 비품구입비 000천원×0종=000천원
 - (독서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 기후환경교육담당 (☎278-1643)

근 거

-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
- ㉠ 2025 경남교육 4-3-1 학교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목 적

-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 실현
- ㉠ 단위학교 중심의 탄소중립교육 및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을 통한 지구생태시민 육성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 학교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실시
 - 생태전환교육 체험활동, 캠페인, 홍보 활동 및 행사 운영 등
 - 생태전환교육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운영
 -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실습 및 지역사회·외부기관 연계 활동

편성기준

(단위: 천원)

학생수	100명 이하	101~300명	301~500명	501~700명	701~900명	901~1,100명	1,101명 이상
금액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근 거

-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및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제11조
- ㉠ 2025 경남교육 1-2-1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강화
- ㉠ 창의인재과-679(2024. 1. 10., “2024년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목 적

- ㉠ 학교별 독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을 통한 자율적 독서 문화 확산
- ㉠ 학생 중심의 자발적 독서동아리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는 권장)
- ㉠ 내용: 학생 독서동아리(필수), 학부모 독서동아리(권장) 운영
- ㉠ 편성기준: 교당 1,000천원 이상

근 거

-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제11조
-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2401(2024. 8. 16.,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 민주시민교육과-2862(2024. 2. 23., “2024.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

목 적

- ㉡ 학생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동기 형성 및 안정적 학습 참여
- ㉡ 학교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자살예방,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발달 조력
- ㉡ 상담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 능력 향상으로 단위학교 학교상담 운영 내실화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등학교
- ㉡ 내용: 교우관계 형성, 학생자살예방, 심리·정서 안정,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학급·소집단 단위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학생 마음건강 교육이라는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활용하되, 일회성 행사(체험 등)나 흥미 위주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단순물품 구입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 학교 교육활동으로 계획한 학생 상담교육용으로만 사용)

편성기준

구분	초·중·고	비고
교당	1,000천원	학교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시간=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 ○○프로그램운영: 000천원×0시간=000천원

※ 2024학년도 ‘학생 심리·정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명 변경

기후환경교육추진단 기후환경교육담당 (☎278-1642)

근 거

- 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②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학습,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지원 계획

목 적

- ㉔ 강, 바다, 숲, 습지 등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자연체험을 통한 생태교육 실시
- ㉔ 체험중심 환경교육 활성화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

사업내용

- ㉔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㉔ 내용: 과학, 사회 교과 내용 등과 연계한 환경체험 현장학습 실시
- ㉔ 편성기준: 체험학습비 15천원× '25학년도 3학년 학생 수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268-1076)

근 거

- 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012(2020. 7. 27., “청년과제 공정과제 제도개선(4)-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제도개선 권고”)

목 적

- ㉔ 전문적 검사를 통한 규정된 품질 확보 및 교복업체의 도덕적 해이 사전 차단
- ㉔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제고

사업내용

- ㉔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중·고·특수·각종학교
- ㉔ 편성기준: 교당 300천원
- ㉔ 산출기초
 - 시료구입비: 000천원×0개=000천원
 - 품질검사비: 000천원×0회=000천원

 근 거

- ㉠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 ㉠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4조, 제11조
- ㉠ 2025 경남교육 1-2-2 맞춤형 진로진학체제 운영

 목 적

- ㉠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색을 갖춘 진로체험 활성화
- ㉠ 학생 수요 맞춤형 진로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 강화로 공교육 신뢰 회복

 사업내용

- ㉠ 대상: 중·고등학교
- ㉠ 편성기준
 - 학생당 경비(중학교): 10천원×전교 학생수=000천원
 - 학생당 경비(고등학교): 5천원×전교 학생수=000천원

근거

- 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 ㉔ 2025 경남교육 1-1-1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목적

- ㉔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통한 1학년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 ㉔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

사업내용

- ㉔ 내용: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 ㉔ 대상: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전 중학교) 193교
- ㉔ 편성기준: 공통경비와 추가경비(학급수, 학생수 반영)를 합산한 금액으로 편성
 - ※ 학급수 및 학생수 기준: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배치 계획에 따름
 - 공통경비

(단위: 천원)

연번	학생수	금액	연번	학생수	금액
1	1 ~ 10명	1,000	5	201 ~ 300명	2,324
2	11 ~ 22명	1,100	6	301 ~ 392명	2,640
3	23 ~ 100명	1,360	7	393명 이상	2,800
4	101 ~ 200명	1,760			

- 학급수에 따른 추가경비: 380천원×학급수
- 학생수에 따른 추가경비: 69천원×학생수

산출기초

- 진로탐색활동비: 000천원×0명=000천원
- 행사용품 구입: 000천원×0명=000천원
- 강사비: 000천원×0시간×0명=000천원
- 연수 및 홍보비: 000천원×0시간=000천원
- 교재·교구 개발구입: 000천원×0시간=000천원
- 협의회비: 000천원×0회=000천원

25 자유학기제 운영(특수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268-1187)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목 적

- ㉮ 장애학생의 특기·적성 개발 및 학생참여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특수학교(9교, 35학급)
- ㉮ 편성기준 : 자유학기 운영 학급 수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 1학급 운영비 6,400천원, 초과 1학급당 800천원 추가 지급

연번	학교명	교육과정	운영학년	비고
1	창원천광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5학급
2	경남혜림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4학급
3	진주혜광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5학급
4	통영잠포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3학급
5	김해은혜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5학급
6	양산희망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8학급
7	의령은광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1학급
8	거창나래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2학급
9	밀양아리솔학교	기본교육과정	1학년	2학급
합계				35학급

26

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 [권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 (☎268-1343)

근 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 적

-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증대 및 개선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의무 실시(자체 교육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가능)
- ㉮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회=000천원

27

새 학년맞이 교실 청소비 [권장]

체울예술건강과 보건담당 (☎268-1088)

근 거

- ㉮ 2025 경남교육 3-1-1 학생 건강권 강화

목 적

- ㉮ 학교시설 청결 유지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새학년맞이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간 1회 교실 청소를 하도록 예산 편성 권장
- ㉮ 산출기초
 - 청소용역비: 000천원×0회=000천원

 근 거

-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목 적

- ㉿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 및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
- ㉿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 편성기준: 학교별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강사 및 강의 횟수에 따라 자율 편성
- ㉿ 산출기준
 -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 기후환경교육담당 (☎278-1645)

근 거

- ㉮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및 시행규칙 제5조
- ㉮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 대기오염매뉴얼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방법

목 적

- ㉮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청결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필터 청소 및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편성
 - ※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공기청정필터(키트) 부착형 천장형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기계식 환기 설비(공기순환기)

사업내용

- ㉮ 대상: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단, 교육지원청에서 계약 하여 임대 설치한 학교 제외)
 - 공기청정필터(키트) 부착형 천장형 냉난방기 및 학교 자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학교
 - 기계식 환기설비(공기순환기) 설치 학교: 신·이설학교, 2018년 미세먼지 대책 시범 사업 대상 학교, 민감군 학교 보호 장소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한 학교, 2022~2024년 미세먼지 대책 시범학교
- ㉮ 산출기초: 학교당 실소요액 편성

공기정화장치 유형	예산 편성 내역	유지관리 비용
공기청정필터(키트) 부착형 천장형 냉난방기	필터(키트) 청소비×2회×설치대수	1회 35천원 편성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실소요액×2회×설치대수	제품별 실소요액
기계식 환기설비	점검 및 필터교체 실소요액×2회×설치대수	제품별 실소요액

※ 청소 및 교체 횟수는 연 2회를 기본으로 함

※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비용은 제품별 기능성 및 권장 교체주기 등에 따라 차이 있음

※ 필터교체 주기 확인 후 공기정화장치 가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참고)

※ 공기정화장치 정기 점검 실시: 매월 1회(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참고)

 근 거

- ㉔ 평생교육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0조

 목 적

- ㉔ 지역 및 학교별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타 평생학습 기관과 차별화된 학교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특화·운영
- ㉔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사업내용

- ㉔ 대상: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 학교
- ㉔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28조
- ㉮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목적

- ㉮ 교육활동 중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교직원의 긴급 치료 지원
-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원, 특수교육실무원 등 교육활동 지원 업무 보호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직원(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포함)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업무 중 발생한 경미한 신체적 부상에 대한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 부상 발생 즉시 일시, 장소, 경위 부상 정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발급받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증빙

구분	설명
교육활동 지원 업무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경미한 신체적 부상	재해보상급여 및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2주 이하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상
진료비	병원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한정
기타	안경 파손 등 개인 재산에 대한 지원 불가

※ 사고경위서는 학교자체 서식을 활용하며, 학교의 별도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공무상 재해 인정 시에는 중복 지원 제외

산출기초

- 특수교육활동 긴급 치료비 지원 000천원 × 0회(명) = 000천원

유아특수교육과 유아장학 · 인사담당 (☎268-1142)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268-1112)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268-1165)

근 거

- ㉮ 2025 경남교육 3-3-2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자치활성화

목 적

- ㉮ 학급별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민주적 학급 운영 지원
- ㉮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학급 교육활동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내용: 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급당 33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 산출기초: 학급교육활동비 000천원×0학급=000천원

※ 유의사항

- 교사에게 현금 지급 후 사용 시 교원 명의 현금 영수증이나 개인카드 사용 금지
- 아래의 집행 권장·금지 항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

집행 권장 항목 (예시)		집행 불가 항목
<학생 생활교육> · 학생·학부모 상담, 가정방문, 병문안 시 다과·음료 구입 · 학급규칙에 따른 보상물품(칭찬 도장, 스티커 등) 구입 <자료 발간> · 학급 신문·문집 발간 및 앨범용 CD 등 제작비	<학급 행사> · 학급 생일 선물구입비 및 간식비 · 사제동행 행사비(문화체육예술행사 관람·체험비 및 식사·간식비 등) · 학급 학예회 시 소품구입 및 의상대여 등 · 학급 단합·체육대회 시 미니현수막, 간식, 학생용 단체의류·모자·깃발 등 구입	· 자산취득(준 영구적인 물품, 기자재 등) · 학습준비물 구입(학습 준비물구입비 및 교과별 예산 등으로 집행해야 함)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학급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승인 거쳐 집행 가능**)

※ 집행방법

【방법 A】 기존, 지출품의(지출 내역 구체적 포함) 후 행정실 집행(학교카드 사용+ 정산 불필요) 【방법 B】 개산금, 지출품의(구체적 지출 내역없이 총금액 품의) + 임시출납원 임명 + 사후 정산 ① 현금 사용 시 담임교사에게 현금(계좌이체) 지급 후 집행 완료 후 정산 ② 학교 카드 사용 시 집행 완료 후 정산. 단, 카드 영수증은 즉시 제출(행정실 협의) ※ [방법 A,B] 모두 가능, 업무경감을 위해 학년 단위나 전체 학년을 한 건으로 일괄 품의 가능	집행방법(개산금) 관련 문의처 : 단위학교 행정실
---	-----------------------------------

33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 [권장]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268-1413)

근 거

- ㉔ 2025 경남교육 2-2-2 소통·교류·참여로 글로벌 역량 강화

목 적

- ㉔ 실용중심 영어교육 활성화로 학생 및 교사 외국어역량 강화 지원

사업내용

- ㉔ 대상: 초·중·고등학교
- ㉔ 내용: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사고력과 읽기 능력 신장을 돕는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 ㉔ 편성기준: 교당 1,000천원
- ㉔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명= 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34 학생 역사 동아리 운영 [권장]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268-1113)

근 거

- ㉔ 2025 경남교육 4-3-3 지속가능한 삶을 준비하는 역사·통일교육

목 적

- ㉔ 역사교육을 통한 나라사랑에 대한 공감대 확산
- ㉔ 실천적 교육을 통한 나라사랑교육 교육력 제고
- ㉔ 학생의 자발적 동아리 활동 운영으로 나라사랑 내면화

사업내용

- ㉔ 대상: 초·중·고등학교
- ㉔ 내용: 학생 역사 동아리 운영경비
- ㉔ 산출기초
 - 학생 역사 동아리 운영비 000천원×0회=000천원

3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권장]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268-1116)

근 거

- ㉮ 2025 경남교육 2-1-3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목 적

- ㉮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실 수업 개선 도모
-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내용

- ㉮ 대상: 초등학교
- ㉮ 산출기초
 - 학습준비물구입비: 50천원×1학년 학생수=000천원
 - 학습준비물구입비: 35천원×2~6학년 학생수=000천원

36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준비물 지원 [권장]

중등교육과 교육과정담당 (☎268-1409)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1-1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목 적

- ㉮ 학생 동아리·자율동아리 활동 준비물 지원으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중·고등학교
- ㉮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단위학교 내 학생 동아리, 소규모 학생 자율동아리, 스포츠클럽,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단위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
 - 학생 동아리 활동 성과 발표를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2025년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및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권장
- ㉮ 편성기준: 동아리당 기본 경비(200천원), 동아리 학생당 경비(5천원)
- ㉮ 산출기초
 - 동아리 활동 준비물 구입비 000천원×0종=000천원

VI

통합사업운영비 설명서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

1 특색교육과정 운영

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담당 (☎278-1673)

근 거

- ㉮ 2025 경남교육 5-1-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목 적

- ㉮ 교육공동체 간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 ㉮ 단위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자치 강화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편성기준: 학교 규모(학생수)에 따른 예산 지원
- ㉮ 산출기초

(단위: 천원)

유치원	원아수	10명 이하	11~40명	41~100명	101~200명	200명 초과
	지원액	500	800	1,600	2,500	3,000
학교	학생수	300명 이하	301~600명	601~1,000명	1,000명 초과	
	지원액	3,000	4,000	6,000	8,000	

※ (사업의 의의)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 규모(학생 수)별로 차등 예산을 통합사업 운영비로 총액배분하고, 학교는 교부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남교육 정책사업 또는 학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 평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함.

- 2024학년도 '학교단위 자율교육과정 운영'에서 사업명 변경

※ (학교별 사업의 구분)

- 유치원: 유아놀이 중심의 특색과제를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선정·운영
- 학교: 경남 교육정책의 범위 내에서 특색영역(과제)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운영
 - ▶ 정책기획관에서 안내(권장)하는 경남 교육정책사업 목록에서 선정·운영 가능함

2 학교급식 운영비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210-5187)

근거

-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같은 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목적

- ☞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교급식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분교 포함)
- ☞ 편성기준
 - 운영비

구분	산출기초	비고
공립유·초등학교	350원×190일×학생 수	도시가스(LNG) 이외의 연료 사용학교 50원 추가 지원
특수학교	350원×200일×학생 수	
중·고등학교	370원×190일×학생 수	

- 급식운반비(13교)
 - 비조리교: 15천원×190일=2,850천원
 - 도선비: 70천원×10월=700천원

근 거

-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5차 개정, 교육부, 2021. 1.)
- ㉡ 교육복지과-1622(2017. 2. 13., “2017학년도 경남급식 개선 종합대책 알림”)

목 적

-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제 도입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 사고 예방 및 학생 건강 증진 도모
- ㉡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사업내용

- ㉡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분교 포함)
- ㉡ 내용: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운영비(임대료) 지원
 - * 최초 설치 후 5년 지원(지원종료 학교는 자체예산 편성)
 - ** 일몰제 사업으로 2025년 6월 지원사업 만료 예정
- ㉡ 편성기준: 교당 1,000천원
- ㉡ 산출기초
 - 위생관리자동화시스템운영: 000천원×0월=000천원

4 수목관리

재정과 자산관리담당 (☎268-1482)

근거

- 재정과-5517(2024. 2. 28., “수목 관리 추진 계획”)

목적

-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2021. 4. 1. 일부 개정)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내 수목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폐교를 포함한 도내 학교의 보호수 등 주요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와 체계적인 지원 도모

사업내용

- 대상: 주요 수목 관리 학교 13교
- 편성기준: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한 수목관리 현장자문단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예산 지원
(단위: 천원)

학교명	편성금액	학교명	편성금액
김해활천초등학교	1,034	용연초등학교	3,465
밀성초등학교	3,500	생림중학교	1,034
밀양초등학교	3,500	김해여자고등학교	1,034
예림초등학교	3,500	밀양고등학교	3,500
물금초등학교	3,451	밀양아리솔학교	3,500
소토초등학교	3,276	양산희망학교	3,500
밀양영화고등학교	2,800		

산출기초

- 수목진단비: 000천원×0주=000천원
- 수목병해충방제: 000천원×0주=000천원
- 수목치료비: 000천원×0주=000천원

5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신규]

유아특수교육과 유아장학·인사담당 (☎268-1145)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268-1114)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268-1163)

근 거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목 적

- ㉮ 교사 본연의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
- ㉮ 수석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 관련 자료 공유 등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수업 전문성 향상

사업내용

-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수석교사
- ㉮ 내용: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인당 매월 400천원 지원
- ㉮ 산출기초
 - 연구활동비: 400천원×12개월

6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지원

유아특수교육과 유아장학 · 인사담당 (☎268-1148)

근거

- ☞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목적

- ☞ 유치원의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돌봄) 지원을 통하여 방과후 과정(돌봄)의 질적 서비스 개선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 단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배분으로 자율성 · 책무성 · 효율성 제고
- ☞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학 중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사업내용

- ☞ 내용: 방과후 과정(돌봄) 및 방학 중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방학 중 중식비, 놀이 · 체험 (특성화활동), 보조 인력 활용 등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학급	지원액	학급	지원액	학급	지원액
1학급	18,400	6학급	67,200	11학급	110,000
2학급	26,960	7학급	75,760	12학급	118,560
3학급	35,520	8학급	84,320	13학급	127,120
4학급	44,080	9학급	92,880	14학급	135,680
5학급	58,640	10학급	101,440	15학급 이상	144,240

※ 방학중 중식비 별도 편성(유아 1인당 200천원)

산출기초

- 운영비: 000천원×0회=000천원
- 체험활동비: 000천원×00명×0회=000천원
- 특성화활동: 000천원×0개×0월×0회=000천원
- 간식비: 000천원×0명×0일=000천원
- 아침 · 저녁 돌봄교실 운영 수당: 000천원×00일×0시간=000천원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중식비: 000천원×0일×00명=000천원
- 방학 중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수당: 000천원×00일×0시간=000천원 등

7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268-1164)

근 거

- ☎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목 적

- ☎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시키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
- ☎ 모교에 대한 자긍심 함양 및 학교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소통

사업내용

- ☎ 대상: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 ☎ 산출기초
 -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 발간: 000천원×0권=000천원
 - 기념식, 및 전시회 등: 000천원×0식=000천원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000천원×0식=000천원

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체육예술건강 체육교육담당 (☎268-1075)

근거

- ⑤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⑤ 2024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24. 3)

목적

- ⑤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평생체육 기틀 마련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⑤ 학생 주도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 분위기 형성
- ⑤ 학교스포츠클럽 의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통합사업운영비)
- ⑤ 학생 주도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사업내용

- ⑤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분교 포함)
- ⑤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학생수	100명 이하	101~300명	301~500명	501~700명	701~900명	901~1,100명	1,101명 이상
	금액	700	1,400	2,100	2,800	3,500	4,200	4,900

9 수학여행비 지원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268-1078)

근거

- 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⑤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목적

- ⑤ 교육소외 계층 없는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로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
- ⑤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

사업내용

- ⑤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분교 포함)
- ⑤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초·중·각종학교(중)	고·특수·각종학교(고)
학생당 금액	200	300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편성·지원 가능

산출기초

- 초등학교: 200천원×6학년 학생 수=000천원
- 중·각종학교(중): 200천원×2학년 학생 수=000천원
- 고등·각종학교(고): 300천원×2학년 학생 수=000천원
- 특수학교: 300천원×(초등학교 6학년 과정 학생 수+중·고등학교 2학년 과정 학생 수)=000천원

근 거

-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및 제15조(경비의 지원 보조)
-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목 적

- ㉮ 교육소의 계층 없는 실질적인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로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 ㉮ 학교 체육교과 활동에 필요한 체육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분교 포함)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각종학교(중)	고등·특수·각종학교(고)
학생당 금액	50	70	80

산출기초

- 초등학교: 50천원×1학년 학생 수=000천원
- 중·각종학교(중): 70천원×1학년 학생 수=000천원
- 고등·특수·각종학교(고): 80천원×1학년 학생 수=000천원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268-1187)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268-1112)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268-1166)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3-4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지원

 목 적

- ㉠ 예비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실습 기회 제공으로 수업 능력 향상 및 교직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1.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초등학교)

▶ 대상: 초등학교(12교)

▶ 내용

- 실무실습 프로그램 운영(교대 4학년 학생, 5월 2주간)
- 수업실습 I 프로그램 운영(교대 3학년 학생, 6월 2주간)
- 수업실습 II 프로그램 운영(교대 3학년 학생, 10월 3주간)
- 참관실습 프로그램 운영(교대 2학년 학생, 11월 2주간)

▶ 편성기준: 교당 10,000천원

▶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원고료: 000천원×0매=000천원
- 자료제작: 000천원×0회=000천원
- 학습자료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2.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중·고등학교)

▶ 대상: 중·고등학교(64교)

▶ 내용

- 예비 교사인 교육실습생 지도와 연계해 다양한 교과, 학년, 수업유형을 참관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까지 단계적 설계하여 학생참여형 수업을 실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도
- 실무실습 시 교직실무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직 경험 수행하고 공교육 책무성 높을 수 있도록 설계·운영

▶ 편성기준

- 교육실습생 1인당 200천원/ 2025년 교육실습생 배치에 따라 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교육실습생 지도 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학습자료 및 도서 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 강사료: 000천원×0명=000천원
- 식비: 000천원×0회=000천원

3.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특수학교)

▶ 대상: 특수학교(4교)

▶ 내용: 특수교육 수업 및 실무실습 프로그램 운영(4주)

▶ 편성기준: 교육실습생 10명 미만 학교(1,500천원), 10~15명 이하 학교(2,000천원), 15명 초과 학교(2,500천원)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순	설립별	학교명	실습생 수	금액
1	공립	창원천광학교	11	2,000
2	공립	경남혜림학교	14	2,000
3	공립	김해은혜학교	21	2,500
4	공립	의령은광학교	8	1,500
합계			54	8,000

㉔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원고료: 000천원×0매=000천원
- 자료제작: 000천원×0회=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근 거

- ㉮ 2025 경남교육 4-3-1 학교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목 적

- ㉮ 생태친화적 탄소중립 학교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2022~2024년 생태환경미래학교 조성교 및 2024년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교
- ㉮ 내용
 - 생태환경미래학교 및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후 3년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생태환경미래학교 및 운동장 생태공원 교육과정 운영
 - 생태공원 지속적 관리·개선
 - 편성예산의 60% 이상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권장
- ㉮ 편성기준: 교당 5,000천원
- ㉮ 산출기초
 - 프로그램운영: 000천원×0회=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근 거

- ㉠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 경남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2023. 9. 22.)
- ㉠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2024. 2. 28.)

 목 적

- ㉠ 수업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맞춤형 지원
- ㉠ 학교 차원의 수업 방해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 내용: 수업방해행동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 ㉠ 산출기초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500천원×0회=000천원
 - (지속적인 학생문제행동 상담 및 행동 치료 지원비) 100천원×0회=000천원

💡 근거

- ㉮ 2025 경남교육 5-1-2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 목적

- ㉮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취약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실질적 교육평등 실현

💡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각종학교(분교 포함)
 - 전체 학생 중 교육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 ※ 교육취약계층: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 지원 제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 ㉮ 교당 최대 지원액: 25,500천원
- ㉮ 지원기준
 - 학생당 경비×교육취약계층 학생 수×1.8
 - 초등학교 학생당 경비: 116천원
 - 중학교 학생당 경비 123천원
 - 고등학교 학생당 경비: 일반고 209천원, 특성화고(공업) 267천원, 특성화고(비공업) 213천원 적용

※ **추진사업:**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력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행 가능하나,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액의 50% 이상 취약계층 학생 지원 권장)

- 사업(예시): 학생 심리치료·건강검진 지원, 기초학력지도, 다문화교실 및 대안교실 운영, 인성교육, 또래활동 운영,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도서 및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근 거

- ㉡ 2025 경남교육 2-1-2 경남형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목 적

-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 기회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사업내용

- ㉡ 대상: 농어촌 지역(읍·면지역) 초·중·고·각종학교(분교 포함)
- ㉡ 내용
 -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 지원단가
 - 초등학교: 분교장(3,000천원), 1~6학급(5,000천원), 7학급 이상(7,000천원)
 - 중·고등학교: 분교장(1,000천원), 1~3학급(1,000천원), 4학급 이상(3,000천원), 16학급 이상(5,000천원)
 - ※ 학급 수 산정 시 특수학급 제외
- ㉡ 산출기초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재료비: 000천원×0회=000천원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 ㉡ 2025 경남교육 1-3-4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지원

목 적

-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제고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운영지원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 대상: 초·중·고·각종학교(378교)
- ㉡ 편성기준: 학교별 학생수에 따른 차등 배분

(단위: 천원)

연번	학생수 기준	금액	연번	학생수 기준	금액
1	1 ~ 60명이하	1,050	6	401 ~ 500명이하	4,200
2	61 ~ 100명이하	1,400	7	501 ~ 600명이하	4,900
3	101 ~ 200명이하	2,100	8	601 ~ 700명이하	5,600
4	201 ~ 300명이하	2,800	9	701 ~ 800명이하	6,300
5	301 ~ 400명이하	3,500	10	801명 이상	7,000

17 순회교사제 운영 [신규]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268-1186)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목 적

- ㉡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 기회 확대
- ㉡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 실현

사업내용

- ㉡ 대상: 2025학년도 순회학급 편성 초·고·특수학교

순	지역	급별	학교	학급수	비고
1	남해	초	해양초등학교	1	
2	남해	고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1	
3	창원	특	창원천광학교	5	
4	창원	특	경남혜림학교	4	
5	진주	특	진주혜광학교	3	
6	통영	특	통영잠포학교	2	
7	김해	특	김해은혜학교	5	
8	양산	특	양산희망학교	6	
9	의령	특	의령은광학교	1	
10	거창	특	거창나래학교	1	
11	밀양	특	밀양아리솔학교	1	
합 계				30	

- ㉡ 편성기준: 학급당 3,800천원(1일 활동비 20,000원×190일)

- ㉡ 산출기초

- 순회교사수당 3,800천원×0학급=000천원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목적

- ㉠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 주체적인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
-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내용

- ㉠ 대상: 초·중학교(132교)
- ※ 지원 제외: 학교평등예산제 대상 학교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대상학교	학생수 기준	지원액(교당)
지정학교 (98교)	무관	20,150
공모학교 (34교)	전교생수 700명 이상	12,000
	전교생수 500명 이상 700명 미만	10,800
	전교생수 300명 이상 500명 미만	9,600
	전교생수 200명 이상	8,400
	전교생수 100명 이상	7,200
	전교생수 100명 미만	6,000

산출기초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 강사수당: 000천원×0명×0회=000천원
- 출장여비: 000천원×0회=000천원
- 체험활동비(간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000원×0명×0회=000천원
- 협의회: 000천원×0명×0회=000천원 등

 근 거

- ㉔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목 적

- 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학교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 ㉔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참여·협력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업내용

- ㉔ 대상: 초·중학교
 - 2025년 신규 지정학교(20교)
- ㉔ 편성기준: 교당 21,000천원
- ㉔ 산출기초
 - 교실환경개선(보수): 000천원×0회=000천원
 - 교구·기자재구입(PC, 모니터, 책걸상 등): 000천원×0종=000천원

㉠ 근거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3항

㉠ 목적

- ㉡ 세월호 참사('14.4.16.) 이후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안전체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 학교(유치원 포함) 교육과정 중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로 내실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다양한 체험시설 운영 필요
- ㉡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 함양
- ㉡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교실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 대상: 안전체험교실 설치·운영 초·중학교 12교
- ㉡ 편성기준: 교당 9,000천원
- ㉡ 산출기초
 - 강사수당: 000천원×0명×0회=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 유지보수: 000천원×0회=000천원

 근 거

- ㉡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 경남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2023. 9. 22.)

 목 적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위한 인력 지원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조성
- ㉡ 교육활동 침해 예방으로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초등학교 중 희망교
- ㉡ 내용: 수업방해 행동 학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급(1인 기준 1일 40천원)
- ㉡ 편성기준: 교당 8,000천원
- ㉡ 산출기초
 - 봉사자활동비: 40천원×00일×00개월=0,000천원

근 거

- ☞ 국정과제 84-2 초등전일제 교육 추진

목 적

-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 도모
-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 방과 후 돌봄 활동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사업내용

- ☞ 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분교 포함)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오후돌봄교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방학중돌봄교실
실당	5,600	4,200	1,400

산출기초

- 교재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 간식구입: 000천원×0명×0회=000천원

근 거

- ㉡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 2025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목 적

- ㉡ 지식 위주의 교실내 수업에서 벗어나 배움의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여 관찰, 견학 등 체험중심의 활동 강화
-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앎과 실천의 이음 강화
- ㉡ 교육과정 연계 체험활동 강화로 학생 주도성 및 미래역량 함양

사업내용

- ㉡ 대상: 초등학교(분교 포함) 중 희망학교
- ㉡ 운영규모: 동아리, 학급, 학년, 학교 단위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 운영방법: 학교 상황에 맞게 특색있게 운영
 - 운영 유형별: 교과연계형, 진로연계형, 마을 및 공동교육과정 연계형, 자원인사 활용형
 - 운영 주제별: 안전·건강교육, 경제·금융교육, 역사교육, 생태환경교육, 법교육,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 ㉡ 산출기초
 - 행사물품구입: 000천원×0종=000천원
 - 체험활동경비: 000천원×0명=000천원
 - 차량임차: 000천원×0대=000천원
 - 간식구입: 000천원×0명=000천원

 근 거

- ㉡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목 적

- ㉡ 학업중단 및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사업내용

- ㉡ 대상: 방송통신중학교 2교, 방송통신고등학교 2교
 - 경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진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 마산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 ㉡ 편성기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활동수당 8종, 학습교재구입비, 학교운영비, 행정보조원 인건비 등 학급 수 기준으로 지원
- ㉡ 산출기초
 - 교육활동수당: 000천원×0월=000천원
 - 행정업무지원수당: 000천원×0월=000천원
 - 강의수당: 000천원×0시간×0학급=000천원
 - 채점수당: 000천원×0과목×0학급=000천원
 - 학생지도수당: 000천원×0월×0학급=000천원
 - 학습교재구입: 000천원×0종=000천원
 - 인건비: 000천원×0시간=000천원

근 거

-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850(2024. 2. 28., “2024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계획 안내”)
-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4526(2024. 5. 22., “2025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교과교실) 대상교 선정 지원 계획 안내”)

목 적

- ㉮ 창의적 교실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을 통해 공교육 만족도 제고
-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점제형 공간혁신을 통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 및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실 수업 혁신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 중고등학교 65교
- ㉮ 편성기준: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로 운영되고 있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2024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도입학교가 2025년 운영학교로 전환된 고등학교 지원
- ㉮ 산출기초
 - 강사비: 0강좌, 00천원×0시간=000천원
 - 기타 운영비
 - 수업 자료 구입비: 0강좌, 000천원×0회×0명=000천원
 - 운영물품 구입비: 0강좌, 000천원×0회×0명=000천원
 - 자료 인쇄비: 0강좌, 000천원×0회×0명=000천원
 - 프로그램 구입비: 000천원×0회×0명=000천원
 - 정보화기기 보수비: 000천원×0회×0명=000천원
 - 도서 구입비: 000천원×0회×0명=000천원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 ㉡ 2025 경남교육 1-1-1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목 적

-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
- ㉡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 지원
- ㉡ 자유학기제 연계 확산으로 공교육 전반의 교실 변화 유도
- ㉡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자유학년제 공동교육과정 지원
- ㉡ 자유학기 활동 공동 강사 지원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교육 강화

사업내용

1. 진로연계교육 운영교 지원

▶ 대상: 중·고등학교 169교

▶ 편성기준

- 희망학교 예산 수요조사 반영 및 학생수, 프로그램 운영 등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최소 1,820천원 ~ 최대 7,000천원

▶ 산출기초

- 체험활동비: 000천원×0명=000천원
- 행사용품 구입: 000천원×0명=000천원
- 식비 및 간식비 000천원×0명×0회=000천원
- 강사비: 000천원×0시간×0명=000천원
- 교재·교구 개발구입: 000천원×0시간=000천원
- 임차료: 000천원×0대×0회=000천원
- 협의회비: 000천원×0시간=000천원

2. 자유학기-연계학기 운영교 지원

▶ 대상: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중학교 2교

▶ 편성기준

- 기본 운영비: 교당 840천원
- 학급수 반영: 급당 280천원
- 학생수 반영: 1명~30명 350천원, 31명~60명 560천원, 61명~ 700천원

▶ 산출기초

- 체험활동비: 000천원×0명=000천원
- 행사용품 구입: 000천원×0명=000천원
- 강사비: 000천원×0시간×0명=000천원
- 교재·교구 개발구입: 000,000원×0시간=000천원
- 협의회비: 000천원×0시간=000천원

3. 소규모 자유학기제 공동교육과정 운영교 지원

▶ 대상: 농어촌 소규모 거점 중학교 2교

▶ 편성기준

- 기본 운영비: 교당 1,260천원
- 학급수 반영: 급당 420천원
- 학생수 반영: 1명~20명 1,050천원, 21명~40명 1,750천원, 41명~65명 2,310천원

▶ 산출기초

- 체험활동비: 000천원×0명=000천원
- 행사용품 구입: 000천원×0명=000천원
- 강사비: 000천원×0시간×0명=000천원
- 교재·교구 개발구입: 000천원×0시간=000천원
- 협의회비: 000천원×0시간=000천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담당 (☎268-1398)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268-1199)

 근거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목적

- ㉮ 우수한 학생 유치를 통한 농수산 관련 후계자 육성
- ㉮ 농수산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 ㉮ 특성화고 학생 복지 교육 실현
- ㉮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숙식 편의 제공

 사업내용

1.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 대상: 경남자영고, 경남해양과학고, 진주기계공업고, 거제여자상업고, 창녕슈퍼텍고

▶ 산출기초

- 공공요금: 000천원×0회=000천원
- 시설관리: 000천원×0식=000천원
- 기숙생 복리 증진: 000천원×0식=000천원
- 일반관리: 000천원×0식=000천원

2.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대상: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의령은광학교, 진주해광학교 2개교)

▶ 편성기준: 학교경비와 학생경비를 구분하여 지급

- 학교경비: 기숙사 운영에 따른 경직성 경비(전기, 수도 등) 일괄 지원(1교당 2,800천원)
- 학생경비: 기숙사 이용 학생 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1인당 105천원)

▶ 산출기초

- 시설물유지보수: 000천원×0종=000천원
- 시설관리용품: 000천원×0개=000천원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1-1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목 적

- ㉠ 특정 교과 분야 중심의 교육과정 학교 운영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 학생 선택형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사업내용

▶ 대상 및 편성기준

-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및 운영 중인 일반고(공립고 15교)
 - 계속 운영 학교: 학교별 연간 15,750천원 지원
 - 2024년 지정 종료 학교: 15,750천원의 70% 지원(2, 3학년만 운영 중인 학교)
 - 2023년 지정 종료 학교: 15,750천원의 50% 지원(3학년만 운영 중인 학교)
- 위탁형 예술중점학교 운영 공립고(창원예술학교)
 - 예술교육 수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생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편성액: 31,500천원

▶ 산출기초

- 중점 교과의 날 운영: 000천원
 - 특강 강사: 000천원×0개 교과×0회=000천원
 - 운영물품 구입: 000천원×00개 교과×0회=000천원
- 심화동아리 운영비: 000천원
 - 특강 강사비: 000천원×0개 동아리=000천원
 - 동아리 물품 구입: 000천원×00개 동아리×0회=000천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000천원
 - 운영물품 및 비품구입: 000천원×00개 강좌×0회=000천원
 - 관련 도서 구입: 000천원×00권×0개 강좌×0회=000천원
- 협의회비: 000천원×00명×0회=000천원

 근 거

- ㉠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활성화 조례

 목 적

- ㉠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 ㉠ 대상: 고등학교(3·15의거 참여자 소속 7교)
- ㉠ 산출기초
 - 역사동아리 운영물품 구입: 000천원×00명=000천원
 - 기념식 및 프로그램 운영: 000천원×00명×0회=000천원

진로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268-1413)

진로교육과 직업교육담당 (☎268-1396)

창의인재과 융합교육담당 (☎210-5135)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268-1077)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 ㉮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
- ㉮ 2025 경남교육 1-2-3 직업계고 현장 맞춤형 역량 강화
- ㉮ 2025 경남교육 2-2-2 소통·교류·참여로 글로벌 역량 강화
-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972(2008. 7. 10.,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기본계획”)

목 적

- ㉮ 실용중심 영어교육활성화로 학생 및 교사 외국어역량 강화지원
-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졸업 후 선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선도모델 육성
- ㉮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과학 인재 육성, 과학 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 ㉮ 경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량이 우수한 선수 육성으로, 전국대회 참가하여 입상함으로써 경상남도 체육의 발전을 선도

사업내용

1. 외국어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 대상: 김해외국어고등학교

▶ 내용: 급식소 운영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 교과활동비, 동아리활동비, 국제교육운영비, 교육활동 홍보 및 신입생 유치활동비, 교육환경개선(기숙사 정독실 정비 및 위생관리 등),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 산출기초

- 공공요금: 0,000천원×00월=0,000천원
- 시설관리: 0,000천원×00월=0,000천원
- 기숙사 일반운영비: 0,000천원×00월=0,000천원
- 교과활동운영비: 0,000천원×00월=0,000천원 등

2.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 ▶ 대상: 마이스터고등학교 3교(거제공업고, 삼천포공업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 ▶ 내용: 기숙사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실습환경 및 기자재 구입비, 연구학교 운영비 등
- ▶ 편성기준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단위: 천원)

구분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교당	612,000	680,000

-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지원(한국나노마이스터고): 클린룸 실습실 운영비 338,000천원
- ▶ 산출기초
 - 기숙사 운영: 000,000천원
 - 교육과정 운영: 000,000천원
 - 실습환경 및 기자재 구입: 000,000천원
 - 신기술교육과정 운영: 000,000천원

3.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 ▶ 대상: 경남과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 ▶ 내용: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 ▶ 산출기초
 - 과학교과 활동비: $0,000\text{천원} \times 00\text{학급} \times 00\text{월} = 0,000\text{천원}$
 - 영재교육원 관리비: $0,000\text{천원} \times 00\text{학급} \times 00\text{월} = 0,000\text{천원}$
 - 급식소 및 기숙사 관리비: $0,000\text{천원} \times 00\text{학급} \times 00\text{월} = 0,000\text{천원}$
 - 자기주도 입학전형 운영지원: $0,000\text{천원} \times 00\text{명} = 0,000\text{천원}$

4.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 ▶ 대상: 경남체육고등학교
- ▶ 내용: 학생선수 기량 향상과 대회 입상을 위하여 훈련비, 대회참가비 지원, 쾌적한 기숙사 생활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음식 제공, 보건의약품 및 전염병방제비 지원을 통한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 ▶ 산출기초
 - 급식비: $000\text{원} \times 000\text{명} \times 000\text{일} \times 0\text{식} = 0,000\text{천원}$
 - 학생우유비: $000\text{원} \times 000\text{명} \times 000\text{일} \times 0\text{식} = 0,000\text{천원}$
 - 기숙사 운영비: $000\text{천원} \times 00\text{월} = 0,000\text{천원}$
 - 보건의약품 및 감염병방제비: $0,000\text{천원} \times 0\text{회} = 0,000\text{천원}$
 - 대회출전비: $00\text{천원} \times 000\text{명} \times 0\text{일} \times 0\text{회} = 0,000\text{천원}$
 - 전지훈련비: $00\text{천원} \times 000\text{명} \times 0\text{일} \times 0\text{회} = 0,000\text{천원}$
 - 훈련용품: $000\text{천원} \times 00\text{종목} \times 00\text{월} = 0,000\text{천원}$ 등

📖 근거

- ㉮ 2025 경남교육 2-2-2 소통·교류·참여로 글로벌 역량 강화

📖 목적

- ㉮ 실용중심 영어교육 활성화로 학생 및 교사 외국어역량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 대상: 고등학교(9교)

㉮ 내용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영어말하기 및 쓰기 능력 향상을 통한 논리 사고력 증진
-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60가지 주제에 대한 1:1로 인터뷰 및 토론수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 9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고교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운영

㉮ 산출기초

- 고교영어토론프로그램운영비: 000천원×0교=0,000천원
- 강사비: 000천원×0명= 000천원

근 거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목 적

- ㉡ 수산계열 특성화고의 실습지원을 통한 양질 취업처 확보 및 필수 자격취득 지원
- ㉡ 선박 미보유로 인한 타 기관(경상국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선박 용선을 통한 학생의 기초항해 실습으로 해양관련 전문 인재 양성
- ㉡ 우수한 자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진 농업 인력 배출

사업내용

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 ▶ 편성기준: 학년별 기초항해 실습 및 수상적응 훈련, 선박안전 및 직무교육 운영에 따른 지원
- ▶ 산출기초
 - 항해실습지원: 000,000천원×0회×0교=000,000천원
 - 수상적응훈련: 00,000천원×0식=00,000천원
 - 선박안전및직무교육: 00,000천원×0식=00,000천원

나. 경남자영고등학교

- ▶ 편성기준 : 농업선진화교육, 취업 및 입지 교육, 선진영농현장실습, 영농과제활동 운영에 따른 지원
- ▶ 산출기초
 - 농업 선진화 교육 지원: (2강좌, 강사비) 00천원×000시간 = 0,000천원
 - 취업 및 입지 교육 지원: (4강좌, 강사비) 00천원×000시간 = 0,000천원
 - 선진영농 현장실습 지원: 000천원× 00명 = 0,000천원
 - 영농과제활동 지원: 00천원×00명 = 0,000천원

근 거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목 적

- ㉡ 노후화된 농업실습실 보수로 실험·실습포장 운영의 정상화
- ㉡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유통의 전체 과정을 체험하는 실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선진 영농기술인으로서의 기능 함양
- ㉡ 최첨단 실습장으로 구축된 스마트팜 내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5교)
 - 김해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경남산업고, 함양제일고, 창녕슈퍼텍고
- ㉡ 편성기준: 식물실습장 운영, 첨단유리온실 및 스마트팜 운영·보수, 마필관리 및 사육 운영, 축산실습장 운영·보수에 따른 학교별 차등 지원
- ㉡ 산출기초
 - 식물실습장 운영(0교): 000,000천원
 - 첨단유리온실 및 스마트팜 운영·보수(0교): 000,000천원
 - 마필관리 및 사육 운영(0교): 000,000천원
 - 축산실습장 운영·보수(0교): 000,000천원

근 거

- ㉡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4조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목 적

- ㉡ 학생과 교원의 첨단기계 실습을 통한 신기술 습득으로 현장 적응력 제고 및 실습 지도력 배양
- ㉡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성화고(3교) 내 공동실습소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공동실습소 운영 3교(경남자영고, 창원기계공업고, 진주기계공업고)
- ㉡ 편성기준: 교당 63,000천원
- ㉡ 산출기초
 - 일반운영비: 0,000천원×0교=0,000천원
 - 실습실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 0,000천원×0교=0,000천원
 - 실험실습재료 구입비: 0,000천원×0교=0,000천원
 - 학생교통비: 0,000천원×0교=0,000천원
 - 학생식비: 0,000천원×0교=0,000천원

 근 거

- ㉡ 과학직업과-7586(2015. 5. 7., “2016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 임용시험 선발 방법 개선방안”)

 목 적

- ㉡ 전문교과 신규교사 선발에서 실기 수업능력을 평가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기업체 산학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

 사업내용

- ㉡ 사업대상: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 ㉡ 편성기준: 3,500천원
- ㉡ 산출기초
 - 기자재 점검 및 수리비: 000천원×0종×0회=000원

근 거

- ☞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제5조(안전보호구 지원)

목 적

- ☞ 직업계고등학생들의 실습 시 안전 확보 및 학생 복지 강화
- ☞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을 촉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교육 희망사다리의 토대 마련

사업내용

- ☞ 사업대상: 직업계고등학교 22교
- ☞ 편성기준: 교과군(경영금융, 보건복지,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농림수산해양, 선박운영)에 알맞은 안전용품 선정 및 지원
- ☞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용접복 (세트)	실습복	안전모 (개)	안전화 (켤레)	보안경 (개)	기타 안전용품
금액	90	80	15	50	15	20

산출기초

- 실습복: 000천원×0개=000천원
- 안전모: 000천원×0개=000천원
- 안전화: 000천원×0개=000천원
- 기타안전용품: 000천원×0개=000천원

근 거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목 적

- ㉮ 실험·실습비 예산 지원을 통한 현대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내용

- ㉮ 대상: 직업계고등학교 22교
- ㉮ 편성기준: 학급 수×교과군별 단가×물가상승계수×계열별 비율
 - 교과군별 단가

(단위: 원)

교과군 번호	교과군	지원단가	교과군 번호	교과군	지원단가
1	경영금융	379,438	8	재료	6,687,252
2	보건복지	3,610,138	11	전기전자	5,514,125
3	디자인 문화콘텐츠	1,681,123	12	정보통신	2,728,983
4	미용관광레저	6,508,082	13	식품가공	4,741,350
5	음식조리	4,741,350	14	인쇄출판공예	미편성 교과군
6	건설	4,813,878	16	농림수산해양	5,978,648
7	기계	5,903,955	17	선박운영	4,335,413

- 계열별 비율: 실험실습 재료비 계열별 1% ~ 22% 조정

산출기초

- 실험실습재료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38 읍면지역 직업계고 학생 급식비 지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담당 (☎268-1398)

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목적

- 읍면지역 직업계고 기숙사 학생들의 조식식비를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여

사업내용

- 대상: 읍면지역 직업계고등학교 9교
- 편성기준 : 학교급식지원 단가(식품비+운영비)×급식인원×급식일수
- 식품비

(단위: 원)

학생수	유	초	중	고	특수
25명 이하	2,300	4,540	5,040	5,290	- 유·초·등부 3,830원 - 중·고·전공 4,680원
26 ~ 50명		4,480	4,990	5,230	
51 ~ 100명		4,150	4,770	5,010	
101 ~ 200명		3,830	4,320	4,680	
201 ~ 300명		3,540	3,990	4,350	
301 ~ 400명		3,410	3,880	4,240	
401 ~ 500명		3,290	3,800	4,130	
501 ~ 600명		3,190	3,630	4,000	- 시설수용생(초등) 2,150원 - 시설수용생(중등) 2,860원
601 ~ 700명		3,100	3,520	3,910	
701 ~ 800명		3,030	3,440	3,800	
801 ~ 900명		2,960	3,390	3,720	
901 ~ 1,000명		2,890	3,350	3,660	
1,001 ~ 1,100명		2,840	3,320	3,630	
1,101명 이상		2,820			

- 운영비 (※ 도시가스 미사용 학교는 1인당 50원 추가 지원)

구분	지원 단가	지원 일수
유, 초, 특수	350원	190일 (특수 200일)
중, 고	370원	

근 거

- ㉠ 교육기본법 제22조,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2
- ㉠ 창의인재과-3101(2024. 2. 22., “2024학년도 경남형 과학중점학교 운영 계획”)

목 적

- ㉠ 과학기술 기반 핵심역량을 가진 융합 인재 육성
- ㉠ 과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경험을 균형 있게 제공
- ㉠ 과학·수학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 심화 수업, 실험·탐구 학습 기회 제공
- ㉠ 과학 기초학력을 배양하고 탐구체험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 계발

사업내용

- ㉠ 대상: 5개 학교(김해분성고등학교, 마산용마고등학교, 물금고등학교,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 ㉠ 편성기준

(단위: 천원)

연번	설립별	학교명	비교과 체험활동비	과학중점과정 운영비	합계	비고 (1학년 학급수)
1	공립	김해분성고	10,000	34,000	44,000	8학급
2	공립	마산용마고	9,000	34,000	43,000	7학급
3	공립	물금고	13,000	34,000	47,000	11학급
4	공립	창원여자고	9,000	59,500	68,500	7학급
5	공립	창원남산고	9,000	34,000	43,000	7학급
계			50,000	195,500	245,500	

※ 2, 3학년 과학중점과정 학급당 8,500천원 지원

※ 1학년 비교과 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9,000천원/교, 1학년 기준 7학급 초과 시 학급당 1,000천원 추가 지원, 1학년 대상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210-5276)

근 거

- 진로교육과-6050(2024. 3. 29., “2025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목 적

-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경제적 배려대상자(기회균등전형)로 선발된 학생에게 기타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사업내용

- 대상: 경남과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 내용: 2023년도부터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기타 교육비 지원
- 편성기준

(단위: 천원)

구분		현장체험학습비(학생당)		기숙사비 (학생 월당)
		국내	국외	
경남과학고등학교		100	400	70
창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150	500	90
	2학년	150	0	
	3학년	150	0	
김해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0	550	135
	2학년	0	500	
	3학년	0	0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1-1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목 적

- ㉮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지원
- ㉮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일반고 대상 학점제의 현장 안착 지원
- ㉮ 학교 간 교육과정 및 현황 공유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사업내용

가. 일반 공립고(88개교)

- ▶ 편성기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의 운영 경비
- ▶ 산출기초: 학교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학교 규모	6학급 이하	7~12학급 이하	13~18학급 이하	19~24학급 이하	25~30학급 이하	30학급 초과
학교 수(교)	10	6	10	20	25	17
운영비(천원)	7,000	14,000	21,000	28,000	31,500	35,000

나. 일반고 고교학점제 클러스터 중심학교 공립고(21개교) ※ 사립고(10개교)

- ▶ 편성기준: 지역간 접근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고 149개교를 6권역, 31개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클러스터별 중심학교에 운영비 지원

구분	지역	클러스터명	클러스터 수	학교수
1권역	창원	창원1~5, 마산1~2, 진해	8	41교
2권역	김해, 양산	김해1~3, 양산1~2	5	29교
3권역	통영, 거제, 고성	통영, 거제1~2, 고성	4	15교
4권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진주1~2, 사천1~2, 남해, 하동	6	29교
5권역	의령, 함안, 창녕,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밀양	4	18교
6권역	합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산청, 함양, 거창	4	17교
합계			31	149교

- ▶ 산출기초: 일반고 고교학점제 클러스터 31개별 요청에 따라 금액 산정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2-3 직업계고 현장 맞춤형 역량 강화
- ㉡ 전국영농학생축제 개최지침서(사. 한국농업교육협회)

목 적

- ㉡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진로 개발 및 농업분야 인재 양성
- ㉡ 선진 영농 신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우수 인재 조기 발굴
- ㉡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축제 형태의 대회 운영으로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 대상: 농업계고등학교 7교
- ㉡ 경남 및 전국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 ㉡ 편성기준: 학교 및 참여 규모, 종목, 입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차등 지원
- ㉡ 산출기초
 - 훈련비: 000천원×0시간×0종목=000천원
 - 참가경비 및 부스운영비: 000천원×0식=000천원
 - 주관학교 전국FFK하계리더십연수(교통비, 급량비 등) 000천원×0명=000천원
 - 주관학교 운영비: 000천원×0식=000천원
 - 한국농업교육협회 주관 국외연수: 000천원×0명=000천원

 근거

- ㉠ 국정과제 82-2-2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 7.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등학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2의2.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등학교
- ㉠ 2025 경남교육 1-2-3 직업계고 현장 맞춤형 역량 강화

 목적

- ㉠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자 및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 인재 양성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직업계고등학교 공립 22교
- ㉠ 내용
 -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교육활동, 교과교실 도입, 학급 증설, 학생 및 교사 부전공 이수 확대, 학교 밖 교육, 군특성화 학과 운영 등
 -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직업계고 학점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자료집 제작, 연수, 컨설팅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지정된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등학교 운영비에 근거하여 산정
 -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출 불가
- ㉠ 편성기준: 학교 규모, 학급 증설, 군특성화, 부전공,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차등 지원
- ㉠ 산출기초
 - 행사운영비: 000천원×0종목×0회=000천원
 - 인쇄물 제작비: 000천원×00부=000천원
 - 강사수당 및 여비: 000천원×0명×0회=000천원
 - 컨설팅 수당 및 여비: 000천원×0명×0회=000천원
 - 협의회비: 000천원×0명×0회=000천원

근 거

- ㉮ 2025 경남교육 1-2-3 직업계고 현장 맞춤형 역량 강화

목 적

- ㉮ 상업계열 직업계고등학교 대상으로 경남 및 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 학생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상업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
- ㉮ 학생들의 직업기초 및 실무 능력 함양으로 취업·진로 연계와 잠재적 능력 계발

사업내용

- ㉮ 대상: 상업계열 고등학교(8교)
- ㉮ 편성기준
 - 개최교 대회 운영비: 00,000천원×0교=00,000천원
 - 상업경진대회 문제 출제비: 00,000천원×0교=00,000천원
 - 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학생 훈련비 등: 00,000천원×0회=00,000천원
- ㉮ 산출기초
 - 학생 훈련비: 000천원×0명×0회=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회=000천원

근 거

- 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목 적

- ⑤ 직업계고 전공직업체험활동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
- ⑤ 첨단 기술과 실생활 관련분야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직업관 함양 및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

사업 내용

- ⑤ 대상: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 ⑤ 내용: 창원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분야 체험학습을 통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직업 탐색 기회 제공
 - 교육 대상: 창원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 입소 인원: 각 기수별 1학급, 학교별 학급 단위로 입소(29개 학교 149학급 4,013명)
 - 교육 시간: 1일 6시간
 - 체험관 운영 기간: 3월 ~ 12월
 - 교육 장소: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내 직업체험관
 - 운영프로그램: 로봇팔 공장 자동화 체험, 로봇마스터·드론 체험, 금속프린팅 기계 체험
- ⑤ 산출기초
 - 재료구입비: 000천원×0회=000천원
 - 중식비: 0천원×00명=000천원
 - 간식비: 0천원×00명=000천원
 - 강사비: 000천원×0시간×0일=000천원
 - 운영물품비: 000천원원×0회=000천원
 - 대강비: 0천원×0시간=000천원
 - 협의회비: 00천원×0명×0회=000천원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목 적

- ㉡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사업내용

- ㉡ 대상: 통학버스 용역차량 이용하는 특수학교
- ㉡ 편성기준: 특수학교 통학버스 용역비 1대당 최대 68,000천원 지원
- ㉡ 산출기초
 - 통학차량 용역비 000천원×0대=000천원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운영)
- ㉮ 초·중등교육법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2021. 9.)

목 적

- ㉮ 2025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적용 및 현장 안착 지원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특색있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사업내용

- ㉮ 대상: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 과정 운영 특수학교(11교)
- ㉮ 내용: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운영
- ㉮ 편성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22.11. 개정) 학급 수 기준 3단계 차등 지원
(12학급 이하 29,000천원, 13학급이상 20학급 미만 34,000천원, 20학급 이상 38,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학교명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급 수	운영비
1	창원천광학교	기본교육과정	12	29,000
2	경남혜림학교	기본교육과정	15	34,000
3	진주혜광학교	기본교육과정	11	29,000
4	통영잠포학교	기본교육과정	6	29,000
5	김해은혜학교	기본교육과정	16	34,000
6	양산희망학교	기본교육과정	9	29,000
7	의령은광학교	기본교육과정	4	29,000
8	거창나래학교	기본교육과정	5	29,000
9	밀양아리솔학교	기본교육과정	5	29,000
합계				271,000

산출기초

- 학생체험비: 000천원×0명×0명=000천원
- 운영물품구입: 000천원×0개=000천원
- 강사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원고료: 000천원×0매=000천원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목 적

- ㉠ 공립 대안학교의 기숙사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학교 운영 지원
-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다양성 교육 제공

 사업내용

- ㉠ 대상: 경남꿈키움중학교
- ㉠ 산출기초
 - 기숙사 운영비: 00천원×000명×00월=0,000천원
 - 급식비: 00천원×000명×0식×000일=0,000천원

49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 (☎210-5265)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 2025 경남교육 2-2-3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대안교육

목적

- 대안(특성화)학교의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현장 경험과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위한 전문 대안교과 운영
- 대안학교의 맞춤형 대안교육과정 운영의 모범적 사례 확산을 위한 체험중심 배움터 운영

사업내용

- 대상: 대안(특성화)학교 8교
- 편성기준

(단위: 천원)

연번	학교명	내역	금액
1	태봉고등학교 (창원자유학교 포함)	진로 및 직업체험 실습비 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26,000
2	밀양영화고등학교	영화체험활동 실습비	63,000
3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음악 전문교과 실습비	63,000
4	거창연극고등학교	연극 전문교과 실습비	63,000
5	김해금곡고등학교	대안교육 전문교과 운영비	52,500
6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대안교육 전문교과 운영비	52,500
7	경남꿈키움중학교	대안교육 및 체험 위주 교육과정 운영비	56,000

근 거

- 창원예술학교-5396(2024. 8. 8., “2025학년도 창원예술학교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목 적

- 일반고에서 예술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 확대로 꿈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사업내용

- 대상: 창원예술학교
- 내용: 심화 학습을 중심으로 한 전공 실기 능력 향상 지원
- 산출기초
 - 음악전공실기: 000천원×0시간=000천원
 - 음악부전공실기: 000천원×0시간=000천원
 - 음악이론: 000천원×0시간=000천원
 - 미술전공실기: 000천원×0시간=000천원
 - 미술드로잉: 000천원×0시간=000천원 등

VII

총액배분인건비 설명서

반복적·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

1 영양사 인건비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210-5189)

근 거

- ⑤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목 적

- ⑤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 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운영 지원

사업내용

- ⑤ 대상: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배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⑤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2 조리사 인건비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210-5189)

근 거

- ⑤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목 적

- ⑤ 교육공무직원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 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운영 지원

사업내용

- ⑤ 대상: 교육공무직원 조리사 배치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⑤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3

조리실무사 인건비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210-5189)

근 거

-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목 적

- ㉡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 ㉡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운영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배치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4

교무행정원 인건비

학교혁신과 업무혁신담당 (☎278-1698)

근 거

- ㉡ 2025 경남교육 5-2-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및 교육청 업무 방식 개선

목 적

- ㉡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및 교육본질에 집중하는 협력적 학교업무 문화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교무행정원이 배치된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 편성기준: 상시전일근무자 인건비 및 방학중 비근무자 인건비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5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716-1754)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8조
- ㉮ 2025 경남교육 2-3-2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목 적

- ㉮ 중증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인력 제공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인력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특수교육실무원이 배치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 편성기준: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인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6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인건비

학교지원과 초중학생배치담당 (☎268-1437)

근 거

- 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목 적

- ⑤ 통학편의 지원 유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통학 안전 관리

사업내용

- ⑤ 대상: 직영 통학버스 운영 단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 ⑤ 편성기준: 방학중 비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인건비

- ⑤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7 전담사서 인건비

창의인재과 독서교육담당 (☎210-5153)

근 거

-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 적

- ☎ 전담사서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전담사서가 배치된 초·중·고·특수학교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 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사업전담인력 배치·활용)

목 적

- 교육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문화·복지 등 다차원적인 지원 및 운영

사업내용

-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학교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월=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월=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9 과학실험원 인건비

창의인재과 융합교육담당 (☎210-5139)

근 거

- ㉠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
-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목 적

- ㉠ 과학실험·실습 교육에 대한 업무 보조로 탐구중심의 실험 수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과학행사 및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과학교육의 질 개선

사업내용

- ㉠ 대상: 과학실험원이 배치된 초·중·고등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 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 거

- ㉮ 2025 경남교육 2-1-2 경남형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 2025 경남교육 5-2-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및 교육청 업무 방식 개선

 목 적

-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한 교육본질에 집중하는 협력적 학교업무 문화 조성

 사업내용

- ㉮ 대상: 방과후학교실무원이 배치된 초등학교
 - ㉮ 편성기준: 상시전일근무자 인건비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거

- ㉠ 2025 경남교육 5-1-1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정원 및 인사제도 운영

 목적

- ㉠ 구.학부모회직원 배치를 통한 학교 교무·사무행정 업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사업내용

- ㉠ 대상: 구.학부모회직원이 배치된 중·고등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12 치료사 인건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716-1754)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8조
- ㉮ 2025 경남교육 2-3-2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목 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 제공

사업내용

- ㉮ 대상: 치료사가 배치된 특수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목 적

- ㉡ 기숙사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생활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기숙사생활지도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목 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 편의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특수통학차량운전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근 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목 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 편의 지원

 사업내용

- ㉮ 대상: 특수통학차량보호탑승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 ㉮ 산출기초

- 인건비: 000천원×0월=000천원
- 보험료: 000천원×0월=000천원
- 연차수당: 000천원×0명=000천원
- 퇴직금: 000천원×0회=000천원

※ 기본급 외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지급기준: 개인별 조건에 따라 편성

제3장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2025학년도 달라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I. 학교회계 세입예산과목(성질별)[교육부]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변경내용		사용	
							공립	사립
이전수입 (A0000)	기타이전 수입 (A4000)	민간이전 수입 (A4400)	기부금 (A4401)	기부금 (A440101)	과목 신설	유치원 등 발전기금회계가 없는 학교의 기부금 ※ 발전기금회계가 있는 학교는 발전기금으로 세입 처리	○	×
자체수입 (B0000)	학부모 부담수입 (B1000)	수익자 부담수입 (B1200)	돌봄활동 운영비 (B1213)	돌봄활동운영비 (B121301)	과목 삭제	돌봄활동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늘봄학교 운영비 (B1214)	늘봄학교운영비 (B121401)	과목 신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자체수입 (B0000)	행정활동 수입 (B3000)	기타행정 활동수입 (B3500)	기타행정 활동수입 (B3503)	기타행정 활동수입 (B350301)	과목 해설 추가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자원순환수익 , 변상금, 위약금 , 법인카드포인트 ~	○	○

II.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성질별)[교육부]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변경내용		사용	
						공립	사립
운영비 (B00)	학교운영비 (B10)	일반운영비 (B10-01)	일반수용비 (B100101)	과목 해설 추가	(사무용품 구입비, 감사패·상패 등의 제작비 , 인쇄비~)	○	○
			운영수당 (B100102)	과목 해설 변경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나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 교직원(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	○
운영비 (B00)	학교운영비 (B10)	일반운영비 (B10-01)	연료비 (B100105)	과목 해설 변경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연료비 등)	○	○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변경내용		사용	
						공립	사립
			교직원복지비 (B100112)	과목 해설 변경	(~특근매식비, 자비부담 직무관련 연수 비, 교직원보건검사비~)	○	○
운영비 (B00)	학교운영비 (B10)	교육운영비 (B10-02)	교육운영비 (B100201)	과목 해설 추가	(~유지보수비, 구독형 교육용 소프 트웨어 구입비 , 교육용 재료비~ 학 급교육활동경비, 교육활동 입장료 및 체험비, 학생간식비 등)	○	○
자산취득비 (C00)	비품구입비 (C20)	비품구입비 (C20-01)	도서구입비 (C200102)	과목 해설 변경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대장에 등 재되는 도서구입비	○	○

Ⅲ.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사업별)[교육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예시	변경내용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역량강화	• 직무연수 • 자격연수 • 정보화연수 • 자율연수 • 학습동아리운영 • 기타 역량강화지원	세부항목삭제	• 정보화연수 • 자율연수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학생복지 운영	• 졸업앨범제작 • 학생교과서 구입 • 학생증제작 • 통학차량운영지원 • 체육복구입비지원	세부항목추가	• 체육복구입비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활동	국어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사회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수학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과학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 과학실운영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활동	체육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예시	변경내용	
		예술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음악실운영 - 미술실운영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외국어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 외국어강사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선택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특수교육 교과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 전공과교과활동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전문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유치원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사업해설변경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부설기관 교과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방송통신중(고)교과운영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정보교과 활동	- 교과운영 -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항목추가	• 학교자율시간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 학생회활동지원 - 학예회 - 과학경연대회 - 실기대회 - 학생건강체력평가 - 체육대회 (영자)신문제작 - 학급운영비 - 텃밭가꾸기	세부사업명변경	자율활동 → 자율·자치활동
				사업해설추가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활동 등 자율·자치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기본적 교육활동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 활동	- 진로탐색활동 - 주제선택활동 - 예술·체육활동 - 동아리활동	단위사업명변경	자유학기(년)활동 → 자유학기활동
				세부사업명변경	자유학기(년)체활동 → 자유학기활동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예시	변경내용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해설변경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 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세부항목삭제	• 예술·체육활동 •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 교과프로그램 • 특기적성교육 • 토요스포츠강사 운영 • 방과후학교실무원인건비	사업해설추가	※ 초등 방과후학교는 늘봄학교운영 으로 편성
				세부항목삭제	• 방과후학교실무원인건비
		돌봄교실 운영	• 늘봄학교운영 • 돌봄교실운영 •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 돌봄전담사인건비	세부사업삭제	돌봄교실운영 • 늘봄학교운영 • 돌봄교실운영 •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 돌봄전담사인건비
		늘봄학교 운영	• 늘봄학교운영 • 돌봄교실운영 •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 돌봄전담사인건비 • 방과후학교실무원인건비	세부사업신설	• 늘봄학교운영 • 돌봄교실운영 •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 돌봄전담사인건비 • 방과후학교실무원인건비

I

학교회계 세입예산과목(성질별)[교육부]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1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	○		
			A110102	국고보조 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 국고보조지원금	○	○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시·도·자치 단체전입금	A210109	농어촌학교 보조금(광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시·도·자치단체가 보조 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	○		
			A210110	사회적배려 대상자지원 보조금 (광역)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정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광역시·도·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	○		
			A210111	급식비 보조금(광역)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역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 (식품비, 인건비 등)	○	○		
			A210112	기타법령 근거보조금 (광역)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	○		
			A210113	자치법규 근거보조금 (광역)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 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2102 기초지방 자치단체 전입금	A210209	농어촌학교 보조금 (기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 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	○	
				A210210	사회적배려 대상자지원 보조금 (기초)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 (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 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	○	
				A210211	급식비 보조금 (기초)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	○	
				A210212	기타법령 근거보조금 (기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 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 는 사업 경비	○	○	
				A210213	자치법규 근거보조금 (기초)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 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	○	
			A2200 교육경비보조금						
			A2201 광역시방자치 단체전입금	A220101	급식시설· 설비사업 보조금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급식시설·설비 사업경비	○	○	
				A220102	교육정보화 사업보조금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 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경비	○	○	
				A220103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보조금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 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220104	학교교육 과정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 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	○	
				A220105	주민교육과 정개발운영 사업보조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 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	○	
				A220106	지역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 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경비	○	○	
				A220107	기타학교교 육여건개선 사업보조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 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광역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	○	
			A2202 기초지방자치 단체전입금	A220201	급식시설· 설비사업 보조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 비 사업경비	○	○	
				A220202	교육정보화 사업보조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 화사업 경비	○	○	
				A220203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보조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 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	○	
				A220204	학교교육과 정운영지원 사업보조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	○	
				A220205	주민교육과 정개발운영 사업보조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220206	지역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보 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경비	○	○	
				A220207	기타학교교 육여건개선 사업보조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	○	
A3000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A310101	학교운영비 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	×	
				A310102	목적사업비 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되는 전입금	○	×	
			A3102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A310201	인건비재정 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	○	
				A310202	운영비재정 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	○	
				A310203	목적사업비 보조금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립학교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	○	
A3200 기금회계전입금수입									
			A3201 기금회계 전입금	A320101	학교운영비 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	○	
				A320102	목적사업비 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되는 전입금	○	○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 부담금	A410101	법인법정 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 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	○	
			A4102 법인이전수입	A410201	법인이전 수입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 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 기금전입금	A420101	학교발전 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 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	○		
		A4202 다른학교 회계전입금	A420201	다른학교 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학교가 전출 하는 전입금(기타 학교 간 사무위탁의 처리를 위한 경비 등)	○	○		
		A4203 기타학교 회계전입금	A420301	기타학교 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 회계전입금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회계에서 이전 되는 학교내 타회계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	○		
		A4300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1 기타공공 지원금	A430101	기타공공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 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 난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 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 기금회계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 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	○		
		A4400 · 민간이전수입							
		A4401 기부금	A440101	기부금	유치원 등 발전기금회계가 없는 학교의 기부금 ※ 발전기금회계가 있는 학교는 발전 기금으로 세입 처리	○	×	과목 신설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101	입학금	○○시·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B110102	지난년도 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	○	
			B1102 수업료	B110201	수업료	○○시·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	○	
				B110202	지난년도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	○	
			B1103 학교운영 지원비	B110301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지원비(초등학교, 중학교 및 무상 교육 대상 고등학교는 해당없음)	×	○	
				B110302	지난년도 학교운영 지원비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	○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1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	○	
				B120102	우유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우유대금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	○	
			B1202 방과후학교 활동비	B120201	방과후학교 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금	○	○	
			B1203 현장체험 학습비	B120301	현장체험 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 별 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5 청소년단체 활동비	B120501	청소년단체 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6 졸업앨범비	B1206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7 교과서비	B120701	교과서비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8 기숙사비	B120801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9 기타수익자 부담수입	B120901	기타수익자 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등 포함)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B1210 누리과정비	B121001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단설 및 병설유치원 원아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등은 누리과정비로 편성)	○	○	
			B1211 교복구입비	B121101	교복구입비	교복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12 운동부운영비	B121201	운동부 운영비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	○	
			B1213 돌봄활동 운영비	B121301	돌봄활동 운영비	돌봄활동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과목 삭제
			B1214 늘봄학교 운영비	B121401	늘봄학교 운영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과목 신설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 및 수수료	B310101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 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 하는 대여료 등	○	○	
				B310102	수수료	입학전형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	○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B320101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	○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 수입	B330101	적립금 처분수입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 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 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수입 제외_이 자수입은(함) 기타행정 활동수입/ (목)이 자수입으로 편성)	○	○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B340101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	○	

장	관	항	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 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 수입	B350101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학부모 부담수입은 해당 과목에 계상)	○	○		
		B3502 이자수입	B350201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		
		B3503 기타행정활동 수입	B350301	기타행정 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자원순환수익 , 변상금, 위약금 ,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 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	○	과목 해설 추가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110101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여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	○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C120101	정산 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 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 잔액 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C13010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		

II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성질별)[교육부]

목 그룹	목	세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1 보수	A100101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 월액 포함)	×	○		
A10010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지방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	○			
A100103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및 지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	○			
A100104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	○			
A100105		창안상여금		×	○			
A100106		가족수당		×	○			
A100107		자녀학비보조수당		×	○			
A100108		육아휴직수당		×	○			
A100109		특수지근무수당		×	○			
A100110		위험근무수당		×	○			
A100111		연구업무수당		×	○			
A100112		교육연구기관근무수당		×	○			
A100113		교원보전수당		×	○			
A100114		교원보전수당가산금		×	○			
A100115		교직수당		×	○			
A100116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수당)		×	○			
A100117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수당)		×	○			
A100118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업무수당)		×	○			
A100119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임수당)		×	○			
A100120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수당)		×	○			
A100121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	○			

목 그룹	목	세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100122	교직수당가산금7 (병설유치원겸임수당)		×	○	
			A100144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	○	
			A100145	교직수당가산금9 (사서교사수당)		×	○	
			A100146	교직수당가산금10 (전문상담교사수당)		×	○	
			A100123	선박맞춤정근무수당		×	○	
			A100124	국제전문직위수당		×	○	
			A100125	의료업무등의수당		×	○	
			A100126	업무대행수당		×	○	
			A100127	시간외근무수당		×	○	
			A100128	야간근무수당		×	○	
			A100129	휴일근무수당		×	○	
			A100130	관리업무수당		×	○	
			A100131	정액급식비		×	○	
			A100133	명절휴가비		×	○	
			A100135	연가보상비		×	○	
			A100136	모범공무원수당		×	○	
			A100138	명예퇴직수당		×	○	
			A100139	장려수당		×	○	
			A100140	기술정보수당		×	○	
			A100141	특수직무수당		×	○	
			A100142	개방형직위등보전 및전문직위수당		×	○	
			A100143	직급보조비		×	○	
			A100147	겸임수당		×	○	
	A10-02 공무직 보수		A100202	공무직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 (호봉제공무직, 월급제공무직 등)	○	○	
	A10-03 기간제 근로자 보수		A100302	기간제교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	

목 그룹	목	세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A10030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급여 포함)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	○	
		A10-04 기타 수당	A100401	기타수당	각종 법령(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 적 경비(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 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공무직인건비에 편성)	○	○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 운영비	B100101	일반수용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감사패상패 등의 제작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 종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포함) 및 수수료,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 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각 종 봉사료 등)	○	○	과목 해설 추가	
B100102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나 교직원 등 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기타 실비지급 경비(강사수당, 외부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등) ※ 교직원(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카터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	○	과목 해설 변경		
B100103		전기요금	전기요금	○	○			
B100104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	○			
B100105		연료비	건물 난방비나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 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 대연료비 등)	○	○	과목 해설 변경		
B100106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			
B100107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	○			
B100108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 여비	○	○			
B100111		맞춤형복지비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	○			
B100112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차비부담 직무관련 연수 비, 교직원보건검사이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경비 등)	○	○	과목 해설 변경		

목 그룹	목	세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B10-02 교육 운영비	B100113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	○	과목 해설 추가	
			B100201	교육운영비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교구, 기자재 구입(자산성 물품은 비품 구입비 목에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구독형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육활동 입장료 및 체험비, 학생간식비 등)	○	○		
			B100202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	○		
			B100203	학생복지비	학생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	○		
		B10-03 법정 부담금	B100301	교직원법정 부담금	정규직 교직원에게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	○		
			B100303	기간제교원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		
			B100304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		
			B100305	공무직 법정부담금	공무직(호봉제·월급제 공무직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		
		B20업무추진비							
		B20-01 일반 업무 추진비	B200101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		
	B200102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B200103		목적사업업무 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	○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C100101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 등의 시설)	○	○			

목 그룹	목	세목	원가 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변경 내역
						공 립	사 립	
			C100102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보증금	○	○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 구입비	C200101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	○	
			C200102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대장에 등재되는 도서구입비	○	○	과목 해설 변경
		C30 시설적립금						
		C30-01 시설 적립금	C300101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자산 취득비	C400101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구입, 기타 유·무형자산 등의 기타 자산취득비	○	○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	D1001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	○	○	
		D10-02 반환금	D100201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	○	
		D10-03 전출금	D100301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	○	

III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사업별)[교육부]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교직원보수	사립학교 교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교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사립학교 직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기타 교직원 보수	교직원 대체인건비	정규직 교직원(정규직 교원·직원, 무기계약 직원)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에 따른 결원 충원)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기타수당	각종 법령(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역량강화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관광·친목 등 외유성 경비 사업 집행 지양)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학습동아리운영 •기타 역량강화 지원	세부 항목 삭제
		교직원 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등 지급경비 (교직원 동호회 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동호회지원 •퇴임식, 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급식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급식실 운영, 위탁급식 운영, 급식재료 구입, 우유급식운영비, 학교급식 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보건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 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운영, 학생건강진단, 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관리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등)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 학습환경 관리, 방역관리, 먹는물 관리 등)	•먹는물관리 •소음관리 •공기질관리 •방역관리 •어린이활동공간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비 지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정보화비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컴퓨터 구입비 등 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컴퓨터구입비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타 교육격차 해소 지원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비	•탈북학생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학생복지	학생장학금 운영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은 학교발전 기금회계에서 지출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 우선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교육복지사 인건비 •교육복지사업 운영비	
		학생복지 운영	학생복지 관련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졸업앨범, 교과서 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 등)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 체육복구입비지원	세부 항목 추가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교과활동	교과활동 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기초학력 지도, 수준별 이동 수업, 원격수업, 교과협의회 운영 등)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고교학점제운영 •교과교실제운영 •교과협의회운영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국어 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사회 교과활동	사회(역사, 도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수학 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과학 교과활동	과학(실과, 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과학실운영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체육 교과활동	체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예술 교과활동	예술(음악, 미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음악실운영 •미술실운영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외국어 교과활동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 •외국어강사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선택 교과활동	한문, 교양 등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특수교육 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전문 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유치원 교과활동	(별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사업 해설 변경
		부설기관 교과활동	부설기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경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방송통신중(고)교과운영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정보 교과활동	정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컴퓨터등기자재, 교구및학습준비물지원 등)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학교자율시간운영	세부 항목 추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율· 자치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예회 활동, 각종 경진대회, 실기대회 등)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 •과학경연대회 •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영자)신문제작 •학급운영비 •텃밭가꾸기	세부 사업명 및 사업 해설 변경
		현장체험 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 활동	봉사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등)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 봉사 •노인복지시설 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청소용품	
		진로 활동	진로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에 소요되는 사업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 예술·체육활동 • 동아리활동	단위·세부 사업명 변경 / 사업 해설 변경 / 세부 항목 삭제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특기, 적성 및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 초등 방과후학교는 늘봄학교운영으로 편성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 운영 •방과후학교실무원인건비	사업 해설 변경 / 세부 항목 삭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늘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돌봄전담사인건비	세부 사업 삭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늘봄학교 운영	늘봄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늘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돌봄전담사인건비 •방과후학교실무원인건비	세부 사업 신설
	직업교육	직업교육 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취업역량강화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산학협력운영	
	국제교육	국제교육 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 운영	독서활동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독서교육 역량강화 등)	•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원인건비 •독서프로그램운영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운영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체육중·고 운동부 등)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운동부지도자인건비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 운영	창의성이나 수월성 제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영재교육운영, 발명교실 등)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육운영	
		기타 선택적교육 운영	위에서 나열하지 않은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등 외부기관을 이용한 위탁교육 등)	•위탁교육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어린이 신문구독 •대학생멘토링제운영	
		다문화 교육운영	다문화 교육활동이나 연수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 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 관련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입학전형, 입학식 및 졸업식, 출석부 구입, 학생평가 등)	•교무행정원 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 및 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생활지도 운영	학생생활 상담지도	교내외 학생생활, 학생상담 지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 학생 상담, Wee 클래스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 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선도 등)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	
		학생안전 교육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 등)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혁신학교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 운영	방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정보화실 운영	정보화실 및 정보교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원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 •홈페이지운영 •소프트웨어구입 •학내망관리	
		공동실습소 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기타 학습 지원실운영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관련 사업비 (시청각실 등)	•시청각실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비	•책·결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노후사물함교체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 운영	학교 각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이전비), 업무추진비 등)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분교장운영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변경 내역	
		부설기관 운영	학교의 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속기관 운영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방송통신중학교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병설유치원 기본운영	병설유치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치원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치원 시설장비유지 •병설유치원운영		
		행정지원 인력운용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행정(사무)실무원(구 학부모회 포함)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구 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원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장비 유지	학교 시설장비 유지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당직전담사인건비 •청소원인건비 •시설실무원인건비		
		학교운영 협력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 협력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 하기 위해 학부모 협력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부모 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등)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관계기관 협력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역발전협의회운영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 및 개선	일정규모(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 하는 사업) 이상의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호우피해 복구, 교실 증개축 등)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 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 보수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IV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표준안

제4장

예산편성
기준단가

I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3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금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지방: 제6조)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지방: 제6조의2)
정액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3,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조 ~ 제14조의 2) - 대우공무원수당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제17조
복리후생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2 여비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전비 교육훈련비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5. 이전비 지급 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별표1.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Ⅱ 예산편성 기준 및 단위단가

1 시설사업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교실 신·증·개축	1층, 최상층	실	232,660	○ 면적91.8㎡ ○ 2층창 또는 복층유리시공 ○ 안전난간봉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 냉·난방(천장형)	증개축
교실 신·증·개축	2층이상	실	207,240	○ 면적91.8㎡ ○ 2층창 또는 복층유리시공 ○ 안전난간봉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 냉·난방(천장형)	
현관 신·증·개축	철근콘크리트조	실	200,580	○ 면적91.8㎡	
계단실 신·증·개축	철근콘크리트조	층	100,290	○ 면적45.9㎡ ○ 현관의0.5	
연결복도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	2,185	○ 계단실 증·개축 단가(면적단위 환산) 적용	
사택 증·개축	철근콘크리트조	㎡	2,825		
창고 증·개축	철근콘크리트조	㎡	2,185	○ 계단실 증·개축 단가(면적단위 환산) 적용	
교사철거비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석면)	실	24,830	○ 면적 91.8㎡ ○ 석면처리비 포함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무석면)	실	19,200	○ 면적 91.8㎡ ○ 무석면 건축물	
	조적스레트	실	23,740	○ 면적 86.4㎡ ○ 석면처리비 포함	
석면조사비		㎡	1	○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자료기준	
교실바닥 교체	PVC타일	실	6,720	○ 면적 : 67.5㎡ ○ 바닥 마감재 교체(바탕처리 미포함)	대수선
	목재후로링	실	17,770	○ 면적 : 67.5㎡ ○ 바닥틀 및 널 교체(바탕처리 미포함) ○ 전기공사 별도	
	석재마감	실	14,250	○ 면적 : 67.5㎡ ○ 바닥틀 및 널 교체(바탕처리 미포함) ○ 전기공사 별도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이중바닥재	실	16,900	○ 면적 : 67.5㎡ ○ 바닥틀 및 널 교체(바탕처리 미포함) ○ 전기공사 별도	
교실바닥 교체(전기)	후로링바닥	실	1,295	○ 면적 : 67.5㎡ ○ 전기설비, 코드웨이	
	이중바닥	실	9,810	○ 면적 : 67.5㎡ ○ 전기설비, 코드웨이	
복도바닥 교체	PVC타일	실	2,410	○ 면적 : 24.3㎡ ○ 바닥 마감재 교체(바탕처리 미포함)	
	목재후로링	실	6,390	○ 면적 : 24.3㎡ ○ 바닥틀 및 널교체(바탕처리 미포함)	
	석재마감	실	5,140	○ 면적 : 24.3㎡ ○ 바닥틀 및 널교체(바탕처리 미포함)	
계단실보수	목재마감재	실	16,980	○ 면적 : 45㎡ (1, 2층 1.0실) ○ 스텐 난간 교체	
	PVC타일	실	11,990	○ 면적 : 45㎡ (1, 2층 1.0실) ○ 스텐 난간 교체	
	석재마감재	실	15,800	○ 면적 : 45㎡ (1, 2층 1.0실) ○ 스텐 난간 교체	
이중창설치	플라스틱창	실	23,660	○ 플라스틱225㎜(이중창), 방충망설치, PVC ○ 내·외부:복층유리22㎜(로이,아르곤) ○ 기존창호교체 ○ 안전난간봉 설치	
	금속제창	실	28,980	○ 조달등록기준, 단열이중창225㎜, 방충망설치, PL+AL ○ 내·외부:복층유리22㎜(로이,아르곤) ○ 기존창호교체(3.6*2.0기준) ○ 안전난간봉 설치	
교실출입문 교체	목재2개소	실	5,020	○ 출입문(2개소 4짝)	
교실출입문과 중창교체	목재2개소	실	8,830	○ 출입문+복도중창(기성품) ○ 복도중간벽제외(하부벽)	
	복합재 2개소	실	9,815	○ 출입문+복도중창(기성품), PL+AL ○ 복도중간벽제외(하부벽)	
현관출입문 교체	스텐	개소	4,800	○ 규격:4.1m(폭)×2.6m(높이) 기준 ○ 스텐후레임 및 강화 도아	
옥상방수	우레탄 (구배 포함)	㎡	160	○ 노출, 바탕처리+구배몰탈(100mm)+ 우레탄방수재	
	우레탄 (구배 제외)	㎡	125	○ 노출, 바탕처리+우레탄방수재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우레아 (구배 포함)	m ²	220	○ 노출(2T), 바탕처리+구배몰탈 (100mm)+우레아방수재	
	우레아 (구배 제외)	m ²	155	○ 노출(2T), 바탕처리+우레아방수재	
	타포팅	m ²	26	○ 고압세척, 프라이머, 타포팅	
외벽개선	단열(판넬마감)	실	15,730	○ 열반사단열재+복합판넬4T기준 ○ 교실당 외벽 면적 48m ² 기준(좌우측 및 난간 제외), 주변코킹 포함	
드라이비트 해소		M2	350	○ 화재위험시설 해소(교육부 단가)	
건물도색	외벽	실	910	○ 수성페인트 2회(2급) ○ 교실당 외벽 면적47m ² 기준(.건물 좌· 우측 면적 미포함)	
	내벽(친환경)	실	1,105	○ 친환경페인트 2회(진품) ○ 교실당 내벽 면적 60m ² 기준(계단실 면적 미포함)	
선흡통교체	스텐	M	120	○ 규격 : Ø100(스텐1.5t) ○ 장식흡통 포함	
방화셔터 설치	12m ² 이하	개소	9,230	○ 방화스크린셔터(12m ² 이하) +철재방화문 (0.9*2.1) ○ 수신반 연동제어기 연결 제외	
피난구 유도등	고효율	회로	5,360	○ 층별 5개소(피난구유도등 3개소, 통로 유도등 2개소) 설치 기준	
화재수신반 교체	P형 10회로	개소	7,070	○ 10회로 교체	
	P형 20회로	개소	9,970	○ 20회로 교체	
소방설비	스프링클러펌프설치	식	47,000	○ 40HP 기준 ○ 기계실, 저수조 별도	
	스프링클러	실	14,500	○ 1.0실, 신설 기준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	대	7,500	○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 제외	
	소방펌프설치	식	32,770	○ 20HP 기준 ○ 기계실, 저수조 별도	
	소화전설비	회로	9,730	○ 기계실, 저수조 및 자탐설비 별도	
	자탐설비	회로	4,060	○ 수신반 별도	
	경보설비	회로	2,000	○ 수신반 별도	
수전설비	신설	식	162,760	○ 수요전력100KW이상시 해당 ○ 500KW 기준	냉· 난방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교체	식	99,030	○ 자가용수전설비 교체(케이블 제외) ○ 500KW 기준	시설 개선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실	7,840	○ 전기공사 미포함, 공기청정키트 포함 ○ 1.0실	
	교체, 배관재사용	실	5,560	○ 전기공사 미포함, 공기청정키트 포함 ○ 1.0실, 배관재사용	
	신설	실	7,330	○ 전기공사 미포함, 공기청정키트 포함 ○ 1.0실	
	전기	실	1,695	○ 천정형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적용 ○ 분전반 별도	
GHP 냉난방기	교체	실	13,390	○ 전기공사 미포함, 공기청정키트 포함 ○ 1.0실	
	교체, 배관재사용	실	11,170	○ 전기공사 미포함, 공기청정키트 포함 ○ 1.0실, 배관재 사용	
강당 스탠드형 냉난방기	직립형 10HP	대	11,050	○ 전기공사 미포함, 2실 규모 ○ 실내기 커버 포함	
	직립형 10HP (배관재사용)	대	8,270	○ 전기공사 미포함, 2실 규모 ○ 실내기 커버 포함, 배관재 사용	
공기순환 장치	전열교환기형 (1.0실)	실	5,140	○ 800CMH 기준(1.0실)	
	전열교환기형 (0.5실)	실	4,010	○ 350CMH 기준(0.5실)	
천장교체	석면, 최상층	실	23,220	○ 면적 : 91.8㎡ ○ 텍스300*600, 전기별도 ※ 석면 폐기물처리비 포함	석면 사업
	석면, 일반층	실	14,200	○ 면적 : 91.8㎡ ○ 텍스300*600, 전기별도 ※ 석면 폐기물처리비 포함	
	무석면, 최상층	실	18,300	○ 면적 : 91.8㎡ ○ 텍스300*600, 전기별도	
	무석면, 일반층	실	10,050	○ 면적 : 91.8㎡ ○ 텍스300*600, 전기별도	
	마감재, 준불연		125	○ 준불연 이상, 높이 3m 기준 ○ 천정틀 제외, 전기별도	
	전기	실	15,430	○ 전기, 통신, 소방 포함(배관, 배선포함) ○ LED 전등으로 교체 ○ 300룩스 이상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조도개선	등기구, 배관배선	실	11,220	○ 면적 : 91.8㎡ ○ 기존텍스 설치층 ○ 전기분야(배관, 배선포함) ○ 300룩스 이상	조도 개선
	등기구, 배관배선재 사용	실	7,180	○ 면적 : 91.8㎡ ○ 기존텍스 설치층 ○ 전기분야(배관 재사용) ○ 300룩스이상	
	등기구교체	실	3,480	○ LED 전등 교체(배관, 배선 공사비 미포함)	
강당조도 개선	승하강	식	76,000	○ LED등(승하강식) 24개소	
	승하강 등기구교체	식	31,410	○ LED등(승하강식) 24개소 ○ 매입배관 재사용	
화장실 신·증·개축	1층	실	243,170	○ 면적 45㎡ ○ 핏트실(비난방)	
	2층이상	실	218,340	○ 면적 45㎡ ○ 비난방	
화장실 보수	전면보수	실	133,430	○ 면적 : 45㎡(0.5실) ○ 전면 개·보수(리모델링) ○ 설비 및 전기포함 ※석면 폐기물처리비 포함	화장실 개선
	부분보수	실	34,880	○ 면적 : 45㎡(0.5실) ○ 부분보수(칸막이 및 도기류 교체, 바닥 일부보수) ○ 배관제외	
오수정화조	20ppm	m3	4,060	○ 전기시설 및 토공사 포함 ○ 50톤 미만	정화조 개선
	10ppm	m3	6,150	○ 전기시설 및 토공사 포함 ○ 50톤 이상	
물탱크설치	8ton	개소	18,440	○ STS 물탱크 ○ 배관설비 포함	급배수 설비
	10ton	개소	20,790	○ STS 물탱크 ○ 배관설비 포함	
	20ton	개소	29,530	○ STS 물탱크 ○ 배관설비 포함	
	30ton	개소	36,250	○ STS 물탱크 ○ 배관설비 포함	
	40ton	개소	47,630	○ STS 물탱크 ○ 배관설비 포함	
	50ton	개소	54,970	○ STS 물탱크 ○ 배관설비 포함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지하수개발	구경200mm	공	59,180	○ 심도100m+수중펌프 기준 ○ 관정의 구간 관로 별도 ○ 양수시험 72시간	
급수대설치	기성품	개소	22,120	○ 기성제품(SUS)	
급수펌프 교체	모터10HP	식	18,540	○ 펌프교체 및 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계약용량 증설	저압, 공중	kW	142	○ 공중인입	용량 증설
	고압, 공중	kW	34	○ 공중인입	
	저압, 지중	kW	162	○ 지중인입	
	고압, 지중	kW	60	○ 지중인입	
옹벽설치	H=2.0M	M	995	○ L형 성토구배	
	H=3.0M	M	2,300	○ L형 성토구배	
	H=4.0M	M	3,430	○ L형 성토구배	
	H=5.0M	M	5,320	○ L형 성토구배	
	H=6.0M	M	7,280	○ L형 성토구배	
	H=7.0M	M	10,200	○ L형 성토구배	
	H=8.0M	M	11,470	○ L형 성토구배	
석축쌓기	H=1.0M	M	560	○ 찰쌓기	
	H=2.0M	M	970	○ 찰쌓기	
	H=3.0M	M	1,340	○ 찰쌓기	
담장설치	블록	M	570	○ H=1.8M ○ 스플릿블록(6")	외부 환경 개선
	주물, 줄기초	M	620	○ H=1.0M(기성품) ○ 알루미늄주물웬스+줄기초	
	주물, 독립기초	M	420	○ H=1.0M(기성품) ○ 알루미늄주물웬스+독립기초	
	메쉬웬스	M	315	○ H=1.8M(기성품+독립기초)	
	비구방지웬스	M	280	○ H=6.0M W=4.0M, 그물망	
콘크리트포장	두께20cm	M2	79	○ 콘크리트20cm+보조기층15cm+와이어메쉬	
아스콘포장	포장 12cm	M2	67	○ 아스콘12cm+보조기층20cm+동상방지층20cm ○ 폐기물 처리비 포함	
	기존 절삭	M2	25	○ 아스콘 5cm, 기존 포장 절삭 후 재시공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덧씌우기	M2	20	○ 아스콘 5cm, 기존 포장 위 덧씌우기	
소형고압 블럭포장	차도용	M2	80	○ 인터로킹16cm+콘크리트포장10cm +보기기층15cm	
	단순 보도용	M2	50	○ 인터로킹6cm+보기기층+15cm ○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복잡 보도용	M2	77	○ 소규모 등 복잡한 포장면 시공 ○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친환경용	M2	120	○ 잔디블럭16cm+보기기층15cm	
정문설치	문주+스테인리스문	식	53,510	○ 문주3개+스텐리스자바라문	
배수로설치	U형(40*40)	M	370	○ 뚜껑 포함 ○ U형측구(40*40, 현장타설)	
	수로관	M	200	○ 수로관(40*40, 기성품) ○ 뚜껑 포함	
마사토깔기	기계포설 및 다짐	M3	84	○ 운반거리 40km	
	운동장 신설	M2	110	○ 마사토 15cm+부직포+쇄석 20cm ○ 맹암거, 배수로등부대시설별도	
맹암거	70*70cm	M	78	○ 쇄석+파형유공관	
스텐드설치	H=1.0M	M	590	○ 철근콘크리트	
	H=2.0M	M	1,080	○ 철근콘크리트	
국기게양대	스텐 H:10m	식	11,560	○ 스테인리스봉 3개+기단	
경계석설치	200*300	M	128	○ 국내산(화강석)	
	150*150	M	70	○ 국내산(화강석)	
조경석쌓기	조경석 4목	M2	670	○ 조경석4목(40*50*60cm)+사이목	
우천통로 설치	지붕판+틀+기둥	M2	370	○ 높이 : 2.8m 기준 ○ 지붕판(마감)+STS지붕틀+STS기둥 ○ 포장별도	
	지붕판+틀	M2	180	○ 지붕판(마감)+STS지붕틀 ○ 포장별도	
	지붕판	M2	100	○ 지붕판(마감) 설치 ○ 포장별도	
외부게시판 설치	스테인리스	개소	4,790	○ 규격 : 3.5m(폭)×3m(높이) 기준 ○ 기성품 기준	
도시가스배관	부지내	m	340	○ 부지내 배관 연결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옥외배수	토사	M	225	○ 배관경 300mm 기준	옥외급 배수
	소형고압블럭	M	238	○ 배관경 300mm 기준	
	콘크리트	M	335	○ 배관경 300mm 기준	
	아스콘	M	290	○ 배관경 300mm 기준	
옥외급수	급수배관	M	238	○ 배관경 50mm 기준, SUS	
신재생에너지	PV	KW	4,080	○ PV기준	전기 공사
	BIPV	KW	6,010	○ BIPV기준	
전기간선 인입	50sq	M	185	○ 옥외간선 및 토공사 포함 ○ F-CV50sq/1C*4	
	95sq	M	240	○ 옥외간선 및 토공사 포함 ○ F-CV95sq/1C*4	
	150sq	M	370	○ 옥외간선 및 토공사 포함 ○ F-CV150sq/1C*4	
분전반	메인 (800*1600)	개	9,930	○ EPS 내 노출 분전함	
	분기 (800*1200)	개	5,620	○ EPS 내 노출 분전함	
	분기 (700*800)	개	3,280	○ EPS 내 노출 분전함	
신발장교체	기성품	EA	47	○ 조달등록 기준	신발장
책·결상	학생용 책상	개	56	○ 조달등록 기준 ○ 학생용 책상 1개 ○ 높낮이 조절용 기준	책· 결상
	교실용 결상	개	37	○ 조달등록 기준 ○ 학생용 결상 1개 ○ 높낮이 조절용 기준	
사물함		조	78	○ 조달등록 기준 ○ 학생용	사물함
락카		조	105	○ 조달등록 기준 ○ 학생용 1인1조	락카
칠판	판면 교체	개소	530	○ 조달등록 기준 ○ 미장, 도색 및 철거, 폐기물처리비 포함	칠판
	TV삽입형 칠판	개소	1,870		
게시판	4.8*1.2M	개소	580	○ 미장, 도색 및 철거, 폐기물처리비 포함	게시판
	6.0*1.2M	개소	690	○ 미장, 도색 및 철거, 폐기물처리비 포함	

사 업 명		단위	2025년 예산단가	적 요	비고
안전진단비		실	1,370	○ 건설교통부(고시) -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산출	안전 진단
정화조철거		개소	16,640	○ 50톤 기준 ○ 오물처리비 및 정화조 내부 석분채움 포함 ○ 배관비 제외	정화조 철거
교실바닥 난방	신, 증축 난방	실	12,360	○ 건축 및 전기시설 포함	교실 바닥 난방
	바닥철거	실	33,770	○ 건축 및 전기시설 포함	
	바닥철거 제외	실	10,260	○ 노출 전기시설 포함	
승강기 설치	2층	개소	197,260	○ 장애인용(15인승기준) ○ 외벽 패널(금속제) 마감 기준	승강기
	3층	개소	244,580	○ 장애인용(15인승기준) ○ 외벽 패널(금속제) 마감 기준	
	4층	개소	259,310	○ 장애인용(15인승기준) ○ 외벽 패널(금속제) 마감 기준	

구분	품명		단위	단가(원)	비고
일·숙직 수당	일직비		일	50,000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1일당 30,000원까지 지급 가능
	숙직비		일	50,000	
위원회 참석수당	법정	(기본)	일	100,000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
	자체	(기본)	일	50,000	2시간 초과 시 30,000원 추가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
교육강사 수당	특별강사 (1종)	(기본)	시간	400,000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시간	300,000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특별강사 (2종)	(기본)	시간	200,000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교육운영상 소속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등
		(초과)	시간	150,000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일반강사(1종)	(기본)	시간	180,000	교수, 5급이상 공무원 및 장학관, 대학전임강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감 등
		(초과)	시간	90,000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일반강사(2종)	(기본)	시간	120,000	대학 시간강사, 6급이하 공무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수석교사, 교사 등
		(초과)	시간	60,000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일반강사(3종)		시간	50,000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일반강사(보조강사)		시간	40,000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1)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로 타 기관의 연수 또는 교육에 강사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도 위 기준을 적용 2)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속(근무)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 교육강 사인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타기관에 위탁한 사업의 교육강사로 위촉된 경우에 도 위탁사업비에서 소속(근무)기관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구분	품명		단위	단가(원)	비고	
	※ ‘자신의 소속(근무)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말하며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3) 강사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실비 지급					
	4) 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70~119명(120%), 120~169명(140%), 170~219명(160%), 220명 이상(200%)					
	5)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 공직자별 외부강의 등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강의료 및 강의시간 산출기준 등을 준수(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참고)					
	6) 화상강의(비대면 실시간 송출)는 집합연수에 준하여 강사수당 지급					
	7) 화상강의(비대면 녹화영상 송출)는 강사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료만 지급					
	8) 교육강사수당의 구체적 내용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2-12. 교육강사수당(연수기관 연수 제외)”참고					
원고료	원고	국문, 외국어	매	14,000	시간당 3매 이내 A4기준 200자이내/매, 글자12포인트, 행간격160mm, 상하여백20mm, 좌우여백25mm	원고 및 슬라이드 중복지급 불가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면	7,000	시간당 5면 이내, 1일 최대 20면	
	※ 매년 반복되는 매뉴얼, 지침 등의 단순 편집은 원고료 지급 불가					
제작료	녹음	녹음제작	10분	100,000	10분(40매)	
	콘텐츠	동영상	10분	150,000	10분(1시간 수업용)	
		일러스트 삽화 (사진)	매	30,000	만화, 카툰, 삽화 등 1매당 ※ 시간당 5매 이내	
각종사업 추진수당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일반강사 1종 이상)	(기본)	일	70,000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학생,	
		(초과)	일	30,000	교직원 대상 선발 및 각종 대회운영 경비에 한하며,	
	전문가 외	(기본)	일	30,000	동일 기관장 소속인 경우 지급 불가	
		(초과)	일	20,000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고〉	
특수분야 연수경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60시간 기준(20~40명)		회	130,000	1인 연간 총 25만원 이하로 지원 (교육부인가 원격직무연수도 해당 시간 기준의 상한액내에서 인원수와 무관하게 지급 가능) ※ 근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자체규정)	
	60시간 기준(41~80명)		회	117,000		
	60시간 기준(81~120명)		회	104,000	1) 30시간 미만: (연수시간÷30)×30시간 표준연수비 예시) 15시간(20~40명) 연수 시	
	60시간 기준(121~199명)		회	91,000		

구분	품명	단위	단가(원)	비고
	60시간 기준(200명 이상)	회	78,000	1인당 표준연수비: $(15 \div 30) \times 80,000\text{원} = 40,000\text{원}$ 2) 30시간 초과 60시간 미만: $(\text{연수시간} \div 60) \times 60\text{시간 표준연수비}$ 예시) 45시간(41~80명) 연수 시 1인당 표준연수비: $(45 \div 60) \times 117,000\text{원} = 87,750\text{원}$
	30시간 기준(20~40명)	회	80,000	
	30시간 기준(41~80명)	회	72,000	
	30시간 기준(81~120명)	회	64,000	
	30시간 기준(121~199명)	회	56,000	
	30시간 기준(200명 이상)	회	48,000	
임시대체 강사수당 (초등교육과)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학교	시간	26,000	“202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기준 적용
	읍단위 소재학교	시간	24,000	
	동단위 소재학교	시간	22,000	
보결(대강) 수업수당 (초등교육과)	보결(대강)수업수당	차시	15,000	초,중,고,특수학교
보결(대강) 수업수당 (유아특수 교육과)	보결(대강)수업수당	시간 (60분)	18,000	유치원
수질검사 수수료 (체육예술 건강과)	먹는 물 지하수(46개 항목)	회	267,700	출장비 및 채수병 비용 별도
	먹는물 지하수(6개 항목)	회	30,200	
	생활용수 지하수(20개 항목)	회	133,100	
	정수기 및 냉·온수기(2개 항목)	회	9,200	
	저수조 경유 수돗물(6개 항목)	회	22,300	
	준공5년 경과 옥내급수관 있는 수돗물(7개 항목)	회	27,700	
저수조 청소용역 (체육예술 건강과)	고가수조(5톤~50톤)	회	300,000	톤당7,000가산
	고가수조(50톤초과)	회	350,000	톤당6,000가산
	지하저수조(100톤이하)	회	700,000	
	지하저수조(100~499톤)	회	700,000	톤당1,200가산
	지하저수조(500~1000톤)	회	1,180,000~	1,180,000~1,780,000

구분	품명	단위	단가(원)	비고
석면분석 (체육예술 건강과)	석면분석수수료	회	40,000	
	석면학교 위해성평가	m ²		실소요액 적용
	무석면학교 인증	m ²		실소요액 적용
건강검사 (체육예술 건강과)	학생 구강검진비	명	고시단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단가 초 2·3·5·6학년
	학생 소변검사	명	고시단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단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학생 결핵검사	명	고시단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단가의 50% 고 2·3학년
	교직원 결핵검사	명	고시단가	보건복지부 2025년 검사 항목별 검진비용(2024.1.1.)
학교급식 (교육복지과)	한우유전자검사 수수료	건	80,000	한우·비한우 감별검사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운영비	월	200,000~	
사무기기 및 일반비품	사무용의자	각	200,000	
	사무용책상	각	250,000	
	응접탁자	대	300,000	1600×800×470
	응접의자	조	270,000	860×840×820
	접의자(3종)	각	30,000	
	캐비닛(2단)	대	300,000	
	캐비닛(1단)	대	150,000	
사무기기 및 일반비품	선풍기(좌석용)	대	60,000	
	예취기	대	310,000	
	전동식윤전등사기	대	3,700,000	
	디지털윤전등사기(B4)	대	5,000,000	
	전자복사기	대	3,600,000	자동원고이송장치포함
	냉·난방기	대	3,000,000	
	냉장고(450리터)	대	550,000	
	모사전송기(고속형)	대	700,000	
	문서세단기	대	700,000	최대투입폭: 270mm이상

구분	품명	단위	단가(원)	비고
	문서세단기	대	1,800,000	최대투입폭: 310mm이상
	라미네이트(코팅기)	대	600,000	
	텔레비전(80cm)	대	700,000	벽걸이설치 옵션 비용 포함
	텔레비전(106cm)	대	1,100,000	벽걸이설치 옵션 비용 포함
정보화 기기	컴퓨터본체	대	1,020,000	
	모니터	대	300,000	
	노트북	대	1,500,000	
	빔(비디오)프로젝트	대	2,500,000	
	스캐너	대	350,000	
	프린터(A4,양면)	대	400,000	
	프린터(A3,양면)	대	850,000	
	프린터(컬러,A3,양면)	대	1,500,000	
	프린터(대용량급지대)	대	400,000	
	컴퓨터용책상	각	250,000	900×700×750
	컴퓨터용책상(강사용)	각	290,000	1600×700×730
교구 및 기자재	실물화상기	대	1,100,000	
	실험대(작업대)	대	530,000	
	실험대(학생용)	대	680,000	
	어학실습기자재	대	430,000	교사용 및 학생용 녹음기
	실험기구진열장	대	500,000	1800×500×940
	피아노	대	3,200,000	
도서관 운영	서가(복식6단2련)	대	650,000	1900×495×1835
	서가(단식6단2련)	대	450,000	1900×325×1835
	신문걸이대	대	430,000	761×794×826
	경사진열람대	대	300,000	945×655×1150
	열람의자	개	50,000	440×450×835

구분	품명	단위	단가(원)	비고
	일반도서	권	15,000	
	전문도서	권	20,000	
	CD음반	개	15,000	시청각용
	DVD타이틀	개	30,000	시청각용
	정기간행물 구독	부,월	12,000	
일용인부	보통인부	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문별 시중 노임단가〉 참고
기타	업무추진비(협의회)	명	30,000	
	숙박	실	70,000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 준용
	매식비(특근매식비)	식	9,000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은 가급적 급식수급계획에 반영하여 학교급식을 이용
	매식비(기타)	식	10,000	교육 등에 참석·참가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민간인에 대한 매식비 (학생인솔시 교직원도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식비 조정 가능)
	간식	명/회	3,000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피복비	회	100,000	1인 연 최대 200,000원 ※ 위생복, 실험복 등 특수한 경우는 기준단가 적용 제외
	교재인쇄	부		실제 인쇄단가 적용
	현수막	매	80,000	
	상장	매	500	

※ 소관 부서가 표시되지 않은 단가는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조달가격”을 적용함



물가정보 참고 사이트



구 분	인터넷 주소 / 기관명	참고사항
상·하수도	시·군 상수도 사업소 (예: 창원시 분야별 포털 http://changwon.go.kr/depart)	→ 농업/환경→상수도 사업소 (또는 하수도 사업소)→요금 정보
전기요금	https://online.kepco.co.kr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한전ON→전기요금계산·비교
가스·수도·전기·우편·전화·항공· 철도·버스·항만·기타운송 요금	https://www.mois.go.kr/frt/sub/ a02/publicPriceList/screen.do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지방공공요금
유류가격	www.petronet.co.kr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오늘의 유가
항공요금	www.koreanair.com 대한항공	→ 항공권 예매
	www.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	→ 예약 → 항공권 예약
조달가격정보	www.g2b.go.kr 조달청	→ 나라장터 → 가격정보
번역료, 통역료	www.hufscit.com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 통역요율, 번역요율 → 요율표
지적측량수수료	https://baro.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 지적측량수수료/ 간편수수료계산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www.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 제조노임단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	www.etis.or.kr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 통계 → 임금실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www.cak.or.kr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3

건물유지비 배분 기준

(단위: 원/m²)

구조별	경과연수	5년 이하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청사	목조	1,657	1,802	1,948	2,093	2,239	2,384	2,720	3,057	3,393	3,730	4,066	4,223	4,379	4,536	4,692	4,849
	벽돌·블럭조	1,494	1,755	2,016	2,277	2,538	2,799	2,972	3,145	3,318	3,491	3,664	3,804	3,944	4,083	4,223	4,363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1,169	1,371	1,573	1,776	1,978	2,180	2,312	2,444	2,576	2,708	2,840	2,951	3,062	3,173	3,284	3,395
학교 시설	목조	1,268	1,490	1,713	1,935	2,158	2,380	2,527	2,675	2,822	2,970	3,117	3,235	3,354	3,472	3,591	3,709
	벽돌·블럭조	1,137	1,338	1,539	1,740	1,941	2,142	2,274	2,406	2,539	2,671	2,803	2,910	3,017	3,123	3,230	3,337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898	1,050	1,202	1,354	1,506	1,658	1,761	1,864	1,967	2,070	2,173	2,258	2,343	2,429	2,514	2,599
창고	목조	878	1,030	1,182	1,335	1,487	1,639	1,742	1,845	1,947	2,050	2,153	2,235	2,316	2,398	2,479	2,561
	벽돌·블럭조	792	929	1,066	1,204	1,341	1,478	1,570	1,662	1,755	1,847	1,939	2,012	2,085	2,159	2,232	2,305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609	716	823	931	1,038	1,145	1,216	1,287	1,358	1,429	1,500	1,558	1,616	1,674	1,732	1,790
주택	목조	705	830	955	1,080	1,205	1,330	1,411	1,491	1,572	1,652	1,733	1,799	1,865	1,932	1,998	2,064
	벽돌·블럭조	636	747	858	969	1,080	1,191	1,266	1,341	1,415	1,490	1,565	1,623	1,682	1,740	1,799	1,857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499	612	726	839	953	1,066	1,096	1,126	1,157	1,187	1,217	1,262	1,306	1,351	1,395	1,440
공장	목조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2,253
	벽돌·블럭조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1,598	1,598	1,598	1,598	1,598	1,598	1,598	1,598	1,598	1,598	1,598	1,652	1,706	1,759	1,813	1,867
기타	목조	248	291	334	376	419	462	493	524	554	585	616	640	663	687	710	734
	벽돌·블럭조	224	264	305	345	386	426	452	478	503	529	555	574	594	613	633	652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177	208	238	269	299	330	349	368	388	407	426	442	459	475	492	508

구조별	경과연수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5년 초과
	목조																	
청사	벽돌·블럭조		4,505	4,646	4,788	4,929	5,071	5,192	5,313	5,434	5,555	5,676	5,811	5,947	6,082	6,218	6,353	6,505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3,505	3,616	3,726	3,837	3,947	4,068	4,189	4,309	4,430	4,551	4,690	4,829	4,969	5,108	5,247	5,408
학교 시설	목조		3,827	3,944	4,062	4,179	4,297	4,399	4,502	4,604	4,707	4,809	4,924	5,038	5,153	5,267	5,382	5,510
	벽돌·블럭조		3,447	3,557	3,666	3,776	3,886	3,977	4,068	4,158	4,249	4,340	4,441	4,543	4,644	4,746	4,847	4,960
창고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2,683	2,766	2,850	2,933	3,017	3,089	3,161	3,233	3,305	3,377	3,458	3,538	3,619	3,699	3,780	3,870
	목조		2,644	2,727	2,811	2,894	2,977	3,047	3,117	3,186	3,256	3,326	3,404	3,482	3,560	3,638	3,716	3,803
주택	벽돌·블럭조		2,380	2,455	2,531	2,606	2,681	2,744	2,806	2,869	2,931	2,994	3,064	3,134	3,204	3,274	3,344	3,422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1,848	1,906	1,963	2,021	2,079	2,130	2,180	2,231	2,281	2,332	2,389	2,446	2,502	2,559	2,616	2,680
공장	목조		2,132	2,200	2,269	2,337	2,405	2,461	2,517	2,572	2,628	2,684	2,746	2,808	2,871	2,933	2,995	3,065
	벽돌·블럭조		1,918	1,980	2,041	2,103	2,164	2,214	2,264	2,314	2,364	2,414	2,470	2,526	2,581	2,637	2,693	2,755
기타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1,489	1,537	1,586	1,634	1,683	1,723	1,764	1,804	1,845	1,885	1,930	1,975	2,021	2,066	2,111	2,162
	목조		2,503	2,752	3,002	3,251	3,501	3,604	3,708	3,811	3,915	4,018	4,137	4,255	4,374	4,492	4,611	4,747
기타	벽돌·블럭조		2,240	2,250	2,259	2,269	2,278	2,505	2,733	2,960	3,188	3,415	3,756	4,097	4,438	4,779	5,120	5,631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1,973	2,078	2,184	2,289	2,395	2,466	2,537	2,609	2,680	2,751	2,833	2,915	2,996	3,078	3,160	3,254
기타	목조		756	779	801	824	846	867	888	910	931	952	976	1,000	1,023	1,047	1,071	1,098
	벽돌·블럭조		674	696	717	739	761	780	798	817	835	854	875	896	916	937	958	981
기타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석조		525	542	559	576	593	606	619	632	645	658	672	687	701	716	730	746

※ 소규모 급식시설·관사 보수비 포함

(단위: 천원)

구분 차종(형)별		연료별	연간주행거리	연액
승용	의전용	휘발유	30,000km 이상	8,424
			25,000km 이상	7,449
			20,000km 이상	6,471
			15,000km 이상	5,494
			10,000km 이상	4,518
	대형	휘발유	40,000km 이상	16,423
			35,000km 이상	14,986
			30,000km 이상	13,566
			25,000km 이상	12,126
			20,000km 이상	10,706
	중형	휘발유	30,000km 이상	8,568
			25,000km 이상	7,522
			20,000km 이상	6,479
			15,000km 이상	5,416
			10,000km 이상	4,372
	소형	휘발유	25,000km 이상	7,124
			20,000km 이상	6,201
			15,000km 이상	5,278
			10,000km 이상	4,356
			5,000km 이상	2,940
승합	대형	경유	25,000km 이상	16,609
			20,000km 이상	14,141
			15,000km 이상	11,713
			10,000km 이상	9,265
			5,000km 이상	6,820

차종(형)별 \ 구분		연료별	연간주행거리	연액
	중형	경유	25,000km 이상	9,676
			20,000km 이상	8,145
			15,000km 이상	6,552
			10,000km 이상	5,033
			5,000km 이상	3,521
	소형	경유	25,000km 이상	6,529
			20,000km 이상	5,795
			15,000km 이상	5,061
			10,000km 이상	4,331
			5,000km 이상	3,549
화물	중형	경유	25,000km 이상	10,238
			20,000km 이상	8,961
			15,000km 이상	7,708
			10,000km 이상	6,474
			5,000km 이상	5,202
			5,000km 이하	2,429
	소형	경유	25,000km 이상	6,778
			20,000km 이상	6,098
			15,000km 이상	5,380
			10,000km 이상	4,698
			5,000km 이상	3,997
			5,000km 이하	2,052

제5장

서식 및
참고자료

I 2025학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시)

예 산 총 칙

예산구분: 본예산

예산확정일		예산액	
-------	--	-----	--

제1조 ○○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보결(대강)수업수당
2.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4. 시설비

단, 인건비 및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제4조 ①회계연도말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에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00학년도 명시이월(계속비)사업은 붙임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예산조서”와 같다.

※ 참고사항

1. 본 예산총칙은 “예시”이므로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명시이월비(계속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서 규정한 것 중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 (예를 들어, 추가경정 시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제1조(추가경정예산액) 다음에 바로 제○조(추가사항)를 기재하며 본예산과 변동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예산구분:
학 교 명:

(단위: 천원)

예산구분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증감률	최종예산	증감률

세입				세출			
장	관	누계예산	구성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누계예산	구성비

0000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합계									

0000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단위: 천원)

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세출합계									

명시이월(계속비) 사업예산 조서

회계연도:
예산구분:
부서명:

(단위: 원)

세부사업	세부항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차년도 이월액

II

2025학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예시)

0000년도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세계잉여금(A-B)	비고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원)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환 확정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입	결산후 이월	소계

□ 세입 결산 내역

(단위: 원)

장	관	결산액	구성비(%)
합계			

□ 세출 결산 내역

(단위: 원)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합계		

0000년도 세입결산서

학교명:

집행년월:

(단위: 원)

과목				예산액(A)	예산현액(B)	결산액(C)	차액(B-C)
장	관	항	목				
세입합계							

0000년도 세출결산서

학교명:

집행년월:

(단위: 원)

과목				예산액(A)	예산현액(B)	결산액(C)	차액(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세출합계							

0000년도 세출예산이전용 명세서

학교명:

(단위: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이(전)용 구분	이(전)용		이(전)용 사유
						증가	감소	

0000년도 예비비사용 명세서

학교명:

(단위: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출 결정액 (A)	예비비 사용액 (B)	예비비 사 용 잔 액 (A-B)	지출 결정일자	예비비 사유

0000년도 다음연도 이월명세서(명시이월)

학교명:

(단위: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통 계비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0000년도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사고이월)

학교명:

(단위: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통 계비목	예산 현액 ①	지출 원인 행위액 ②	지출액 ③	지출 잔액 ④ (②-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0000년도 다음연도 이월명세서(계속비이월)

학교명:

(단위: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통 계비목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0000년도 불용사유별 현황

학교명:

(단위: 원)

세부 사업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액원인별 내역							불용비 (%)
			예산 집행 잔액	계획 변경 취소	예산 절감 (예산 보유액)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지급 사유 미발생	기타	계	

Ⅲ 시설적립금 관련 서식

[서식1]

시설적립금 승인 신청서

【예시】

학교명	○○○○학교	사업명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적립기간	4년 (2025~2028학년도)	재원	사용료 수입
적립금 총액	8,000천원	연간 적립액	2,000천원
운영위원회 심의일자	2025.○.○.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적립 및 사용계획 (필요성 등 세부내용 작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 . ○○○○학교장 ○○○ (직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2]

○○○○학교 시설적립금 관리대장

□ 사업명: “예시” 인조잔디운동장 보수

1. 기본사항

(단위:원)

자체계획 공문대호	운영위원회 심의일자	교육지원청 승인일자	적립기간	세부 사용용도	연간 적립액	총 적립 계획금액	계좌정보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등)

2. 적립현황

적립 차수	적립일자	적립금액	적립누계액	비고
1차				
2차				
3차				
4차				
계				

3. 처분현황

처분일자	처분금액	이자수입	총 처분금액	비고

※ 작성요령

- 1. 적립금 사업별 별도 작성 관리
- 2.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정 사용 가능

[서식3]

시설적립금 승인 현황

(단위:천원)

순	학교명 (지역)	설립별	급별	신청 일자	승인 일자	적립 사업명	적립 기간	연간 적립액	총 적립금액	비고
1						예)인조잔디 운동장보수				

[서식4]

시설적립금 현황

□ 작성기준일자:

(단위: 원)

순	학교명 (지역)	구분	최초적립일	금 액	목적(사업명)	예탁기관 (계좌번호)	비고

※ 작성요령

- 1. 학교에서는 다음연도 결산 심의 후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6월 20일까지 도교육청으로 보고
- 2. 구분: 시설적립금
- 3. 최초적립일: 적립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최초 일자
- 4. 금액: 적립 목적별 적립된 누계 금액
- 5. 목적(사업명): 적립 목적 또는 사업명 기재
예) 인조잔디운동장 보수 등
- 6. 예탁기관(계좌번호): 적립금 예탁기관 및 계좌번호 기재
- 7. [서식4]는 결산서의 적립금현황 서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기간까지의
적립금 잔액증명서 첨부하여 보고

Ⅳ 업무활용 서식(참고용)

※ 1~3의 서식은 예산 편성 시 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 학교현황

가. 학급 및 학생수 현황(2000. 0. 0. 현재)

학교명	학년별	1		2		3		..	계		비 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	학급수	학생수	

나. 교직원 현황

구 분	교 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합계
	교 장	교 감	보 조 교 사	교 사	기 타	계	행 정 실 장	주 무 관	계	구. 학부 모회 직원 (호)	구. 학부 모회 직원	교 무 행 정 원	영 양 사	...	...	...	...	...	소 계	
정원																				
현원																				

2 교육공무직원 현황

(2000. 0. 0.일 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편성액	퇴직 급여액	보수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계	명						

-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근무직원을 포함하여 작성
- 담당업무: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연간 인건비 편성액: 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급여액: 해당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환급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해당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퇴직급여 관리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 구분
 - ※ 교육공무직원 현황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육공무직등인사 및 급여 (교육공무직등급여)'항목을 통해 관리

3

수익자부담수입 징수액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수익자부담수입	세 출		세 입	
	소요예산액 (A)	세부산출내역	참여 학생수 (B)	1인당 부담액 (A/B)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				
늘봄학교운영비				

(업무관리 활용 예시) -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

2000년 0월 0일자 학교회계 출납검사

1. 학교회계

(단위: 원)

현금출납부 잔액 (A)	통장 잔액					차액 (A-B)
	대표계좌	별단계좌	정기예금	...	계(B)	
500,000,000	90,000,000	10,000,000	400,000,000			0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 발생사유
합계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원)

현금출납부 잔액 (A)	통장 잔액					차액 (A-B)
	대표계좌	퇴직적립금	퇴직연금(DB)	...	계(B)	
0	0	0	0			0

차액조서		
건명	금액	차액 발생사유
합계		

- 붙임 1. 0월 현금출납부(학교회계시스템) 각 1부.
2. 자금운용기록부(학교회계시스템) 1부.
3. 잔액증빙자료 각 1부. 끝.

※ 확인사항

- (1번) 학교회계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접속 확인 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2번) 학교 계좌와 대조하여 변조여부 확인
- 현금출납부 수입내역의 경우 수입일계표 결재 상신 여부 확인
- 스쿨뱅킹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 잔고 해소 여부 확인
- 학교발전기금계좌, 신용카드결제계좌의 경우 항목 추가 사용 가능
- 잔액증빙자료: 클린재정, 잔액증명서, 인터넷 뱅킹 입출금 거래내역 파일, 통장스캔본 등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

※ 매월 10일 이내 처리(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0조 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

(단위 : 원)

[illegible]

V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안내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니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11개)

순	소관부서	제안건명
1	창의인재과	12. 멘토와 함께하는 과학실험 실습
2	부서 미지정 (정책기획관)	24. 초등학생 실내화 지원 사업
3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31. 우리의 학교생활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학교 영상 및 홍보물 제작)
4	초등교육과	38. 학교 환경 관리 인력 지원
5	초등교육과	52. 집중력 향상을 위한 손글씨 교육
6	진로교육과	55. 외국 국적의 부모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번역기 지원
7	부서 미지정 (정책기획관)	73. 나의 우산에게 이름을 찾아주세요
8	재정과	79. 학교시설물 개방 안내
9	부서 미지정 (정책기획관)	84. 안심실내화 비치
10	정책기획관	9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종이 문서 없애기
11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인재과	94. 학교 간 김에 만든 내 그림책

○ 제안내용

순	제안내용
1	12. 멘토와 함께하는 과학실험 실습 [내용] ○ 내실있는 과학실험을 통한 과학교과 이해 확대를 위해 OO과고 학생과 초중학생 사이에 멘토-멘티 교과 연계 과학실험 실시
2	24. 초등학생 실내화 지원 사업 [내용] ○ 신입 및 재학 초등학생 전체 대상 실내화 지원

순	제안내용
3	31. 우리의 학교생활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학교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내용] ○ 학교의 특색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소개 영상 및 홍보물 제작하여 학교 이미지 향상 ○ 동아리 활용 학교 홍보물 제작, 유튜브 등 홍보
4	38. 학교 환경 관리 인력 지원
	[내용]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환경 관리 인력 지원 ○ 학부모, 지역사회 자원(시니어)을 이용하여 복도 및 계단 청소, 창문 먼지 제거 등 학교 환경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5	52. 집중력 향상을 위한 손글씨 교육
	[내용] ○ 초등학생 대상 집중력 향상 손글씨 교육 실시 ○ 전문강사 통한 초등 저학년 필기교육
6	55. 외국 국적의 부모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번역기 지원
	[내용] ○ 번역기를 활용하여 소통 장벽 해소 ○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학부모 및 학생에게 번역기 대여
7	73. 나의 우산에게 이름을 찾아주세요
	[내용] ○ 비가 오는 날, 접고 펴는 기능이 있는 우산꽃이를 각 반에 구비 ○ 각반 학생들의 번호에 맞는 구멍에 우산 보관
8	79. 학교시설물 개방 안내
	[내용] ○ 개방시설물 현황 및 개방시간, 이용수칙, 예약현황확인 및 사용신청방법(학교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주소 및 QR코드 안내) 안내
9	84. 안심실내화 비치
	[내용] ○ 학생들을 위한 여분 실내화를 비치하여 대여 ○ 실내화를 깜빡하고 안들고 왔을 때 맨발로 급식소 및 화장실에 가는 것 방지
10	9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종이 문서 없애기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e-mail로 송부하고 태블릿 PC로 제공하여 종이문서 감축
11	94. 학교 간 김에 만든 내 그림책
	[내용] ○ 관내 초,중,고등 학교로 그림책 제작 지도 선생님이 학교 방문해 아이들의 영감을 끌어올려 자신의 이야기가 한편의 그림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도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 참여마당 ▶ 사업공모 ▶ 사업 진행 상황 ▶ 글번호 들어가시면 자세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법 규 명	소관부처(기관)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유아교육법	교육부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교육청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 기획재정부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교육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교육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감사원법	감사원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VII 회계 관련 용어정리

용 어	정 의
개산금	채무는 존재하나 그 금액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 개략적인 금액을 채무 이행기 도래 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채무액을 확정 · 정산하는 것
검사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설계서, 규격대로 제조 ·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재질, 성능, 규격 등을 조사)
검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채무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납부서	납입자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하는 것(보조금, 지원금 등)
납입고지서	채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부할금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서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함.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 납입고지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서 기한 내에 납입이 없었다하더라도 재차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독촉장을 발급함(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하며, 납입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함)
단식부기	예산이나 현금에서 집행액이나 지출액을 차감하는 기록 방법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구분하지 않음)
명시이월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2년 한도로 지출 가능)
복식부기	대차평균의원리에 의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때 차변과 대변으로 2중으로 기입하는 방법
불용액	$\text{예산현액} - \text{지급액} - \text{이월액} = \text{불용액}$
사고이월	세출예산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재이월불가)
선금급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 전 또는 지급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
세계잉여금	$\text{세입결산액} - \text{세출결산액}$
세입	회계연도 내 수입예정액
세출	회계연도 내 지출한도액
수납(출납계통)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

용 어	정 의
수입	세입의 재원이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채무자, 금액 및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납입고지를 하여 현금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행위의 기록 및 보고를 포함하는 일체의 관리행위
수입인지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 인지세법에 의해 국가가 발행하는 것(현금납부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사업비 - 보조금반환확정액 = 순세계잉여금
시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법률상의 제한
예산액	예산에 편성된 금액
예산교부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집행할 금액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는 절차(도교육청→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예산의 이동	입법과목(정책사업) 간 이동
예산의 전용	행정과목(단위사업목, 세부사업목) 간 이동
예산재배정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배정된 예산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도교육청각부서→교육지원청)
예산현액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지출액 + 이·전용등증감액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2009.4.27. 개정 전 잡종재산)
제척기간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존속기간(시효와는 달리 중단, 정지제도가 없음)
지급	출납원 및 금고에서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
지출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하고, 지급명령을 발행하는 것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출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지출원인행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
집행	수입과 지출을 실현하는 일련의 행위
징수(명령계통)	사실관계를 조사결정하고 납입고지하는 행위
출납원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공무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물품출납원 등)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2009.4.29. 개정이전의 보존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하여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편입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발췌)



[일부개정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 발췌)



[일부개정 2023. 9. 27., 시행일 2023. 9. 27.]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 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2007. 2. 27.

교육규칙 제570호

개정 (2010. 2. 17. 교육규칙 제629호)

개정 (2011. 2. 28. 교육규칙 제655호)

개정 (2012. 11. 15. 교육규칙 제698호)

개정 (2013. 11. 28. 교육규칙 제731호)

개정 (2014. 12. 26. 교육규칙 제756호)

개정 (2015. 11. 5. 교육규칙 제773호)

개정 (2018. 6. 7. 교육규칙 제813호)

개정 (2019. 2. 28. 교육규칙 제823호)

개정 (2019. 11. 28. 교육규칙 제839호)

개정 (2021. 12. 23. 교육규칙 제898호)

개정 (2025. 5. 15. 교육규칙 제9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과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경상남도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 및 유치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제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이하 “유치원장”을 포함한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 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학교의 장은 학교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학교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회계 전출금의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2(기준경비의 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학교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편성지침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

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절차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중 일정금액을 향후 대규모 시설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3장 결산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제1

항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23조의3(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1조에 따른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에 따른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

② 수수료라 함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7조(물품매각대금)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8조(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실습물매각대금, 예금이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 등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5장 지출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학교의 장은 예산 집행품의의 일정금액 이하를 정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보수
5. 여비
6. 연간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수행되는 용역계약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

②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33조의2(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4 삭제

제33조의5(청렴계약 위반업자에 대한 제재)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제50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해당 사실이 공개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3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 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제38조에 따른 개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 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증빙서류는 해당 학교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개산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학급운영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 ② 개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의2(검사·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관계직원

제39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으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0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관계직원의 대리) ① 학교장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 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43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①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통합지출부
-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장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8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47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그 밖의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금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 매월 단위
2. 징수부 및 지출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 ③ 교육감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의 직인은「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의한다.

제52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에게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해당 학교 누리집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하여 공개하고, 이의 명칭을 “학교회계현황”으로 하고 누리집 초기화면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개정조항은 2025. 3.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산설 2011. 2. 28. 교규655>

청렴계약 위반업자와 계약 제한기준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 제한사유	제한기간
1. 1천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1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6월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3월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www.gne.go.kr)

인쇄처

주식회사 남성기획인쇄

※ 본 지침의 저작권은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으며,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